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의 추이와 전망

李 載 玉 (研 究 委 員)
崔 世 均 (責 任 研 究 員)
金 東 玟 (責 任 研 究 員)
權 五 復 (研 究 員)
徐 溱 教 (研 究 員)
任 廷 彬 (臨 時 研 究 員)

빈

면

머 리 말

우리 農業은 지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 對內的으로는 部門間的 成長隔差를 낳게 하였으며 對外的으로는 극심한 通商摩擦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특히, 우리 나라에 대한 農産物市場의 開放壓力은 世界 貿易環境의 변화와 美國의 經濟 事情惡化 등 우리 農業의 外生的인 要因에 의하여 同時多發的으로 高潮되어 왔다. 對美 貿易收支 黑字의 擴大는 美國의 財政赤字, 貿易赤字 解消努力과 맞물려 韓美 通商摩擦과 農産物 輸入 開放壓力을 招來하였다. 이와 함께 國際收支與件의 改善과 經濟的地位 向上으로 인하여 포괄적으로 農産物을 輸入制限해 올 수 있었던 根據 條項으로서 GATT 18조 B항을 卒業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 초부터 世界 經濟의 保護主義, 地域主義化 傾向과 함께 대두된 각종 貿易問題를 解決하기 위한 UR 協商으로 우리나라 農産物 市場開放은 加速化될 것으로 본다. 특히, UR 農産物協商에서는 交易自由化뿐만 아니라 世界農産物의 改革을 목표로 삼은 채 대부분의 國內 農業補助金 減縮과 非關稅措置의 撤廢까지도 논의 하고 있어서 아직도 國內生産基盤이 脆弱한 우리 農業에 심대한 影響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UR 農産物協商에 관한 한 정리된 資料가 충분하게 제공되지 못해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國民的 合意의 導出에 限界를 가졌다. 이에 따라 본 資料는 UR 農産物協商에 대한 理解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協商의 擡頭背景을 시작으로 하여 各國의 提案과 主要 爭點, 向後 協商의 展望과 對應方案에 관해서 分析·敍述하려고 노력하

였다. 아무쪼록 본 資料가 各界의 關心있는 분들에게 길잡이가 되고
農業 및 關聯機關의 有益한 참고서로 서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

1990. 11.

韓國農村經濟研究院長 許信行

目 次

제 1 장 우루과이 라운드 (UR) 協商의 擡頭背景

1. 世界貿易秩序의 再編	1
2. 世界 農産物 交易構造의 變化	6
3. 美國의 經濟與件의 惡化	10
4. 關稅 및 貿易에 관한 一般協定 (GATT) 과 農業	12

제 2 장 上半期 UR 農産物協商

1. 푼타 델 에스테 (Punta del Este) 閣僚宣言	23
2. 中間評價會議 (Mid-Term Review)	26
가. 中間評價合意까지의 論議事項 및 各國의 提案內容	26
나. 中間評價合意 結果	31

제 3 장 下半期 UR 農産物協商

1. 主要 議題別 各國의 提案內容	36
가. 國境保護 (Border Protection)	38
나. 國內補助 (Internal Support)	42
다. 輸出補助 (Export Competition)	48
라. 開途國 優待	51
2. 農業의 非交易的 考慮事項 (NTC)	53
3. 議長草案	58

제 4 장 Country List 및 Offer List 作成 · 提出

- | | |
|-------------------------------|----|
| 1. Country List 作成 및 提出 | 65 |
| 2. Offer List 作成 및 提出 | 91 |

제 5 장 우리나라의 Request List 作成

- | | |
|--------------------------------|-----|
| 1. Request작성제출의 基本方向 | 119 |
| 2. Request대상 국가의 輸入規制 措置 | 122 |

제 6 장 向後 協商展望 및 우리의 對應方案

- | | |
|-----------------------|-----|
| 1. 향후 협상전망 | 129 |
| 2. 우리農業에 미치는 影響 | 131 |
| 3. UR農産物 協商 對策 | 133 |
| 4. 國內 農業政策方向 | 135 |

부 록 우루과이 라운드(UR) 農産物協商 主要背景 文書

- | | |
|-----------------------------------|-----|
| 1. 푼타 델 에스테 宣言文 | 137 |
| 2. 우루과이 라운드(UR) 中間評價合意文 | 141 |
| 3. 우루과이 라운드(UR) 農産物 協商 議長草案 | 145 |

表 目 次

제 1 장

표1-1 세계무역구조의 多極化 추이	3
표1-2 GATT 비관세 목록	4
표1-3 주요국의 GDP에 대한 서비스산업비중 추이	6
표1-4 서비스 무역의 포괄범위	6
표1-5 세계 소맥·사료곡물의 純輸入 추이, 1960~86	9
표1-6 미국의 貿易赤字 및 財政赤字 추이	10
표1-7 미국의 농산물무역 추이	11
표1-8 미국의 농산물재고 추이	11
표1-9 GATT의 多者間 協商 推進現況	13

제 2 장

표2-1 UR개시전까지의 추진경과	23
표2-2 농산물·열대산품 그룹의 協商目的 및 特別考慮事項	25
표2-3 장단기조치	27
표2-4 食糧安保 및 農業의 特殊性	28
표2-5 농업보호 總量測定 裝置(AMS)	29
표2-6 동식물위생규제	29
표2-7 開途國優待措置	30
표2-8 市場接近	30
표2-9 각 방안별 검토사항	32

표2-10 UR 개시이후 中間評價까지 협상과정	34
표2-11 主要協商議題	35

제 3 장

표3-1 關稅化에 대한 각국입장	38
표3-2 國內補助에 대한 협상의제와 각국의 입장	43
표3-3 輸出補助金에 대한 협상의제 및 각국입장	49
표3-4 開途國우대조치에 대한 각국의 입장	51
표3-5 NTC에 대한 GATT규정 및 주요국의 입장	54

제 4 장

표4-1 議長草案의 減縮對象 정책과 허용대상정책의 구분	77
표4-2 AMS 대상정책의 재분류	79
표4-3 식량작물의 PSE, 1988	84
표4-4 축산물의 PSE, 1988	85
표4-5 關稅相當額(TE) 산출기준	87
표4-6 계산가능한 품목에 대한 국내보조금 현황	88
표4-7 TE 산출대상품목수	89
표4-8 품목별 관세 상당치(TE) 산출내역	90
표4-9 주요국 Offer List 주요내용	94
표4-10 주요농산물의 생산현황과 농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107
표4-11 農産物 輸入開放에 따른 農家被害額	109
표4-12 방안 I 국내보조, 국경조치 공히 30% 감축시	114
표4-13 방안 II 국내보조 50% 국경보호20% 감축시	114

제 5 장

표5-1 輸出有望 品目	121
표5-2 아국에 대해 開放要求가 크거나 향후 예상되는 품목	121
표5-3 미국의 국경조치	122
표5-4 우리나라의 수출 농산물에 대한 輸入規制(미국)	123
표5-5 케언즈 그룹의 주요 국경조치	124
표5-6 우리나라의 수출농산물에 대한 수입규제조치(케언즈)	125
표5-7 EC의 主要國境措置	125
표5-8 우리나라의 수출농산물에 대한 수입규제(EC)	126
표5-9 일본의 주요 국경조치	127
표5-10 우리나라의 수출농산물에 대한 수입규제(일본)	128

제 6 장

표6-1 주요품목별 補助類型	132
-----------------------	-----

圖 目 次

제 4 장

圖 4-1 시나리오별 關稅化 履行方案	112
----------------------------	-----

要 約

- GATT는 2次 世界大戰으로 크게 침체된 世界經濟를 自由貿易의 擴大를 통해 活性化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948년에 設立되었다. 世界 貿易에 관한 一般原則을 主要內容으로 하고 있는 GATT는 設立以來 1979년 東京라운드가 끝나기까지 7차례에 걸친 改正補完過程을 거치면서 工產品에 관한 한 貿易의 自由化 擴大에 寄與해 왔다.
- 그러나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世界 經濟는 地域主義가 深化되는 한편 成長趨勢가 鈍化되면서 各國의 保護主義가 深化되었다. 이에 따라 GATT에 정면으로 違背되거나 또는 迂廻하는 各種 非關稅障壁이 만연하게 되어 기존의 GATT 질서체계가 약화되었음은 물론 서비스, 投資 및 知的所有權 등 GATT가 이전에 포괄하지 못한 새로운 交易分野에 대한 問題가 擡頭되면서 既存의 GATT體系를 새롭게 修正補完할 必要性이 擡頭되었다.
- 그동안 GATT 設立以來 거의 例外的으로 취급되어 온 農產物分野에 있어서도 70년대 초반의 食糧危機를 거치면서 세계 각국은 自國의 農業을 각종의 輸入障壁으로 保護하는 동시에 과도한 支援을 한 결과 1980년대 들어서는 世界的인 供給過剩問題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過剩 農產物을 解消하기 위해 美國 등 農產物 輸出國들은 輸出補助金을 과도하게 지급하고 輸出擴大를 도모하여 世界 農產物 市場은 交易의 危機를 맞이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交易秩序 確

立이 要求되었던 것이다.

즉, 農産物 市場秩序의 回復을 위해 市場接近 條件의 改善, 各國
家別 農業政策이 農産物貿易에 대한 歪曲防止 그리고 直·間接의
輸出補助金을 제거해야 한다는 絶박함과 앞서 언급한 世界 經濟秩
序 및 交易環境變化에 맞추어 GATT規律의 效率的 改善이 필요하
고 農業分野도 多者間 貿易體制下에서 論議되어야 한다는 必要性
에서 UR이 개시된 것이다.

○ UR 開催에 대한 論議는 83년 5월 윌리엄스버그 經濟頂上會談에
서 처음 제기되었고 동년 11월에 美·日 首腦會談에서 美國의 主
導下에 多者間 貿易協商을 推進하기로 合意를 봄으로써 본격적으
로 거론되기 시작했으며, 그후 3년여의 國際 論議過程을 거쳐
1986년 9월 우루과이의 Punta del Este에서 제8차 多者間 協商인
UR이 開始되었다.

○ 이때 채택된 Punta del Este 閣僚 宣言文에 나타난 궁극적 목적은
世界 農産物의 需給不均衡 및 不確實性的의 緩和와 모든 貿易制限과
歪曲措置를 矯正하고 農産物 輸出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措置들
을 강화된 GATT 規定 및 原則에 따르도록 하는데 있다.

○ 이를 위해 輸入障壁 緩和를 통해 市場接近을 개선하고 直間接 補
助金의 緩和 및 관련규정의 강화로 農産物 交易의 競爭條件을 개
선하며 農産品에 대한 衛生障壁을 극소화시키기 위해 國際協定에
調和시키도록 하였다.

○ 그러나 1987년 2월부터 시작된 UR 農産物 協商은 農産物이 갖는

政治·社會的 민감성으로 인해 協商目標인 “農産物 交易의 自由化 擴大”에는 각국이 공감하나 世界農産物市場의 需給不均衡 및 價格 沈滯原因에 대한 輸出入國間의 근본적 視覺差異로 인해 協商은 難航에 빠지게 되었다.

- 특히 1988년 12월 UR 中間評價를 위해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貿易協商委員會(TNC) 회의에서는 농업보조금의 완전철폐를 주장하는 美國과 점진적 철폐를 주장하는 EC와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농산물 協商分野는 합의에 실패하였으나 1989년 4월 재개된 TNC 高位 閣僚會議에서 農産物分野의 中間評價 合意案이 정식으로 채택됨으로써 우루과이라운드 農産物協商은 實質的으로 下半期 協商에 돌입하였다고 할 수 있다.
- 1989년 4월 中間評價 會議에서 합의된 주요내용은 長期措置 및 農業改革 指針事項, 短期措置에 대한 사항 그리고 衛生 및 食品衛生規定 등의 3個分野에서 中間合意가 이루어 졌다.
- UR 農産物協商에서 中間評價까지 각국의 提案이 구체화되지 못했으나 그후 下半期 農産物協商에서는 각국의 제안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는데 各國의 議題別 提案內容은 各國의 農業構造 및 世界 農産物 市場에 대한 각기 다른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提案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UR 農産物協商의 주도권을 가진 美國과 EC는 첨예한 對立을 보이고 있다.
- 美國은 世界 農産物 市場需要擴大 및 市場占有率을 높이기 위해 農産物貿易의 完全自由化를 주장하고 있다. 즉 高生産性을 가진

美國으로서는 모든 農業保護政策을 完全히 철폐할 경우 農産物 輸出에서 競爭力 優位를 점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따라서 미국은 모든 非關稅障壁을 關稅化(Tariffication) 하되 關稅割當量을 확대하고 동시에 10년의 經過期間을 거쳐 關稅 相當額을 제로 또는 低率의 關稅로 낮춘다는 충격적인 제안이다. 國內補助에 있어서도 各種 農業政策을 許容對象政策, 規制對象政策, 撤廢對象政策으로 분류하고 許容對象政策을 公共社會 福祉政策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종래의 農業政策 대부분을 否定하는 立場이다. 輸出補助金도 원칙적으로 完全히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美國案을 요약하면 대외적으로는 非關稅障壁을 完全히 철폐하고 최종적으로 關稅에 의해서만 國境保護措置를 하고 대내적으로는 産業政策的 성격은 궁극적으로 完全히 철폐하고 公共福祉政策만을 남기자는 提案이다. 이와 유사한 입장이 케언즈그룹이며 美國案을 모방한 듯한 것이 특징이다.

- 한편 EC는 共同 農業政策 실시로 域內 農産物 過剩問題와 赤字 輸出로 인한 財政壓迫이라는 문제를 UR이라는 外壓을 이용해 해결하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農業保護라는 근간을 위협하지 않는 점진적 減縮案을 제시하고 있다. EC는 美國의 關稅化 제안을 거부하면서도 産品の 保護水準을 變更할 수 있는 再均衡(rebalancing)을 고려한다면 關稅化 용의가 있다는 입장으로 아주 복잡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國內補助도 美國이 個別政策을 대상으로 完全撤廢案에 대해 EC는 個別政策에 대한 규제를 거부하고 총괄적 개념으로 삭감하자는 입장이다. 輸出補助金은 美國과 반대로 輸出補助金 禁止에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EC안은 미국안과 첨예한 對立關係에 있다.

- 韓國, 日本, 스위스 등 주요 輸入國들은 國內 農業事情을 들어 非交易的 考慮事項(NTC) 認定 등을 주장하면서 최대한 現象維持에 目的을 두고 있다.
- 開途國 優待에 대해서는 先進國과 開途國間에 意見差異를 보이고 있는데 先進國은 어느정도의 開途國 優待措置는 認定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開途國들은 개도국의 경제 및 農業與件을 들어 더욱 많은 부분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취약한 농업여건을 들어 개도국 우대를 요구하고 있으나 先進國은 開途國을 先發開途國과 低開發 開途國으로 분리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開途國 優待措置 전부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 非交易的 考慮事項(NTC)은 交易를 통해서 이룰 수 없는 농업이 지닌 고유한 역할로서 이에는 食糧安保, 環境保全, 雇傭維持, 地域開發 그리고 社會的 혹은 文化的 측면과 관련된 기능이 포함될 수 있는 바 輸出國들은 이에 대해 소극적인 반면 韓國을 비롯한 輸入國들은 NTC가 GATT rule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輸入國마다 關心事項 및 保護品目에 의견 차이가 심해 共同步調를 취하는데는 限界를 보이고 있다.
- 이와 같이 거의 모든 協商議題에 대해 각국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협상 妥結展望이 극히 不透明해 지자 드쥬議長은 合意過程을 거치지 않은 채 職權으로 議長草案을 GATT에 제출했다. 이에 議長과 輸出國들은 議長草案이 協商의 基礎로 채택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입국들은 주로 輸出國 立場만 反映된 議長草案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공식적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議長草案은 10월1일까지 Country List(CL)를 各國이 제출하고 TNC 會議에서는 10월 15일까지 Offer List(OL)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 協商參加國들은 農産物그룹 議長草案에 따라 各國의 農業保護現況資料인 Country List를 1990년 10월 1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Country List는 國內補助, 國境保護, 輸出補助 등 크게 세 分野에 대한 現況資料로 農業協商的 基礎資料로 이용될 것이다. 그러나 議長이 요구한 提出時限를 크게 넘긴 1990년 11월 15일 현재까지도 모든 國家가 CL을 제출하지는 못했으며 현재 美國, Cairns 그룹, EC, 北歐諸國, 日本, 韓國 등 主要 協商參加國이라고 할 수 있는 39개국의 CL만이 제출된 상태이다. 議長草案에서 밝힌 CL 작성상의 基本原則이나 協商原則이 各國의 발전단계, 貿易歪曲效果, 農業現況 등을 고려할 수 있는 틀을 결여하고 있어 協商終了 時限을 1개월도 남기지 않은 현재까지도 CL 作成의 기본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 主要國들의 CL을 분석해 보면 各國이 모두 자신들의 利益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農業保護 現況資料를 作成했음을 알 수 있다. 美國과 Cairns 그룹중 주요 農産物 輸出國들은 輸出國의 입장에서 비교적 議長草案에 충실하여 자료를 작성했으나 輸入國들은 議長草案의 해석상의 융통성 및 문제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輸入國의 어려운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는 많은 수입국들이 國內 補助金 現況資料에 있어 대부분의 農業支援政策을 NTC 目的達成, 農業開發 目的 등의 이유로 許容對象政策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다. 그외에도 國內 補助資料는

물론 關稅相當額 資料 등에 있어 구체적 숫자를 밝히지 않고 제출된 자료들도 있어 協商의 어려움을 예견하고 있다.

- 韓國도 食糧輸入國의 입장에서 韓國의 利益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議長草案을 해석하여 CL을 작성했으며 또한 지금까지 UR 農業協商에서 가장 강력하게 農業協商 및 農産物그룹 議長草案에 반대해 온 韓國의 기본적 입장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韓國은 農業保護 現況資料중 國內補助現況資料의 경우에 AMS 計測이 가능한 품목으로 제출한 쌀, 보리, 콩, 옥수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鷄卵, 牛乳에 대한 補助金 가운데 계란을 제외한 모든 품목은 減縮對象補助金(政策)이 없는 것으로 작성하였다. 모든 非關稅措置를 關稅로 전환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15개 NTC 품목은 關稅化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지의 표명으로 이들 품목에 대한 關稅相當額을 CL에 표시하지 않았다. 輸出補助金은 微微하여 없는 것으로 작성하였다.

- 한편 Offer List는 그동안 協商에서 우리나라가 견지해 왔던 基本立場을 토대로 작성하되, 최근까지 제출된 各國의 Offer 내용을 검토한 후 國內의 與件을 감안하기 위하여 NTC, BOP 卒業 및 開途國 優待에 따른 猶豫期間 設定問題, 구체적인 減縮幅 및 關稅割當量 設定 그리고 他輸入國과의 衡平性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Offer 試案을 마련해 보았다. 특히 NTC 對象品目の 選定은 國民의 基礎食糧으로서 開放時 農家被害가 크며, 生産額 比重이 높은 품목으로서 NTC 目的達成을 위해 必須不可缺한 품목으로 선정하되 協商에서의 설득력을 감안하여 시나리오별 7개의 NTC 對象品目を 선정해 보았다. BOP 卒業 및 開途國 優待에 따른 猶豫期間

설정은 UR 關稅化 논의와 연계시켜 가능한 경우를 시나리오별로 검토해 보았으며 減縮幅의 경우도 현행 우리나라 農業保護의 성격을 감안하여 검토하였다.

-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段階別 Offer 試案을 작성하였는 바 최초 단계에서는 NTC 對象品目 전체를 減縮對象 및 關稅化 對象에서 제외하되 기타 品目の 경우 6년간의 猶豫期間後 감축하는 내용이며, 제2, 3단계의 경우 NTC 품목의 일부를 감축대상 및 關稅化對象으로 하되 3~4년의 猶豫期間을 설정하였으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쌀을 제외한 전품목을 減縮對象으로 하되 關稅化에서는 쌀을 제외시키고 대신 關稅割當量을 이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다.
- 적극적 協商參與인 동시에 최선의 防禦策의 일환인 Request List는 우리나라에 대한 交易 相對國의 輸入開放을 저지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輸出有望品目에 대한 교역 相對國의 保護措置 撤廢 要求라는 기본목적하에서 작성되어야 할 것인 바 주요 국가의 農産物 輸入規制措置 現況을 검토하였다.
- 美國의 경우 Waiver 및 食肉輸入法, 輸出自律規制, 相計關稅 및 반덤핑關稅에 의해 農畜産物を 규제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果實類 및 양송이통조림, 花卉類에 대하여 반덤핑關稅 및 動植物 衛生檢疫 등의 수입규제조치를 행하고 있으며 케언즈그룹의 경우 특히 캐나다가 新鮮과일 및 野菜에 高率의 季節關稅를 부과하고 있다. EC의 경우 變動賦課金制에 의한 輸入規制를 실시하고 있으며 日本은 쿠타 및 彈力關稅, 國營貿易 등의 非關稅措置를 실시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國家別 Request List 작성(안)을 협상전략 상 생략하였음을 알려 드린다.
- 農産物協商은 각국의 意見對立과 입장차이에도 불구하고 協商이 遲延되기는 하겠지만 協商을 主導하고 있는 美國과 EC 간의 意見調整으로 妥結될 것으로 본다. 이때 關稅化는 條件附로 수용이 되어 農産物 貿易은 대폭적으로 自由化가 이루어지는 반면 總體的인 補助金減縮(global approach) 方式이 채택되어 政策選擇의 신축성은 확보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日本, 스위스 등이 주장하는 NTC에 의한 例外措置는 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 반영될 것으로 본다.
-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先進國에 비하여 國境保護措置로 인한 農業保護의 비중이 매우 큼(대부분의 품목에 있어서 90% 이상)을 감안할 때 關稅化와 關稅相當額의 減縮은 農家所得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國內補助金의 減縮으로 農業에 대한 投資低調, 農業機械化 蹉跌, 輸出市場開拓에 대한 隘路 등의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본다.
- 남은 協商에서는 協商原則보다는 關心國들끼리의 雙務協商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우리나라가 주장해 온 NTC, 開途國 優待措置, 猶豫期間 許容 등에 관한 사항을 美國, 케언즈그룹과의 雙務協商에서 효과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戰略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 UR 農産物 協商의 妥結以後에는 우리 農業도 不可避하게 國際化, 開放化되어 나갈 것이다. 韓國農業이 國際化, 開放化에 順응하기 위해서는 國際分業과 比較優位 원리에 입각한 專門化의 方向으로 農業生産體制를 轉換시켜야 할 것이다. 作目體系 再調整에 따른 기술적인 未備事項이나 生産基盤造成 등에 대해서는 현재 UR에서의 減縮移行期間이나 猶豫期間동안 政府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제1장

우루과이 라운드 (UR) 協商의 擡頭背景

1. 世界貿易秩序의 再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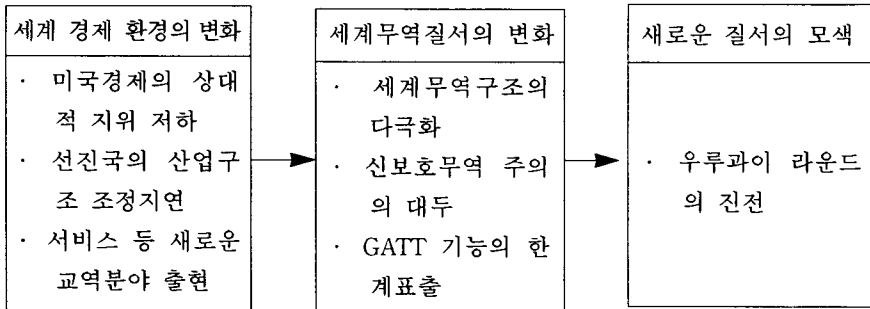
戰後의 세계무역질서는 自由貿易主義에 의한 범세계적인 교역확대를 표방한 하바나(Havana) 헌장의 정신에 따라 1948년 1월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 23개국이 關稅 및 貿易에 관한 一般協定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GATT)을 창설함으로써 그 기본틀을 형성하였다.

그 후 세계교역은 GATT 체제의 창설정신에 따라 무차별 最惠國待遇의 실현과 관세인하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를 통하여 급속한 신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범세계적인 자유무역질서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GATT를 이끌어 왔던 미국의 상대적인 경제력 저하에 따른 세계 무역구조의 多極化, 선진국의 산업구조조정 지연 등으로 인한 보호무역주의의 擡頭 및 서비스, 지적소유권, 무역관련투자 등 새로운 交易分野의 출현 등으로 구조적인 변화를 맞게 되었다.

특히 1980년대에 들어 世界經濟의 성장둔화와 미국의 國際收支惡化를 배경으로 新保護貿易主義가 대두되면서 전후 30년간 세계교역의 신장에 기여해 온 GATT 체제가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질서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세계무역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채 局地的으로 자유무역 체제를 유지하려는 地域主義(regionalism)가 심화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질서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1970년대 이후의 世界貿易秩序의 변화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世界 貿易構造의 多極化

2차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주도하에 유지되어온 세계무역질서는 미국경제의 비중이 점차 저하되면서 그 구조가 多極化되어 가고 있다 <표 1-1참조>. 즉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은 전세계 GNP의 40% 및 전세계 交易量의 20%를 상회하는 經濟力의 절대우위를 바탕으로 無差別原則에 입각한 多者間 무역체제를 이끌어 왔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 저축과 투자의 불균형, 소비지향적인 성장구조, 생산성 저하에 기인한 산업의 國際競爭力 弱화 및 그에 따른 무역적자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세계경제에서의 지위가 급속히 저하되어 세계 總輸出에

대한 미국의 수출비중은 1980년대 들어 12%대 까지 떨어졌다.

반면 日本經濟는 1970년대 들어 전자·자동차·컴퓨터 등을 중심으로 연평균 5% 이상의 高度成長을 구가함에 따라 1960년대 초반 세계 總輸出에 대한 점유비중이 약 3% 정도에서 최근에는 10%에 육박하였으며 EC도 1992년에 域內統合을 앞두고 東歐經濟 相互援助會議과 상호 인정협정을 체결하는 등 세계경제에서 위상제고에 부심하고 있다.

한편 아시아 新興工業國(NICs)는 1960년대 이래 수출주도형 공업화 전략을 강력히 추진하여 섬유·조선·전자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특화함으로써 成長基盤을 형성하고 1980년대 들어 자동차 및 반도체, 컴퓨터 일부 첨단산업에까지 급속히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세계무역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표 1-1 世界貿易構造의 多極化 推移

단위 : 억달러, %

	1960	1970	1980	1990
세 계 총 수 출	1,201 (100.0)	2,906 (100.0)	18,921 (100.0)	28,942 (100.0)
미 국	206 (17.2)	432 (14.9)	2,208 (11.7)	3,640 (12.6)
일 본	41 (3.4)	193 (6.6)	1,304 (6.9)	2,752 (9.5)
E C 4 개 국 "	325 (27.1)	850 (29.2)	4,971 (26.3)	7,754 (26.8)
아 시 아 N I C s	30 (2.5)	73 (2.5)	69 (3.7)	2,464 (8.5)

주 : 1) 서독,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2) () 내는 구성비

자료 : IMF, IFS Supplement on trade statistics 1988

IMF, IFS 1990.5

나. 新保護主義의 擡頭

세계무역은 1960년대의 自由貿易의 전성기를 경험한 후 1970년대 들어 석유파동을 계기로 保護貿易主義가 세계적으로 크게 팽배해졌다. 즉 2차에 걸친 石油波動으로 세계경제 성장이 크게 둔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보호주의가 강화되고 정부개입의 폭이 넓어지면서 GATT 규정에 위배되는 輸入規制가 현저히 증가하게 되었던 것이다 <표1-2 참조>. 또

표1-2 GATT 非關稅 目錄

항 목	세 부 내 용
정부의 무역개입조치 및 제한적 무역관행	정부지원, 상계관세, 정부구매, 국영무역(정부 독점), 기타 정부의 제한적 무역관행
관세 또는 세관행정절차 관련조치	反덤핑관세, 관세평가, 관세분류, 영사서류 및 양식, 샘플, 원산지규정, 세관절차
기술장벽	기술규정 및 표준, 검사, 인증
구체적 수입 규제조치	수량제한 및 수입허가, 수입금지, 스크린쿼타, 외환통제, 쌍무협정에 따른 차별대우, 수입국별 차별대우, 국내가격규제조치, 관세쿼타, 표시, 상표, 포장요건
수입시의 비용증가	사전수입 예치금, 과징금, 항만세, 통계세, 차별적 신용제도

한 80년대에 들어와서는 보호무역의 대상도 종전의 幼稚産業 중심에서 斜陽産業 뿐만 아니라 基幹産業과 戰略産業으로 까지 확대되었고 일부 선진국의 경우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와 산업의 구조조정의 지연 등으로 무역수지적자가 대폭 확대되고 성장이 둔화된 점도 보호주의를 만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보호주의의 초기형태는 關稅 및 輸入數量制限 등으로 나타났으나

1980년대에 들어서는 緊急輸入制限措置 (Safeguards), 輸出自律規制 (Voluntary Export Restraints : VER), 市場秩序維持協定 (Orderly Marketing Arrangement : OMA) 등의 GATT 규정에 위배되는 비관세 장벽이 동원되었으며 최근에는 不公正 貿易을 방지한다는 명목하에 반덤핑관세, 相計關稅, 市場開放壓力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다. 새로운 交易分野의 出現

産業構造가 高度化됨에 따라 GATT가 상정하지 못한 서비스·투자·지적소유권 등의 새로운 무역문제가 발생한 것이 최근 世界經濟의 또 다른 특징이다.

미·일의 경우 등 GDP중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상회하여 제조업의 2배를 넘고 있으며 고용에 있어서도 1988년 현재 미국은 전체 고용자수의 76.1%, 일본은 58.3%가 서비스 산업에 종사함으로써 선진국에 있어서 서비스산업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표1-3 참조>.

이와함께 서비스 무역의 비중도 크게 늘어나 1988년말 현재 전세계 서비스 무역액이 상품수출액의 약 20%에 접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비스 무역에 대한 마찰도 증가하고 있다.

서비스에 대한 貿易規制는 비관세 장벽의 성격이 강하며 서비스는 수요가 있는 곳에서 생산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勞動力을 비롯한 생산설비의 이동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상품무역과는 달리 세계 貿易環境에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고, 특히 서비스 무역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경쟁력 격차가 크고 서비스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고 기초통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는 등 공정한 서비스무역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規範定立이 요청되고 있다.

표1-3 主要國의 GDP에 대한 서비스産業比重 推移

단위 : %

	미국	일본	서독	영국	한국
1975	63.8(23.4)	55.8(30.2)	49.9(34.5)	53.8(26.4)	41.0(26.1)
1980	64.6(21.8)	57.8(29.2)	51.4(32.6)	51.1(24.0)	44.1(29.7)
1985	67.6(20.4)	59.5(29.8)	54.6(32.3)	53.6(22.6)	45.4(30.3)
1988 1)	68.8(19.9)	60.2(29.0)	-	57.3(21.8)	45.7(32.5)

주 : 1) 미국, 영국은 86년 수치이며 일본은 87년 수치

2) ()내는 제조업의 비중

자료 : UN National Accounts Statistics(1986)

일본 경제기획청, 국민경제계산연보(1989)

표1-4 서비스貿易의 包括 範圍

포 괄 범 위	구 체 적 인 서 비 스 의 종 류
서비스 자체의 국경간 이동 서비스	해운, 항공, 통신
소비자의 국경간 이동이 수반되는 서비스	관광
생산요소(자본, 노동)의 이동이 수반되는 서비스	노동력 이동이 주로 수반 : 건설, 법률, 회계 자본 이동이 주로 수반 : 금융, 보험, 유통, 정보

자료 : GATT 사무국

2. 世界 農産物 交易構造의 變化

80년대는 農産物 貿易摩擦로 점철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1970년대 까지의 食糧危機(Food Crisis) 상황은 1980년대 들어오면서

交易危機(Trade Crisis) 상황으로 轉換되었다. 이러한 80년대의 농산물 교역위기는 단기적이고 景氣 循環的인 問題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서 1970년대와 그 이전의 정치 경제적 교역환경의 변화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1929년에 시작된 세계적인 大恐慌은 세계교역의 커다란 위축을 가져왔고 농산물 교역도 예외없이 다른 상품과 같이 대공황과 그에 따른 보호주의 무역의 등장으로 1930~40년대 농산물 교역은 침체를 면치 못했다.

특히 해외의 저렴한 식량공급에 의존하였던 일부 국가에서는 세계 제2차대전과 그로 인한 해외운송시설의 대규모 파괴등으로 인한 해외 공급원의 붕괴로 각국은 식량자급자족 및 국내공급확대 등 식량안보의 식이 고조되었다.

그러나 1950~60년대에 걸쳐 일어난 産業化의 진전과 所得向上은 식생활의 패턴을 개선시키는 한편 육류 및 낙농품에 대한 소비를 증대시켜 이 기간의 세계 농산물 교역은 완만하나마 지속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60년대 들어오면서 농산물 교역구조가 종전의 선진 국간 무역에서 경제성장과 人口增加率이 높은 개도국의 對先進國 식량 수입 위주로 바뀜에 따라 식량의 수요는 공급을 상회하게 되었으며 이는 1970년대에 더욱 가속화되었다. 특히 1970년대 초반 소련의 농업 정책변화로 세계농산물 시장상황은 크게 변모하게 되었다. 즉 그동안 食糧自給政策을 취해왔던 소련은 곡물에 대해 국내생산 부족분을 해외 수입으로 충당하기 시작하였고, 대부분의 東歐圈國家들도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감에 따라 國際穀物市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이와같이 소련을 위시한 동구권 국가들과 개도국들의 식량수입 증가와 더불어 1972/73년 세계적인 흉작에 따른 곡물생산의 감소는 국제곡물 시장에서 엄청난 價格波動을 초래했으며, 특히 食糧輸入國들의 輸出禁

止(embargo) 및 輸出賦課金(export levies) 등의 수단을 통한 국내가격安定化政策은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을 더욱 심화시켰다.

한편 세계유수의 식량기구와 연구기관에서조차 식량부족 및 농산물 가격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기상학자들도 기상이변에 의한 향후 곡물 생산의 지속적 감산을 예상하는 등 식량위기감은 실제 이상으로 더욱 고조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각국의 정책입안자들의 첫 번째 대응방안으로써 자국의 농산물 시장을 세계시장의 변화로부터 격리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콩에 대해 수출 금지 조치를 취했고 EC는 곡물수출에 賦課金を 부과하였으며 일본은 미국과 賣買協定(Butz-Abe협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농산물 수출입국을 막론하고 國內農業保護와 함께 자국의 농업 생산을 장려하는 방향으로의 투자및 정책에 주력하게 되었는데 이결과 1980년대 초에는 인도·중국 등 다수의 개도국에서 食糧自給이 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EC도 식량수입국에서 식량수출국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처럼 세계 식량공급은 각국의 증산 및 농업보호정책에 따라 크게 증가하였으나 세계식량수요는 80년대초 세계적 경제불황과 開途國들의 외채부담 가중 등으로 그 증가율은 감소하였다.

그 결과 세계적인 농산물 過剩生産과 過剩在庫 문제가 초래 되었으며 이러한 과잉재고의 처리를 위해 농산물 수출국간에 이른바 “輸出補助金 戰爭”이 시작되어 이에 따른 각국의 재정압박은 유례없이 커지게 되었다.

1960년대 이후 세계곡물 교역구조의 중요한 변화를 보면 <표1-5>에 서와 같으며 그중 중요한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도국의 수입이 이 기간동안 급증하여 1960/61년 1,800만M/T이었던 것이 1980/81년에는 7,400만M/T으로 급증하였다. 또한 종래의 穀物輸出國이던 소련이 대규모 수입국으로 전환하였는데 소련은

표 1-5 世界小麥 · 飼料穀物の 純輸入 推移, 1960~86

單位：百萬 M/T

年度	EC	西歐	日本	蘇聯	東歐	中國	開途國
1960/61	21.06	3.97	4.66	-6.24	5.08	2.61	18.18
1961/62	23.71	3.36	5.13	-8.15	5.95	5.96	18.97
1962/63	19.87	4.57	5.53	-8.03	7.85	5.12	19.08
1963/64	20.33	4.40	8.41	5.18	8.10	5.79	19.09
1964/65	17.31	3.97	8.57	-1.53	7.83	4.96	19.06
1965/66	21.62	6.48	8.58	3.69	6.65	6.11	20.12
1966/67	20.26	6.28	11.35	-1.96	3.32	4.94	28.39
1967/68	18.56	4.14	11.65	-4.42	3.37	4.23	25.40
1968/69	15.76	3.55	12.62	-6.18	2.90	3.50	20.74
1969/70	13.55	4.18	14.41	-6.27	3.32	4.94	28.39
1970/71	22.18	5.18	15.28	-7.53	9.84	3.63	22.74
1971/72	14.47	4.47	15.20	1.10	7.90	3.00	29.89
1972/73	12.85	4.89	17.49	20.87	5.72	5.97	36.39
1973/74	14.56	7.63	19.43	5.11	5.61	7.45	43.67
1974/75	12.25	6.93	18.49	0.23	7.09	5.91	48.87
1975/76	11.69	6.54	19.42	25.15	8.74	1.85	48.55
1976/77	21.82	7.58	21.38	7.30	10.55	2.93	48.79
1977/78	11.54	9.11	22.67	16.30	9.49	8.53	60.68
1978/79	6.50	8.78	23.53	12.54	12.90	11.05	62.21
1979/80	2.65	10.47	24.38	30.03	13.30	10.80	77.30
1980/81	-3.82	8.00	24.57	33.50	13.72	14.44	74.68
1981/82	-5.47	13.24	23.74	45.80	9.28	14.32	65.22
1982/83	-9.97	8.94	24.24	32.80	2.84	15.60	80.17
1983/84	-11.09	7.53	26.06	31.60	2.38	9.48	89.39
1984/85	-19.59	4.31	26.05	31.60	-0.15	1.54	87.14
1985/86	-17.13	0.44	26.82	28.90	3.47	0.06	69.50

資料：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1970/71년까지 700만M/T의 곡물을 수출하였으나 그 후 상황이 바뀌어 1980/81년에는 3,300만M/T에 달하는 곡물을 수입하게 되었다.

일본 역시 이 기간동안 곡물수입이 급증하여 1980/81년도 곡물 수입량은 1960/61년도 대비 약 5배이상에 달했다. 한편 EC는 이기간 동안 강력한 農業支援 政策을 실시하여 1960/61년 2100만M/T 내외의 곡물을 수입하던 穀物純輸入國의 지위에서 1980/81년에는 약400만 M/T의 곡물을 수출하는 穀物純輸出國의 지위로 전환하게 되었다.

3. 美國의 經濟與件의 惡化

戰後 세계경제를 이끌어 왔던 미국은 1960년대 중반이후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왔고, 저축과 투자의 불균형, 消費指向의 성장구조, 生産性低下에 따른 산업경쟁력의 약화로 1980년대 초부터 貿易赤字의 계속적인 확대와 함께 재정적자가 누증되어 왔으며 또한 재정적자에 따른 금리의 폭등과 달러화의 評價切上 등은 미국의 무역적자 폭을 더욱 확대시켰으며 농산물의 국제경쟁력도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1-6 참조>

표1-6 美國의 貿易赤字 및 財政赤字 推移

單位：億 \$

區 分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貿易赤字	396	426	693	1,233	1,485	1,603	1,712
財政赤字	787	1,257	2,025	1,783	2,121	2,126	1,560

資料：韓國貿易協會，「韓國經濟의 主要指標」，1988

특히 미국의 농산물 수출은 1980년을 전후하여 對蘇 穀物禁輸措置, 수출경쟁국의 등장, 전통적인 식량수입국이던 EC의 농산물 수출국으로의 전환, 중국, 인도 등과 같은 종래의 주요 식량수입 개도국들의 自給率 제고 등으로 인하여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미국내의 농산물 재고도 계속해서 증가해 農業不況을 초래하였다 <표 1-8 참조>.

표1-7 美國의 農産物貿易 推移

單位：百萬 \$

區 分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¹⁾	1988 ¹⁾
農産物輸出	40,481	43,780	39,095	34,769	38,027	31,201	26,307	27,874	32,000
農産物輸入	17,276	17,218	15,481	16,271	18,916	19,740	20,875	20,643	20,500
農産物貿易 收 支	23,205	26,562	23,614	18,498	19,111	11,461	5,432	7,231	11,500

註1) 추정치.

資料：U. S. D. A., "Agricultural Outlook", 1988. 3

표1-8 美國의 農産物在庫 推移

單位：百萬M/T, %

區分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¹⁾	1988 ²⁾
世界(A)	314.7	285.9	306.9	354.6	302.3	362.0	429.6	459.9	394.9
美國(B)	88.7	71.2	109.6	149.9	77.9	96.8	178.7	201.9	165.7
B/A	28.2	24.9	35.7	42.3	25.8	26.7	41.6	43.9	42.0

註：¹⁾ 잠정치, ²⁾ 추정치

資料：U. S. D. A., "World Grain Situation and Outlook", 1988. 3

이와같은 輸出不振과 농산물 在庫의 증가에 따른 농산물 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내적으로는 目標價格 支持政策의 수행으로 농가에 대한 정부의 直接支拂金은 1987年 170억달러에 이르러 미국재정을 더욱 악화시켰다.

따라서 미국은 자체적으로 농산물 생산을 통제하고 목표가격과 貸付價格을 引下하여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업예산 적자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한편 무역상대국에 대한 농산물 시장개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Food Security Act, 1985).

미국은 전통적으로 GATT의 기본원칙인 무차별 最惠國待遇原則에 입각한 多者主義的 자유무역원칙을 通商政策의 근간으로 삼아왔으나 80년대 들어와 지속적인 무역적자 문제에 직면함에 따라 전통적 통상정책인 自由貿易主義 원칙에서 벗어나 雙務的인 통상정책에 중점을 두기 시작하였다.

즉 미국은 무역수지적자중 상당부분이 교역상대국의 불공정한 관행에 의한 것으로 인식하여 무역장벽 해소를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미국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농산물·첨단산업제품·서비스 및 知的的所有權 등의 무역규범 강화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우루과이라운드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4. GATT 와 農業

제2차세계대전 직후의 침체된 세계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多者間 貿易體制의 확립이 선진국들의 당면과제였다. 자유무역 확대에 의한 국제경제의 번영을 이루기 위한 공동노력의 결과로서, 外換의 안정을 통한 국제무역의 증진을 위해 國際通貨基金(IMF)이 창설되었고, 關稅 및 기타 貿易障壁

을 제거하여 실질적인 商品交易의 확대를 달성하기 위해 GATT가 발족되었다.

무역자유화에 의한 생산수준의 향상, 完全雇傭의 달성, 실질소득 및 有效需要의 증대, 世界資源의 開發 그리고 財貨의 생산과 교환의 확대를 목표로 1947년에 설립된 GATT는 그 후 1~4차의 一般關稅交涉, 딜론라운드, 케네디라운드, 동경라운드 등 7차에 걸친 국제무역협상을 통해 世界貿易의 自由化와 교역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표1-9 참조>.

표1-9 GATT의 多者間 協商 推進現況

횟 수	명 칭	참가국	기 간	관세인하	비 고
1	일반적 관세교섭	23	'47.4~'47.10	45,000품목 양허	
2	"	13	'49.4~'49.10	5,000품목 양허	
3	"	38	'50.9~'51.4	8,700품목 양허	
4	"	26	'56.1~'56.5	25억불 상당의 관세인하	
5	Dillon Round	26	'61.5~'62.7	4,400품목 양허	
6	Kennedy Round	62	'64.5~'67.6	주요 선진국의 제조 업분야 관세율이 35% 인하	반 덤 핑 협정 체결
7	Tokyo Round	97	'73.9~'79.7	9개 선진국의 제조업분야 가중 평균 관세율이 7.0%→4.7% 수준으로 인하 (33% 인하)	9개 MTN 협 정 반덤핑 협 정 전면개 정포함)
8	Uruguay Round	105	'86.9~'90.12	진행중	15 개 협상그룹

우리나라도 1967년 GATT에 가입하여 60여개 품목에 대한 關稅를 讓許하고 開途國이라는 입장에서 우리 수출품에 대한 無差別 待遇의 혜택을 누려왔다.

그 결과 현재 세계12위의 貿易大國으로서 세계경제에서 우리의 역할이 괄목할만 하게 성장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石油波動을 계기로 보호무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팽배해지고, 미국등 주요 선진국의 自由貿易 主導能力이 상실되었으며,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인하여 GATT 규율내에서 다루지 못하는 새로운 貿易分野가 출현하게 되었다. 또한 GATT 성립당시부터 강한 정치적 성격 및 食糧安保와의 관련성 때문에 농산물을 GATT 규칙 적용에서 예외로 취급해 옴으로써 GATT 체제도 크게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이로인해 제8차 다자간 貿易協商인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GATT 체제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무역협상의 기본 목적중의 하나는 여러 가지 예외적인 취급을 받고 있는 현행 農產物交易에 관한 규율을 공산품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좀더 자유화된 농산물교역 질서를 수립해 나가자는 데 있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GATT 성격 및 원칙 그리고 농업과 관련된GATT 조항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가. GATT 의 性格

GATT는 IMF 및 IBRD와 함께 제2차 世界大戰 후 새로운 國際經濟秩序의 수립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태동한 소위 브레튼우드(Bretton Woods) 체제의 세 軸 가운데 하나를 이루고 있는 국제협정이다. 1947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의 주요교역국들은 관세인하협상을 추진하여 그해 4월 제네바에서 23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관세인하협상이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 인하된 關稅率과 關稅引下의 효과를 보장하기 위

하여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 규정을 하나의 협약으로 정리한 것이 “關稅 및 貿易에 관한 一般協定(GATT)”이다.

그 이후 추가적으로 회원국이 늘어나 현재 정회원국 96개국, 잠정가입국 및 사실상 적용국 26개국 등 총 125개국이 GATT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이러한 GATT의 주요기능으로는 첫째, 국제무역과 무역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체계로서의 기능수행을 들 수 있고, 둘째로는 국제기구적 성격을 띠고 貿易交渉의 場 및 交易紛爭解決의 수단이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우루과이 라운드를 포함하여 종전에 몇 차례 이루어졌던 무역협상은 다자간 base로서의 협상과 교섭을 통해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따라 GATT의 法律體系를 수정·보완해 나감은 물론 그에 대한 異見調整과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한 모임 내지 회의였다고 할 수 있다.

나. GATT의 目的 및 一般原則

GATT는 關稅, 非關稅 및 기타 貿易障壁의 완화와 국제무역상 차별대우의 철폐를 통해 자유경제 원리에 입각한 국제무역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제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추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가지 기본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① 無差別(non-discrimination) 原則

GATT 제1조는 “일반적 最惠國 待遇(General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두 나라 사이의 협정에 따라 특정품목의 관세를 특정국가에 양해할 경우 다른 모든 가맹국들에게도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처럼 특정 당사국간의 특혜적 무역일지라도 모든 加盟國들에

게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국들간의 불평등한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② 自由貿易의 原則

GATT 제11조 1항에서는 관세 이외의 모든 輸出入制限措置를 금지시킴으로써 자유무역의 정신을 담고 있다. 아울러 GATT는 이러한 자유무역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루과이 라운드 이전에 이미 7차례에 걸쳐 다자간 관세인하 교섭을 추진해 왔다.

③ 公正競爭의 原則

일반적으로 補助金은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수출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공정한 경쟁 (fair competition)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GATT의 제16조에서는 일반보조금의 지급에 대한 규제와 輸出補助金의 支給禁止를 규정하여 공정경쟁의 원칙을 실현코자 하고 있다. 또 제6조에서는 交易對象國의 부당한 가격경쟁 및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조에서는 국내산품의 보호를 목적으로 수입품에 대해 관세 이외의 內國稅 및 기타 賦課金을 국내산품과 차별하여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내국세 및 규제에 대한 內國民待遇) 함으로써 수입국내에서의 국산품과 수입품간 경쟁조건의 균등을 보장하고 있다.

④ 開途國 優待原則

GATT의 제4부에서는 開途國에 대한 우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제36조에는 개도국의 對先進國 互惠主義義務(두 나라 사이의 교역에 있어서 교역조건을 한 나라만 유리해서는 안되고 상호균등해야 한다는 원칙)를 그리고 제37조에서는 개도국의 선진국시장 접근조건을 개선할 것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 GATT의 問題点

오늘날 GATT는 規律適用의 衡平性和 법적체계의 복잡성등으로 인해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제25조 義務免除(waiver) 특례조항은 GATT의 설립을 주도한 미국의 당시 농업상황이 반영된 조항으로서 미국은 1955년 자국의 농업법(A. A. A)에 대해 GATT로 부터 의무면제(waiver)를 획득하였다. 그 이후 다른 締約國들에 의해 GATT의 기본정신에 위배되는 다양한 예외조치가 이어져 GATT 기능의 효율적 수행이 저해되고 있다.

둘째, GATT는 1948년 原締約國(23개국)에 의해 서명, 동년 1월1일부터 발효되었는데 당시 GATT의 제Ⅰ부와 제Ⅲ부만을 우선적용하고, 제Ⅱ부는 각 체약국들의 기존 국내법과 일치하는 한도내에서만 잠정적용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GATT의 제Ⅱ부는 GATT운용상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이의 국내법 범위내에서의 잠정적용은 많은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였다. 즉 잠정적용대상의 원체약국과 이후 加盟國간의 GATT상 의무준수에 대한 의견대립으로 GATT의 기능은 크게 약화되었는데 이 같은 잠정적용의정서(Protocol of Provisional Application of the GATT)라는 선례에 따라 GATT 출범 이후에 가입한 국가들에는 가입의정서(Protocol of Accession)를 적용하게 됨으로써 실질적인 무역장벽 해소 효과를 반감시키게 되었다.

셋째, 동경라운드에서 채택한 여러개의 多者間 무역협정(M. T. N Code)이 GATT 체제내에 편입됨에 따라 GATT의 법적체계는 매우 복잡하게 되었다. 또한 이들 무역협정은 모두가 일부 署名國에게만 적용됨으로써 GATT의 原條文과는 그 적용대상 범위가 상이한 多者間協定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어 GATT의 법적체계는 그 복잡성과 함께 해결되어야 할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게 되었다.

라. 農業關聯 GATT 條項

① 제6조(덤핑방지세 및 相計關稅)

덤핑防止稅 및 상계관세의 정의, 부과요건 그리고 과세한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一次產品(Primary Commodity)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제6조7항). 즉 다음요건의 국내가격 또는 所得安定化 제도는 덤핑방지세 및 상계관세 부과에서 제외되는데, 첫째는 同制度가 국내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출되는 결과를 동시에 초래할 수 있는 경우(제6조7항-a)이고, 둘째는 同制度가 부당한 수출촉진 혹은 他締約國 이익에 중대한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경우(제6조7항-b)이다.

본 조항의 조치에 따른 통고의무에 따라 GATT에 통고된 조치들을 보면 지금까지 농산물에 대한 조치는 거의 없다. 즉 농산물에 대한 비합법적 성격의 보조금 지급행위는 여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데 他締約國에 의해 상계관세 등의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제 6조7항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실질적 효력은 없다 하겠다.

② 제11조(數量制限의 일반적 禁止)

관세 및 기타 과징금 이외의 모든 수량제한조치 사용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본조 2항에서는 농산물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몇가지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첫째, 식료품의 위급한 부족을 방지 또는 완화하기 위해 일시적인 수출금지 및 제한을 허용하며(11조2항-a)

둘째, 동종 혹은 代替國內產品의 數量制限 목적(11조2항-c-i), 일시적 과잉상태 해소목적(11조2항-c-ii) 그리고 국내생산이 근소한 動物性 產品의 수량제한 목적(11조-2항-c-iii) 등을 위해서는 農產品 혹은 水產品에 대해 수입제한을 허용하고 있다(11조2항-c).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국의 농산물 수입제한 조치는 제11조 규정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GATT 18조국에서 11조국으로 履行한 국가들중 대부분이 11조 규정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수입제한을 유지하고 있다. 즉 11조 履行國의 잔존 수입제한조치가 그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는 義務免除(waiver) 획득과 더불어 11조 履行國이 계속적으로 수입제한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용하고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이처럼 11조의 농산물 예외규정은 그 적용기준이 비현실적이어서 각국에 의해 과대해석되거나 혹은 정면위배됨으로써 그 정신이 크게 왜곡되어 오늘날 세계 농산물시장 왜곡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UR 농산물 무역협상의 GATT 규율강화를 위한 논의에서 제11조 조항의 개선방안이 크게 거론되고 있다.

③ 제16조(補助金 支給)

본 조항은 보조금을 일반보조금과 수출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일반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급보조금의 내용을 締約國團에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만을 규정하고 수출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급형식의 직간접을 불문하고 전면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本條 3항에서 1차산품에 대해서만은 수출보조금을 주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비교적 관대하게 다루고 있다. 또한 1차산품 수출증진을 위해 어떤 형식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過去代表的期間”에 당해산품의 세계수출액중 該當國이 차지하는 “공정한 몫”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농산물의 경우 수출보조금의 전면금지를 피하고 있다.

이처럼 本條는 1차산품에 대해서는 관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정자체의 구체성 결여로 인해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많아 실질적인 규제력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80년대 들어와 세계농산물 가격하락과 그에 따른 농산물 수출국의 “輸出補助金戰爭”을 야기시켰다. 즉 농산물에 관한 한 GATT 제16조 규정은 현실적으로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이같은 보조금 지급을 통한 농산물수출경쟁은 오늘

날 국제농산물 交易秩序의 왜곡에 중대한 요인이 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현재 진행중인 UR에서도 農業補助金 문제는 중요한 논의과제로 지정되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④ 제18조(經濟開發에 대한 政府의 支援)

本條項은 생활수준이 낮고 개발이 초기단계에 있는 後進國 조항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후진국의 생활수준 향상 및 경제개발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輸入制限을 허용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농업과 관련된 조항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동조항의 적용을 받고 있는 국가의 대부분이 수입제한 품목으로서 농산물을 주종으로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본조항의 적용대상국가로써 총279개의 예외적 수입제한 품목가운데 269개가 농산물인 사실과 89년 10월 우리나라 본조 B項의 졸업을 GATT 國際收支委員會로부터 권고받아 향후 8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1조국으로 이행해야 하는 실정을 감안해 보면 본조에 대한 검토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18조4항에 규정되어 있는 적용대상국가로는 개발의 初期段階에 있으며 생활수준이 낮은 국가 (제18조4항-a)와 開發途上에 있지만 어느정도 개발이 진전된 국가(제18조4항-b)와 같이 두 가지 범주로 구분되어 있다.

18조4항-a의 국가는 自國民의 일반적 생활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 자국의 산업육성을 위해서 締約國團과의 협의를 통해 관세양허의 수정 또는 철회를 할 수 있고(제18조-A), 동시에 자국의 對外財政狀態 개선 및 경제개발 계획 실시에 충분한 通貨準備 확보를 위하여 일명 국제수지보호 조항을 근거로 수입제한을 행할 수 있으며(제18조-B) 또한 자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불가피한 특정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도 수입제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제18조-C). 한편 18조4항-b에 속하는 국가는 다만 위의 18조-C와 관련된 特定産業의 育成을 위한 수입

제한 조치만을 체약국단의 동의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18조-D). 또한 締約國團은 본조항 B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와는 2년마다, 그리고 본조항 C와 D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와는 매년 協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⑤ 제20조(一般的 例外)

本條에서는 10가지 사항에 대한 GATT 규정 적용의 일반적 예외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농업과 관련된 조항을 본다면 人間 및 動植物의 생명 혹은 건강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20조b항>, 유한한 천연자원의 보전에 대한 조치<20조g항>, 그리고 정부의 價格安定 계획상 국내원료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낮은 경우 國內 加工産業에 필요한 수량을 확보하기 위한 同原料의 수출제한 조치<20조i항> 등이다.

그러나 本條는 각국에 의해 확대해석되어 실질적 무역규제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많은데 특히 20조b항에 의한 人間 및 動植物 위생규정은 각국이 자국의 기후 및 보건 규정 등의 특수성을 내세워 무역규제조치로 원용하고 있어 현재 UR 협상에서 特別議題로 선정되어 그 개선택이 논의되고 있다.

마. GATT와 農産物 貿易

농산물무역에 관하여 GATT는 자유무역의 일반원칙하에서도 농업정책의 特殊性을 반영 농업을 보호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으며 또한 각국의 실제운영면에 있어서도 농산물 무역정책을 공산품에 비하여 훨씬 保護主義的 정책으로 일관하여 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980년대 들어오면서 세계농산물 무역은 수입면에서는 殘存輸入制限, 賦課金 그리고 輸出自律規制(VER) 등과 같은 GATT 규정 밖의 여러가지 조치에 의해, 수출면에서는 세계시장 점유율 증대를 위한 보조금의 과잉지급 등으로 인해 교역질서가 크게 왜곡되기 시작하였다.

이와같은 世界農産物 交易秩序의 歪曲을 시정하기 위하여 GATT는 UR개시 이전부터 농산물시장의 질서회복을 위하여 특별히 노력해 왔다. 즉 1982년 제네바 GATT 각료회의 폐막선언에서는 市場接近條件의 개선 및 GATT 規律의 효율적 개선을 통하여 농업분야도 多者間 무역 체제하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과 함께 보다 강화된 GATT의 원칙하에서 輸出競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같은 GATT 각료선언에 따라 1982년 49개의 회원국으로서 農産物 交易委員會가 설치되어 市場接近條件의 개선, 각 국가별 농업정책의 報告 및 豫示, 直間接의 輸出補助金 으로부터 야기되는 농산물 교역에서의 경쟁왜곡 현황 등의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였는데 同委員會는 위의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토대로 1984년 총회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채택하였다.

첫째, 농산물 교역에 관계되는 모든 조치를 GATT 규율하에 두어 의무면제(waiver)를 포함한 수출자유규제(VER), 變動賦課金(variable levies), 非据置關稅(unbound tariffs), 最低 輸入價格制 등의 무역장벽은 규제되어야 한다.

둘째, 수출보조금에 대해서는 현행 규율을 개선하는 방법이나 혹은 일부예외를 인정하고 일반적 금지를 규정하는 조항의 도입을 병행하여 검토한다.

셋째, 각국의 무역정책 뿐만아니라 國內政策도 검토대상이 되어야 한다.

넷째, 開途國 優待, GATT권리·의무의 균형, 農業의 特殊性은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勸告案의 실행은 회원국간의 이견으로 논란을 거듭하던 끝에 앞서 언급한 世界經濟秩序의 交易環境의 변화 등 GATT 外的問題가 결부되어 새로운 국제 교역질서 확립을 위한 UR이 開始된 것이다.

第 2 章

上半期 UR 農産物協商

1. 푼타 델 에스테(Punta del Este)閣僚宣言

우루과이라운드開催에 대한 논의는 83年 5月 윌리암스버그 經濟頂上會談에서 처음 제기되었고 同年 11月에 개최된 美·日 首腦會談에서 미국의 주도하에 新多者間 貿易協商을 추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그후 3년여의 국제논의 끝에 1986年 9月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테에서 뉴라운드를 개시하기 위한 閣僚宣言을 채택함으로써 제8차 多者間 貿易協商인 우루과이라운드가 開始된 것이다.

표 2-1 UR개시 전까지의 추진경과

日 字	會 議	主 要 內 容
83. 5	윌리암스버그經濟頂上會談(Summit)	○ 새로운 貿易自由化 交渉의 실현에 노력할 것을 합의
84. 4	서울國際貿易會談	○ 新라운드에 대한 開途國 참여방안 모색

日 字	會 議	主 要 內 容
84. 5	OECD閣僚理事會	○ 新라운드의 早期準備 필요성에 대하여 합의
84. 11	제40차 GATT총회	○ 新라운드에 대한 先·開途國間 意見對立 ○ 美·日·EC 등 新라운드 추진필요성 공식제의
85. 2	三國通商長官會議	○ 86년에 交渉을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에 合意
85. 3	EC理事會	○ EC, 新라운드 참여의사를 정식으로 表明
85. 6	스톡홀름 세계통상장관 회의	○ 7월의 GATT 이사회에 各國의 입장을 밝히는 Submission Paper를 제출하기로 함.
85. 10	GATT特別總會	○ 新라운드의 준비를 공식선언함. 고위실무그룹(Group of Senior Officials)을 설치하여 준비에 돌입함.
85. 11	제41차 GATT 定期總會	○ 新라운드 준비위원회가 결성됨. 同 준비위원회는 1986년 1월~7월까지 활동 ○ 서비스의 의제포함여부 결정짓지 못함.
86. 1	新라운드준비위원회 제1차회의	○ 新라운드의 Modality 論議 ○ 7월 말까지 활동
86. 7	新라운드준비위원회 종결	○ 新라운드 개시 위한 각료선언 초안 3개안 작성
86. 9	GATT 각료회의	○ 新라운드 개시 위한 각료선언 채택 ○ 우루과이 라운드로 명명함.

폰타 델 에스테(Punta del Este) 각료선언문에서 나타난 農産物協商의 궁극적인 목적은 世界 農産物市場의 不確實性和 需給의 不均衡 그리고 不安全性을 완화하기 위해 세계 농산물시장의 構造的인 供給過剩을 포함한 모든 貿易制限과 歪曲措置를 개선하여 세계 농산물 교역질서와 豫測可能性을 제고하고 농산물 수출입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들이 한층 強化되고 效果的 運用이 가능한 GATT規程 및 原則에 따라 취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각국의 각료들은 1986년 9월 우루과이 폰타 델 에스테에 모여 첫째, 輸入障壁의 완화를 통해 市場接近을 개선하고 둘째, 直·間接의 補助金の 완화 및 관련규정의 강화로 農産物交易의 경쟁조건을 개선하며 셋째, 농산물에 대한 檢疫장벽의 부정적효과를 극소화시키기 위하여 관련 國際協定과의 조화를 꾀하도록 해야 한다는데 합의하였다.

폰타 델 에스테 각료선언문에 나타난 농산물 협상그룹 및 熱帶產品 협상그룹의 협상목적 및 특별 고려사항을 보면 <표 2-2>와 같다.

表 2-2 農産物·熱帶產品 그룹의 協商目的 및 特別 考慮事項

區 分	農 産 物 그룹	熱 帶 産 品 그룹
協商目的	○ 農産物貿易의 自由化 擴大 ○ 輸出入에 影響을 미치는 모든 措置들이 보다 強化되고 效率화된 GATT 規定 및 原則下에서 이루어지도록 함.	○ 加工, 半加工 등의 形態如何를 不問하고 熱帶產品 交易에 影響을 미치는 모든 關稅 및 非關稅 措置를 包含한 이들의 完全한 自由化 達成
特別事項	○ 輸入障壁의 緩和를 통한 市場接近 改善	○ 締約國團은 大部分의 開途締約國에 있어 熱帶產品交易이 차지하는 重要

區 分	農 産 物 그룹	熱 帶 産 品 그룹
	○ 農産物交易에 影響을 미치는 直間接의 補助金 및 기타 措置의 原因把握과 이것이 否定的 效果의 漸進的 緩和를 包含하여 同措置 適用에 관한 規律強化를 통해 農産物交易의 競争條件 改善 ○ 관련 國際協定을 考慮하여 農産物에 대한 衛生 및 植物衛生上의 規制 또는 障壁이 農産物交易에 미치는 否定的 效果를 極小化함.	性을 認定하여 同分野協商的 時限 및 結果履行에서는 初期에 타결된 協定을 協商의 공식적 종결 이전에도 合意에 따라 잠정적 또한 한정적으로 實行할 수 있다는 협상의 一般原則을 특별히 고려함.

2. 中間評價會議(Mid-Term Review)

가. 중간평가 합의까지의 論議事項 및 각국의 제안 내용

1987년 2월부터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은 농산물이 갖는 각국의 政治·社會的 敏感性 때문에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어느 참가국이나 협상의 목표인 “農産物 交易의 自由化 擴大”에는 공감을 표시하고 있었으나 세계농산물시장의 수급불균형 및 價格沈滯 원인에 대한 수출입국간의 근본적인 시각차로 주요 의제인 補助金撤廢 및 협상 대상으로서의 長短期 措置에 대해 참가국들이 첨예한 이해 대립을 보

임으로써 협상과정이 순탄지 못하였다. 특히 1988년 12월 UR의 中間評價를 위해서 Montreal에서 개최되었던 貿易協商委員會(TNC) 각료회의에서는 농업보조금의 完全撤廢(elimination)을 주장하는 미국과 漸進的인 減縮(Progressive reduction)을 주장하는 EC의 입장대립으로 농산물 협상 분야는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表 2-3 長短期 措置

區 分	基 本 立 場
美 國	○ 貿易에 影響을 미치는 모든 形態의 農業支援 및 保護措置의 10년내 完全 撤廢 ○ 短期措置 不必要
Cairns그룹	○ 長期: 모든 補助金 및 기타 政府支援措置 使用禁止 規定 確立 ○ 中期: 貿易歪曲 支援措置의 減縮計劃 樹立 ○ 短期: 農産物貿易에 影響을 미치는 모든 輸出 및 生産 補助金の 凍結
E C	○ 主要 品目에 대한 生産調節策 導入 및 輸出補助金の 凍結 등 優先的으로 施行할 短期措置에 대한 合意가 먼저 이루어져야 함. ○ 農産物貿易에 直間接으로 影響을 미치는 支援措置의 漸進的 減縮
日 本	○ 補助金を 輸出補助金과 기타 國內補助金으로 區分 - 輸出補助金: 現水準 凍結후 合意期間內 撤廢 - 기타 國內補助金: 各國의 農業의 特性, 實質的 需給狀況 및 農業構造調整을 考慮하여 交易歪曲의 性格의 것만을 줄여나갈 것.
韓 國	○ 輸出補助金の 現水準 凍結후 漸進的 減縮 ○ 農産物 輸出에 直接影響을 미치는 生産補助金の 漸進的 撤廢 ○ 貿易歪曲을 招來하지 않는 補助金과 開途國 經濟開發을 위한 補助金은 輸出補助金과 區分 取扱

그러나 GATT의 仲裁 및 각국의 異見調整을 거쳐 1989년 4월 Geneva에서 재개된 TNC 고위각료회의에서 농산물분야의 中間評價 合意案이 정식으로 채택되어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협상은 후반기 實質的 協商에 돌입하였다. 그간의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爭点別 주요국의 기본 입장을 보면 <표 2-3 ~ 표 2-8>과 같다.

表 2-4 食糧安保 및 農業의 特殊性

區 分	基 本 立 場
美 國	· 食糧自給이 반드시 食糧安保를 意味하는 것은 아님. 진정한 食糧安保는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食糧을 確保할 수 있는 能力임. 따라서 農産物 輸入國의 輸出國에 대한 市場接近 保障이 食糧安保의 前提임. 즉, 一時的 狀況에 따른 食糧輸出의 禁止는 輸入國에 致命的이기 때문에 GATT의 輸出數量 制限規定(11條 2項-a)의 改善을 제의. · 인위적인 食糧의 自給은 各種 補助金의 支援, 資源配分の 非效率性, 輸出덤핑 등 不當競爭의 原因이 됨. · 資源의 效率的 配分을 위해 農業部門에도 市場메카니즘을 적용.
Cairns그룹	· EC와 類似하나 食糧安保에는 否定的 立場
E C	· 社會安定 및 自然環境에 대한 農業의 特殊性 考慮 · 食糧安保와 食糧自給이 상이한 概念이라는 美國의 立場에는 어느 정도 同意하나 世界 食糧需給 展望上 食糧安保는 重要하며, 이는 또한 國內農業 및 農民問題와도 不可分의 關係에 있음.
日 本	· 食糧安保, 環境保全, 雇傭維持 등 農業에 대한 社會的 側面 考慮 - 農産物 供給의 不確實性 등 農業의 特殊性 考慮 - 食糧安保가 100%의 食糧自給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지만 穀物 價格의 騰락, 農業生産의 非豫測性, 最小限의 賦存資源의 活用이라는 側面에서 食糧安保는 供給安定과는 또 다른 別個의 政治的 性格을 지니고 있음. 따라서 主要 品目에 대한 最小限의 自給率 維持는 必要.
韓 國	· 主穀에 대한 一定 基準의 輸入自由化 例外措置 및 自給率 確保 必要.

表 2-5 農業保護 總量測定裝置(AMS)

區 分	基 本 立 場
美 國	· PSE適用을 통해 補助水準 綜合 測定 - 對象 : 모든 價格支持 및 所得支持政策 - 交易에 非歪曲的(Decoupling) 措置는 例外
Cairns그룹	· 美國과 類似 · PSE 가운데 貿易歪曲의인 措置만을 考慮할 것을 主張하며 TDE 概念을 제안(캐나다)
E C	· PSE 修正 補完하여 SMU 제안 - 國際價格, 換率變動 등을 考慮 - 貿易에 상당한 影響을 미치는 措置에만 局限
日 本	· PSE 등 綜合的 總量補助裝置의 導入 反對 - 農業政策의 多樣한 目標을 反映하지 못함.
韓 國	· 協商道具로서의 使用은 不適切

表 2-6 動植物 衛生規制

區 分	基 本 立 場
美 國	· 檢疫規制의 國際關聯機構와의 調和 및 無差別의 適用 · 別途의 技術그룹 設置에 反對
Cairns그룹	· 動植物 檢疫規定의 調和로 貿易障壁 除去 · 別途의 技術그룹 設置 必要
E C	· 動植物 檢疫規定의 國際標準과의 調和에 必要한 基本原則 및 基準의 制定 必要
日 本	· 專門 國際機關과의 協調下에 檢疫節次를 名文化 · 各國의 衛生基準設定은 地理的 環境의 差異에 따라 상이하며 同時에 各國의 權利임.
韓 國	· 衛生 및 植物衛生規制의 관련 國際機構規定 및 協定과의 調和 · 各國의 상이한 自然的·生態的 條件 및 檢疫技術의 水準 考慮 · 別途의 技術그룹 會議 設置 제안

表 2-7 開途國 優待措置

區 分	基 本 立 場
美 國	· 農産物 交易障壁의 撤廢를 통한 開途國 惠澤 擴大 - 最低 開途國 : 폭 넓은 優待措置 - 先發 開途國 : 經濟的 能力 또는 農業分野의 開發程度에 상응하는 寄與 要求
Cairns그룹	· 開途國의 差別的 優待 確認 - 履行措置에 必要한 施行期間 延長 - 輸出開途國 優待(對先進國 市場 擴大) - 輸出과 無關한 國內政策과 關聯된 政府支援措置 許容 - 發展程度에 상응한 開途國의 寄與 바람직
E C	· 開途國의 發展程度 및 開發의 必要性에 따라 差別的 待遇 許容 - 農業分野가 比較的 發達된 開途國에 開途國 優待原則의 일률적 適用 反對
日 本	· 開途國 經濟發展에 있어서 農業 및 農産物貿易의 重要性 認定 · 開途國 優待 認定
韓 國	· 輸入開途國의 農業構造調整과 生産性 向上을 위한 유예기간(Grace Period) 認定 · 開途國의 農業構造 改善期間中 生産補助 및 生産性 向上과 農家所得 支援을 위한 諸般 支援政策 許容 · 新市場 參與 開途國에 對先進國 輸出市場接近 優先的 考慮

表 2-8 市 場 接 近

區 分	基 本 立 場
美 國	· 모든 輸入障壁의 10년내 完全 撤廢 · 一切의 非關稅障壁의 關稅化(Tariffication)
Cairns그룹	· GATT의 모든 例外規定 및 法的 根據가 없는 措置의 撤廢 · 모든 關稅의 低水準 및 제로 水準 거치
韓 國	· 國內政策目標과 世界農産物交易의 豫測可能性 提高와의 調和 · 輸入開途國의 경우 構造調整期間中 農産物 輸入制限 不可避 · GATT의 모든 例外措置와 GATT에 根據하지 않은 規制措置 檢討

나. 中間評價合意 結果

1988년 12월 UR 中間評價會議 농산물분야의 합의가 실패하였던 것은 農業協商의 장기조치로서 농업에 대한 지원 및 보호를 완전 철폐하는 미국의 입장과 漸進的 減縮을 주장하는 EC의 입장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인데 1989년 4월의 중간평가회의에서는 양입장간의 타협이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농산물분야 중간평가에서는

첫째, 長期措置 및 農業改革指針(Long-term Elements and Guidelines for Reforms).

둘째, 단기조치(Short-term Elements), 그리고 마지막으로 衛生 및 動植物檢疫(Sanitary and Phytosanitary Regulations) 등의 3개분야에서 중간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장기조치 및 農業改革指針

UR 농산물 협상의 장기적 목표를 “公正하고 市場指向的인 농산물 交易體系의 確立(establish a fair and market oriented agricultural trading system)”이라는 데에 합의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實踐目標의 내용으로는

첫째, 農業支援 및 보호조치에 관한 협상 및 約束履行

둘째, GATT 규율과 원칙의 강화 및 효율화로 합의를 보았다.

먼저 농업지원 및 보호조치에 관한 금번 中間合意는 향후 협상에서 채택될 구체적 방법에 의해 “상당한 수준으로 漸進的 減縮(Substantial Progressive Reduction)”을 행해야 한다는 일반원칙에 대해서만 우선적인 합의를 보았다. 이는 지난 몬트리올 中間評價會議시 결렬의 주된 원인이 바로 이에 대한 미국과 EC의 의견차이였기 때문에 이 같은 합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편 中間合意는 위의 합의된 일반원칙(상당한 수준으로 점진적 감축)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써 다음 3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각국의 特定政策 및 조치별 협상에 의해 농업지원 및 보호수준을 삭감하는 방안 둘째, 總量

農業支援 測定方法(AMS: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에 의해 농업지원 및 보호수준을 삭감하는 방안 셋째, 양자를 혼용하는 방안

表 2-9 各 方案別 檢討事項

方 案	檢 討 意 見
特別政策 및 措置別 協商	· 各國이 施行하고 있는 農業保護政策을 協商對象으로 하며 이들 政策의 撤廢 내지 減縮을 시행하자는 立場 · 그러나 各國의 農業政策 및 措置는 그들의 固有한 農業特性 및 環境에 의한 것인데 이들의 一括協商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豫想 支持國 : Cairns그룹(非補助 農業輸出國 모임) · 豫想 反對國 : EC(共同農業政策의 상당한 修正이 不可避하기 때문) 日本(多様な 農業保護政策 때문)
總量補助 測定 裝置(ANS)에 의한 方法	· 各國의 모든 農業支援 및 政策에 대한 一定한 計量的 方法을 使用하여 그들의 總農業粗收入에서 政府政策 및 支援에 의한 部分이 차지하는 比率을 계산, 이들 比率을 各國別로 比較하여 一定水準까지 一括減縮하는 것을 말함. · 지금까지 가장 많이 論議되고 있는 方法이며 UR農産物 그룹 내 特別技術그룹이 設置運營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向後 輸入開放에 따른 補完對策의 일환으로 所得 및 價格支持政策이 不可避할 것이므로 위의 특정정책별 方案 보다는 본 方案이 有利할 것으로 보임. 왜냐하면 이는 緊急한 政策의 強化를 他政策의 緩和로 상쇄하여 일정한 保護水準의 維持가 可能하므로 이 方案이 有利할 것으로 보임. · 豫想 支持國 : 美國 등 OECD제국 · 豫想 反對國 : 지금까지 우리나라, 日本 등은 이 概念이 지난 問題點(換率變動, 基準年度 問題, 對象政策의 範圍問題 등)을 들어 協商道具로서 使用을 反對하여 왔으나 最近 이의 기술적 問題檢討에 적극 參與하겠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어 위의 特定政策 및 措置別 접근보다는 反對가 덜할 것임.
兩者 混用 方案	· 參加國間에 각 方案에 대한 意見의 不一致로 協商이 答보상 태에 빠질 경우 이 混用方法이 擡頭될 것으로 豫見됨.

등이 제시되었다.

이들 3가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表2-9>와 같다.

다음으로 GATT규율과 원칙의 강화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을 보면 중간합의에서는 輸入接近(import access) 및 輸出競爭(export competition)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대한 GATT의 규율 및 원칙을 강화한다는 데 합의를 보았다. 이 경우 개도국 특히 食糧純輸入 開途國에게는 특별한 고려를 해야 한다는 점과 아울러 식량안보 등 농업의 非交易的 側面에 대해서도 협상시 고려해야 한다는 데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 또한 이들 장기조치와 관련된 각국의 입장을 1989년 12월말까지 GATT에 제출할 것과 동시에 1990년 말 이전에 장기개혁계획 및 이행기간에 합의하여 1991년부터 시행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② 短期措置

중간평가에서 채택된 단기조치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 12월 UR종료시까지 국내의 모든 농업지원 및 보호조치(價格支持政策, 關稅, 非關稅障壁 포함) 수출지원제도 등을 현재수준에서 동결하고 새로운 조치의 추가도입을 금지한다.

둘째, 1989년과 1990년의 개방 품목에 대한 輸入接近機會(access opportunities)가 1987년과 1988년 평균수준보다 낮지 않을 경우 단기조치 이행사항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셋째, 개도국 및 고인플레이션 등 예외적 상황에 처해 있는 체약국은 단기조치 이행에서 면제된다.

넷째, 단기조치 이행사항은 6개월마다 보고하되, 첫 보고는 1989년 12월 1일까지로 한다.

③ 衛生 및 動植物檢疫規制

衛生 및 動植物檢疫規制에 대한 합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첫째, 동규제 및 조치들을 기존의 관련 국제기구들의 기준과 조화시킨다.

둘째, GATT 제20조(인간 및 동식물의 위생규제 조항)를 강화한다.

셋째, 明瞭性(transparency)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통고 및 대응보고 절차를 보고하여 이에 대한 분쟁해결 절차를 개선한다.

넷째, 衛生 및 動植物檢疫規制와 관련된 GATT의 규율 및 원칙이 개도국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국가에 대한 기술지원 필요성을 검토한다.

이상에서 농산물 협상그룹의 中間合意事項을 살펴보았는데 이는 주로 미국·EC·케언즈 그룹 등 주요 선진국 및 농산물 수출국들의 의견이 집중적으로 반영된 반면 開途國 및 食糧輸入國들의 주된 관심사항인 開途國 優待, 食糧安保문제 등은 특별의제로 선정되지 못한 채 세부사항으로만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UR개시이후 중

表 2-10 UR개시이후 中間評價까지 協商過程

區 分	日 程 別	主 要 成 果
○ UR開始	'86. 9. 20	○ 多者間 貿易協商(우루과이라운드)開始 - 協商目的, 原則, 對象, 日程 등 合議
○ 初期段階 協商	'87. 1. 28	○ 協商그룹 構成 (14個 商品그룹과 서비스 그룹) 및 協商計劃 樹立
- 公式會議 : 12回	'97. 1 ~ '88. 11	○ 前半期 協商進行 - 農產物交易의 問題點 등 原因把握 - 協商資料 整備 - 協商에 대한 各國의 基本立場과 提案 協議
- AMS技術그룹會議 : 5回		
- 衛生 및 動植物衛生規制 作業團會議 : 2回		
○ UR中間評價	'88. 12. 5 ~ 9	○ UR中間評價 閣僚會議(캐나다몬트리올) - UR進展狀況評價 및 向後協商計劃 樹立 目的 - 農業補助金에 대한 意見對立으로 合意 失敗
	'89. 4. 5 ~ 8	○ UR中間評價 高位級 貿易協商委員會 開催 (제네바) - 協商目的, 方法, 議題, 履行計劃, 短期目標 등에 合意

간평가까지의 주요 협상과정을 요약해 보면 <表2-10>같고 중간평가 합의문에서 채택된 주요협상의제는 <表2-11>과 같다.

表 2-11 主要協商議題

國 境 措 置 (Border Measures)	關 稅：農產物 關稅引下 및 讓許擴大 非關稅：모든 비관세 조치의 관세 전환후 감축 (Waiver, 가입의정서, 수량제한, 가변부과금 등)
國 內 補 助 (Internal Support)	農產物 交易에 영향을 주는 모든 형태의 보조금 감축 내지 撤廢(가격 및 소득보조, 유통보조, 생산요소보조, 투자 및 자본보조)
輸 出 競 爭 (Export Competition)	輸出補助金 및 輸出制限措置의 撤廢
衛生 및 檢疫規制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국제규범과 국내규정과과의 조화를 통한 무역장벽화 방지 (작업단 설치)
非 交 易 的 事 項 (Non-trade Concerns)	식량안보, 환경보전 등 비경제적인 요소의 고려
開 途 國 優 待 (S & D)	開途國의 우대범위 및 우대방안, 순수입개도국에 대한 영 향 및 보상방안
總量農業補助測定 (AMS)	총량농업보조측정을 통한 협상이행 방법(기술그룹 설치)

제 3 장

下半期 UR農産物協商

1. 主要 議題別 各國의 提案內容

각국의 의제별 제안 내용은 배후에 각국 고유의 농업구조와 세계농산물시장에 대한 각기 다른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하여 제안된 것이다. 물론 1장에서 개괄적인 내용은 언급이 되었으나 각국의 의제별 제안내용과 관련하여 각국의 농업사정을 간단히 기술하고자 한다.

먼저 미국은 農業生産性 및 농산물 수출에 있어서 최대의 농업국이었으나 세계농산물 시장의 占有率이 감소되고 있다. 그 직접적인 계기는 EC의 대두이며 특히 共同農業政策의 강력한 실시에 따른 것이다. EC의 共同農業政策은 輸入賦課金 부과를 통해 미국 농산물의 역내수입을 막아냄과 동시에 輸出補助金에 의한 덤핑수출을 통해 제3국에 대한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미국의 對EC수출 감소와 제3국시장의 잠식이라는 이중의 타격을 입혀왔다. 이러한 문제는 1970년대의 농산물시장 확대기에는 그다지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으나 1980년대의 世界農業不況期에 미국의 달러가치 評價切上, 국내의 가격지지 등에 의해 미국농산물 수출은 크게 위축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수출지향적인 체질을 지닌 미

국 농업으로써는 아주 심각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국제 수지의 대폭적자에 허덕이는 미국경제로서는 큰 타격이었다.

이러한 사태에 직면한 미국이 GATT의 UR에 내놓은 카드는 國內外 農業政策의 완전한 개혁을 주장하는 충격적인 제안이다. 그 배후에는 별거벗은 채로 경쟁한다면 EC에 지지 않는다는 고생산성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며, UR협상에서 농산물협상 타결없이 UR협상전체의 타결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공언하고 있는 것도 농산물협상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 할 수 있다.

한편 EC의 漸進的 減縮案은 UR이라는 外壓을 이용하여 보호수준을 낮추려는 기본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EC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최대의 문제점은 共同農業政策의 실시로 過剩農産物이 누적되고 EC재정이 거의 반신불수 상태에 빠져버린 것이다. 1976년에 56억 ECU 였던 농산물가격 관련 경비가 1987년에는 231억 ECU로 4배이상 급증하였고 그 비율도 재정총액의 2/3를 넘어 부담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우유 및 유제품, 곡물을 비롯한 가격지지대상 농산물 대부분이 재고누적으로 적자수출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EC의 경우 농업정책은 EC차원에서의 共同農業政策과 개별국가차원에서의 생산, 구조정책으로 이원화 되어있어 가격정책을 규제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지나친 가격정책을 억제하려는 목적에서 제안된 것이 EC의 漸進的 減縮案이다. EC로서는 국제협조라는 대의 명분하에서 역내 지지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면 1석 2조가 되는 셈이다. 적어도 그것이 EC의 농업보호의 근간을 위협하지 않는 한 그렇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일본, 한국, 스위스 등은 국내농업사정을 이유로, 최대한 현상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세계 무역질서에 역행하는 듯 보이나 이것은 현실의 반영이며 상이한 농업실태가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는 NTC가 최대한 수용 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각국의 기본적 성격과 배경을 바탕으로 다음에서 각국의 의제별 차이점 또는 쟁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가. 國境保護

UR농산물협상에서 국경조치는 非關稅障壁의 關稅化가 핵심 의제인 바 각국의 입장을 보면 〈表 3-1〉과 같다. 각국은 자국의 국내농업여건을 바탕으로 각 제안을 내고 있어 각국의 입장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미국과 EC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많은 부분에서 첨예한 대립관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EC의 제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表 3-1〉 관세화에 대한 각국의 입장

協商議題	現行 GATT 規定과 各國慣行	各 國 立 場
○ 義務免除 (Waiver) 加入의정서 또는 기타 왜곡 措置와 GATT를 일탈한 모든 非關稅措置 ○ 이들 非關稅措置의 關稅化	○ 現行 GATT上 非關稅措置 認定 根據 · 11條2(C) · 暫定加入議定書 또는 가입의정서 · Waiver (美農業調整法 第22條) · 國際收支保護 (12條, 18條B) · 國營貿易 (17條) ○ 各國慣行 - 殘存輸入規制 - 最低 輸入價格制 (가변 부과금) - 輸出入 自律規制 協定 - 其 他	○ 美國 : 모든 非關稅措置의 關稅化 - GATT의 例外下에 維持하고 있거나 脫法的 措置 撤廢 - GATT에서 認定하지 아니한 輸入障壁 禁止 - 11條2(C) 廢止 - 輸入許可制 廢止 - 國營貿易 原則 遵守 ○ EC : 再均衡化 (Rebalancing) 問題解決을 條件으로 制限의으로 受容 - SMU 對象品目에 대한 國境 保護措置가 固定要素로 反映되고 換率變動과 世界市場變化를 考慮할 수 있도록 調整 値에 의해 補完

協商議題	現行 GATT 規定과 各國慣行	各 國 立 場
		- 最低 輸入價格制度(가변부과금)도 非關稅措置로 취급되어 關稅化에 反映 - Deficiency Payment도 關稅化 對象에 포함 ○ 케언즈그룹 : 모든 非關稅措置의 關稅化(美國立場과 類似) ○ 日本 : 長期目標 協商議提의 하나로만 認識 - 基礎食糧과 11條 適用品目除外 ○ 北歐 : 相互主義에 입각한 關稅化 支持 - 數量制限과 동일한 效果를 나타내는 措置도 關稅化에 反映 ○ 스위스 : 非交易的 目的遂行을 위한 二重價格制 認定下에 考慮

1) 미 국

UR농산물 협상에서 國境措置는 關稅化 (다음공식을 적용, 비관세장벽에 대한 關稅相當値를 계산 $\text{關稅相當値} = [(\text{국내가격} - \text{국제가격}) / \text{국제가격}] \times 100$) 관세 인하 및 양허확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핵심의제는 關稅化이다. 關稅化는 미국이 제안한 것으로서 비관세장벽을 동일한 수입제한 효과를 가지는 관세로 전환하자는 제안이다. 구체적으로 관세화는 다음과 같은 두 단계를 걸쳐 실시하자는 것이다. 제1단계로서 농업과 관련된 모든 기존의 비관세 장벽은 1991년 1월 1일부터 關稅相

當額(TE:Tariff Equivalent)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수입되는 품목은 초기 관세할당량(TQ:Tariff Quota)를 정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제안이다.

이때 초기 關稅割當量에 대해서는 1990년 수입수준 또는 최근 수년간의 평균 수입수준으로 하고, 수입이 금지된 품목의 경우는 협상에 의해 결정될 최소 수입수준을 기초로 산정(국내소비량의 1%)한다는 것이다. 2단계에서는 關稅割當量을 확대하고 關稅相當額은 10년의 경과기간을 거쳐 감축하고 10년후에는 關稅割當量을 폐지하여 최종적으로 讓許關稅로 통합한다는 제안이다.

경과기간중 보완장치로 緊急輸入制限措置(Safeguards Mechanism)를 도입하여 수입이 급증한 경우(수입량/국내 소비량 비율이 3%미만인 경우 전년대비수입량이 100%초과, 3%이상인 경우 120%를 초과하는 경우)는 매년 잔여기간 동안만 特定保護關稅水準(고관세)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은 비관세장벽을 관측가능하게 하고 무역을 촉진시켜 수출경쟁을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美日間 쇠고기 협상에서 힌트를 얻은 것으로 관세화의 일반화를 통해 비관세장벽의 명료성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협상을 용이하게 하며 결국 단계적 감축을 통해 무관세 또는 저율관세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2) EC

EC는 非關稅措置를 關稅化하고 이를 제로 또는 저율의 관세수준으로 감축한다는 미국제안에 대해, 이는 농산물 무역을 혼란시키는 것으로 무역을 자유화시키는 유용한 제도는 아니라는 입장인데 원칙적으로는 거부 의사를 나타내면서도 상품간의 保護再均衡(rebalancing)을 고려한다면 關稅化를 검토할 의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것은 미국의 제안을 역이용하여 역내에서 過剩基調가 강한 식용농산물과 共同農業政策에서 제외되어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카사바, 유지작물등과의 재균형

(rebalancing)을 맞추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또한 EC는 不足拂制度(deficiency payment)도 관세화하고 감축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관세화 방법은 固定要素는 협상에 의해 결정하되 절대가격으로 표시하여 GATT에 据置하고 5년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감축(국내보조감축과 연계)하는 한편 補正要素(Corrective factor)는 합의된 어떤 한계를 넘어서면 세계시장변동과 환율변동을 고려하기 위해 固定要素에 가감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EC의 관세화교섭에 응하는 의도의 배후에는 ①國境保護의 再均衡 實現 ②不足拂의 關稅化 전환 ③可變輸入賦課金を 어떻게 고정요소와 보정요소로 바꾸느냐에 있다고 보인다. ①은 수입이 급증하는 유지작물(대두, 유채, 해바라기)의 관세를 높이고 과잉되고 있는 곡물의 국경조치를 낮추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유지작물의 종자는 무관세인 반면 국내보조금 지급으로 GATT에 제소된바 있어 이들 품목을 관세화로 인정받고 과잉기조의 곡물은 국경조치의 인하를 통해 域內 保護의 조정을 가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으로 ②는 EC의 역내 不足拂制度를 관세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으로 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 EC가 不足拂制度를 취하고 있는 작물로서는 유지작물의 종자, 완두콩, 잠두콩, 건조사료작물, 면화, 양고기, 누에고치 등이 있다. 이들을 관세화함으로써 가트 규정과의 조정을 꾀하고 아울러 미국의 不足拂制度를 공격하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다. 끝으로 ③은 可變輸入賦課金を 固定要素와 補正要素로 나누어 전자에 대해서는 교섭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후자는 국제가격의 변동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국제가격의 변동이 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같이 EC의 제안은 기본적으로는 역내에서의 곡물의 과잉과 사료작물의 부족이라는 불균형의 시정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동시에 이것을 통해서 GATT규정과의 조정, 미국의 농업정책의 수정을 목적으로 하는 아주 복잡한 것으로 미국의 제안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3) 케언즈그룹

케언즈그룹중 캐나다와 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미국의 제안과 기본입장에 있어서 유사하다.

4) 일 본

關稅化는 자국농업에 영향이 크므로 基礎食糧과 11조2항 (C)적용품목의 관세화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5) 한 국

關稅化는 모든 非關稅障壁의 관세전환과 關稅相當額의 상당수준을 감축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NTC, 11조2항(C), 기타 관세화에 따른 보완장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나라 농업에 커다란 충격이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모든 非關稅障壁을 일괄적으로 관세화하는데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 왔으며 NTC대상품목인정,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11조 2항(C) 운용하에 관세화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관세화 대상품목의 관세화방법에 있어서도 수입국 농업정책상 신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협상력이 강한 미국과 EC의 협상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본 입장과는 거의 별개로 대강의 골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나. 國內補助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각국의 농업사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國內補助減縮부분에 있어서도 각국의 입장이 상당히 다르다. 미국은 농산물 무역의 완전 자유화를 주장하는 반면 점진적으로 감축하자는 EC, 그리고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현상유지등을 주장하는 일본 등으로 구분되며 미국안에 케언즈그룹이, EC안에는 오스트리아, 북구제국이, 일본안에는 한국, 스위스 등이 유사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國內補助에 대한 協商議題와 각국의 입장을 요약정리한 것이 〈表3-2〉이다. 다음에서는 각 제안간의 차이에 대해서 주로 논의하고자 한다.

表 3-2 국내보조에 대한 협상의제와 각국의 입장

協商議題	現行GATT規定	各 國 立 場		
所得 및 價格支持를 포함한 貿易에 直間接으로 影響을 미치는 國內補助金에 관한 GATT規律 強化 및 漸進的 減縮水 準決定	○ GATT 第 16條1項에서 直間接으로 輸出을 增加시키거나 輸入을 減少시킬 效果를 가지는 如何한 形態의 所得 및 價格支持를 包含한 補助金을 維持하는 경우, 同 補助金의 範圍, 性格, 輸出 入量에 미칠 效果와 補助金을 必要로 하는 事由를 締約國團에 通報하고 協議할 義務賦與 * 禁止 및 規制 規定없음.	○ 美 國 -當初에는 國內補助金 政策을 撤廢對象 政策(Re-d), 規制對象 政策(Am-ber), 許容對象 政策으로 分類하고 -Red는 10年 內 撤廢할 것을 主張하였으나 最近에는 減縮하기로 立場變更 · 推進方式은 各國政策의 特殊性을 勘案 自律性賦與(例: 管理 價格 減縮 또는 價格支持量 減縮 등) 단, 經過期 間中 減縮은 年度別로 均等推進 · 政策別, 品 目別 接近 方式 採擇 -規律對象 政策: AMS를	○ EC -國內補助政策을 撤廢 내지 規制하는 데는 반대, 다만, 合意原則에 따라 國境保護, 國內補助, 輸出補助등을 SMU를 통하여 減縮하는 데는 同意 · 減縮對象 措置: 市場價格 支援生産 또는 生産要素와 連繫된 直接支拂, 特定商品 또는 主要品目の 流通에 所要되는 요 소비용 減縮 目的의 措置 등 農家の 生産決定에 실제로 影響을 미치는 모든 措置 包含. · 對象品目: 穀物, 쌀, 설탕, 채유용 중자, 우유	○ 日 本 -國內補助金の 農産物 貿易에 미치는 否定的 效果를 減少시키기 위하여 補助金 및 상 関세 협정과 같은 適切한 GATT 原則 設定 -最近 提案에서 國內外 價格 差로 計算된 價格 支持와 直接 支拂中 (Deficiency payment) 만 減縮對象 政策으로 分類하고 나머지 모든 農業 補助는 許容對象 政策으로 分類 ○ 케언즈그룹 -國內補助金을 禁止 補助金, 原則 遵守를 條件으로 許容되는 補助金, 許容補助金으로 區分 -最低 調整水 準 設定과 政

協商議題	現行GATT規定	各 國 立 場
		통하여 段階的 減縮 - 嚴格한 條件下에 許容對象 政策 認定 쇠고기, 돼지고기 鷄卵 및 가금류 등 構造的 供給 過剩 또는 심각한 歪曲이 惹起될 수 있는 分野를 우선 (技術的으로 SMU算定이 不可能한 品目은 이에 相當하는 약속을 하고, 가공 농산물도 包含 · 基準價格: 世界市場과 換率變動을 除去할 수 있는 固定價格 · 減縮履行: SMU 單位別 또는 總量基準으로 百分率로 表示하며 規則性을 가져야 함. 5 個年單位로 減縮하며 4 年次에 是次後 減縮對象 및 減縮率을 檢討 策目標達成에 彈力性 賦與 - 減縮履行 期間: 10年 - 開途國 優待 ○ 스위스 - 補助金을 3가지 類型으로 分類 - 禁止 補助金: 輸出補助金 - 許容 補助金: 公共서비스, 研究, 下部構造改善, 諮問 등 特定 生産分野에 局限되지 않은 補助金, 最低 市場接近 保障約束이 充分히 履行되는 경우의 國內補助金, 直接支拂 및 食糧援助

1) 미 국

미국의 국내보조에 관한 제안도 國境措置에서와 같이 기본원칙은 「國內農業政策을 보다 효과적인 시장원리에 지향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이다. 국내보조금 감축을 통해 농산물 무역을 자유화 시키자는 것이다. 금후 10년간에 무역을 왜곡시키는 요소를 완전 철폐 한다는 원칙 하에 각종 농업정책을 ①撤廢對象政策(red light) ②規制對象政策(amber light) ③許容對象政策(green light) 등 3가지로 분류하여 매우 상세히 열거하고 있다. 감축대상정책에는 정부수매와 같은 정부관리가 격,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농가소득지원, 투자 및 수송등에 대한 보조등이며 허용대상정책은 생산 및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득보장(decoupling), 환경보존 및 유지, 재해보상, 선의의 식량원조, 식량비축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규제대상정책은 AMS를 통해 감축한다는 것이다. 즉 허용정책으로 인정되는 것은 公共・社會福祉的 性格의 정책이고 농업의 생산 및 유통과 관련된 정책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이는 종래의 농업정책 대부분을 부정하는 것이다. 한편 特定品目別措置를 포함하는 정책의 경우는 품목별, 그리고 정책별로 약속 이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품목별 감축수단인 AMS는 國內農業政策부분만을 감축대상으로 하고 있다. 앞에서 본것처럼 국경조치(비관세장벽)가 모두 관세화 된다면 남는것은 국내농업 정책뿐이고 이것을 AMS를 통해 점진적으로 일정수준씩 감축한다는 것이다. 즉 AMS계산시 국경조치는 제외되기 때문에 農業保護總體는 오로지 국내재정지출에 한정되고 이에 따라 AMS계산시 수반되는 방법론상의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국내외가격차가 존재하는 것은 國境保護措置와 國內補助政策등에 의해 생기는데 그중 국경조치에 의한 부분은 관세화로 수용하고 나머지 국내보조정책부분인 국내재정지출은 AMS에 의해 감축해 나간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미국안은 농업을 內的으로나 外的으로 완전 자유화하자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비관세 장벽을 완전히

철폐하고 최종적으로 관세에 의해서만 국경보호조치를 하고 대내적으로는 産業政策적 성격은 궁극적으로 완전히 철폐하고 公共・福祉政策만을 남기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2) EC

EC의 국내 보조부분 감축안은 미국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 EC는 國境措置와 國內農業政策을 완전히 분리하지 않고 국내보조이전 국경조치이전 보조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포함하는 총괄적개념(global concept)을 통해 점진적으로 감축해 나가자는 것이다.

즉 국경조치의 감축은 독립된 약속사항이 아니라 AMS감축을 통해 불가피한 결과로 이루어지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AMS에 의해 각국이 총괄적개념을 수량적으로 계측하여(1986년기준) 향후 5년동안 단계적으로 인하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감축률은 품목별 또는 품목군별로 다르게 하자는 입장이다. 이러한 총괄적개념을 주장하는 EC의 논리는 共同農業政策이 域內價格支持와 輸出補助를 동시에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를 분리하는 것은 共同農業政策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앞에서 본바와 같이 미국의 농업정책 완전 폐지안은 엄밀하게 산업정책에 관한 정책의 완전폐지이며, 공공·사회복지정책은 남을 수 있으며 구조정책에 관한 정책도 일부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즉 미국안은 비교적 세분화하여 그 각각에 대해 협상을 하자는 것이다. 이에 반해 EC는 총괄적개념을 통해 감축해 나간다는 발상이다. 단 이 경우에는 個別政策은 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다.

즉 個別政策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완전철폐안에 대해 EC는 個別政策에 대한 규제를 거부하고 총괄적개념으로서의 보호 정도에 대해서만 삭감하자는 것이다. 또한 교섭방식과 관련하여 AMS감축의 경우 미국은 國內農業政策에 한정된 AMS방식을 주장하는 반면 EC는 국내정책 및 국경조치가 모두 포함된 포괄적인 AMS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

서 양국의 제안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3) 케언즈그룹

케언즈그룹안은 미국안과 유사한 바 國內補助金を 금지 보조금, 원 칙준수를 조건으로 허용할 수 있는 보조금, 허용보조금으로 구분하고 감축이행기간으로 10년을 제시하고 있다.

4) 일 본

일본안은 국내농업정책을 ①貿易歪曲效果가 없거나 미약한 것 ②貿易 歪曲 效果가 있는 것 ③지역·환경정책 등의 여러가지 기능을 가진 것 등 3가지로 분류하여 ①과 ③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고 ②만을 GATT에 명시적으로 정의하자는 입장이다.

즉, 國內外 價格差로 계산된 價格支持와 直接支拂중 직접지불 (Deficiency payment) 만 감축대상 정책으로 분류하고 모든 국내보조는 허용대상정책으로 분류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AMS 적용에 있어서도 ①기반정비비, 구조조정비, 과잉농산물 대책비는 제외하고 ②個別政策도 협의대상에서 제외하며 ③총소비량에서 수입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고려되어야 할 것, ④생산통제정책은 평가되어야 할 것 등을 제시함으로써 AMS를 가능한 한 축소하여 선진국 인 일본의 보호수준을 낮게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상의 일본안은 미국안과 대립되는 입장이며 이에 대해 미국은 일본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5) 한 국

한국은 농산물 무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에 한하여 일정 수준을 감축하되 規制對象政策은 最低市場接近率을 초과할 목적 의 국내가격 및 소득지지가 여기에 포함되고 나머지 보조금은 허용대 상정책으로 하자는 입장이다.

또한 AMS를 통하여 國境措置와 國內補助金, 輸出補助金を 포괄하여 교역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일정수준을 감축하되 농산물생산, 수요의 특성등을 감안하여 품목군별 접근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농업은 구조적으로 취약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輸入開途國이기 때문에 최종감축 약속과 履行期間에 있어서 開途國 優待 措置를 요구하고 NTC대상품목의 경우는 감축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국안은 많은 점에서 일본안과 유사하다. 여건대 基礎食糧에 대해 일정률의 국내자급이 필요하다는점, 이와관련 최소수입량 또는 최소한도의 자급율에 대한 것을 GATT Rule에 도입해야 한다는 점, 제11조 2항은 기본적으로 유지 되어야 한다는 점, AMS협상에서 비교역적 고려사항 (NTC:Non-trade concerns)의 감안 등이다. 다른점은 한국안은 우리나라 농업여건을 강조해 개도국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다. 輸出補助

輸出補助金에 대해 미국은 5년안에 완전철폐하되 食糧援助를 위한 보조는 금지대상에서 제외하고, EC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수출보조금을 존속시키면서 총괄적개념(국경보호, 국내보조, 수출보조금을 포괄한 총액)을 통해 감축하는 자 입장이며 일본은 수출보조금의 점진적 감축 및 철폐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수출보조금의 협상의제와 논의사항을 각국별로 요약 정리한 것이 <表 3-3> 이다.

輸出補助金 관계로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EC인데 이들 모두 輸出補助金を 이용하고 있는 나라다. 그러나 輸出補助金으로 직접적 피해를 보고 있으며 輸出補助金を 이용하지 못하고있는 케언즈그룹과 대립하지 않고 輸出補助金を 이용하는 나라끼리의 대립형태를 띠고 있어 기묘한 느낌이 든다. 케언즈그룹으로서는 미국의 힘에 의존하면서 선진국의 國境障壁을 낮추어 수출확대를 꾀하려고 하는 입장인 것으로 판단된다.

表 3-3 輸出補助金에 대한 協商議題 및 各國立場

協商議題	現行 GATT 規定과 各國慣行	各 國 立 場
○ 輸出에 對한 直接財政支 援 및 其他 政府의 輸出 支援 政策의 減縮 및 撤 廢	○ GATT規定：第16條3項 - 1次產品에 對한 輸出補 助金을 주지 않도록 努力 - 補助金을 支給하는 경 우에도 過去의 대표적 인 期間동안 世界輸出 市場에서 維持해온 公 正한 몫을 超過시키기 위한 手段으로 支給하 는 것은 禁止	○ 美 國 - 5年內 輸出補助金 撤廢 (禁止對象 補助金 例 示:別添) - 食糧援助는 禁止對象에 서 除外(援助條件 對象 國家, 對象 農産物등에 對한 새로운 規則 必要) - 撤廢基準은 政府財政支 出로 하거나 受惠對象 品目の 物量으로 함. ○ EC - 輸出補助金 撤廢 反對 - 國境保護, 國內補助, 輸 出補助를 包括하여 SMU 를 통하여 減縮 ○ 케언즈 - 輸出補助金의 禁止 (16 條 및 補助金 및 相計 關稅 協定 改正) - 履行方法：輸出補助金 凍結 및 合意된 日程 및 公式에 의거 漸進的 減縮 撤廢 - 食糧援助는 無償으로 하고 FAO의 剩餘農産 物 處分委員會 節次와 連繫 ○ 日 本 - 輸出補助金의 漸進的 減縮 및 撤廢 ○ 스위스 - 輸出補助金 禁止

1) 미 국

농산물의 輸出補助金, 수출규제에 대해서 미국은 원칙적으로 완전히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輸出補助金의 완전 폐지로서 5년간에 걸쳐 모든 輸出補助金을 완전히 폐지하고 대상품목 및 해당 보조금의 내용을 명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단 진정한 의미에서의 식량원조는 예외로 한다는 유보조건을 부가하고 있다. 만약 약속 이행 위반시에는 양허철회, 보복조치도 가능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단기적인 공급부족을 이유로 한 수출제한과 수출금지규정인 GATT 11조 2(a)항을 폐지하고 5년 이내에 輸出賦課金의 차별철폐를 주장하고 있어 형식상 완전 자유화를 제안하고 있다. 미국안은 서로 보호막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싸울 경우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2) EC

輸出補助金에 대한 EC의 입장은 미국과 반대로 輸出補助金의 철폐에 반대하고 있다. 즉 원칙적으로 輸出補助金 지급을 찬성하고 있다. 왜냐하면 공동농업정책에 輸出補助金이 제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이상 EC로서는 共同農業政策을 포기 또는 변경하지 않는 이상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단, 그 운용방법에 있어서 2가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수출보조금을 국제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이를 초과해서는 안된 다라는 보조금 양에 관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현행 GATT 16조 3항의 시장점유율에 대한 규정중 과거 대표적 기간을 최근 5년간의 3년 평균으로 개정하자는 것이다. 전자는 국제적 압력을 이용하여 農業財政을 줄이려는 의도이며 후자는 해당 규정을 명확히 하여 기존의 輸出占有率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3) 케언즈 그룹

輸出補助金을 감축, 철폐해 나가는 이행방법으로서 우선 현재수준에

서 輸出補助金을 동결하고 합의된 일정 및 공식에 의거 점진적 감축, 궁극적으로 철폐를 주장하고 있어 미국안과 유사하다.

4) 한국 및 일본

수출보조금을 지불하고 있지 않아 비교적 소극적 입장이며 원칙적으로는 수출보조금 지급이 국제농산물 시장을 가장 왜곡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라는 점에서 輸出補助金을 다른 보조금에 우선하여 철폐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라. 開途國 優待

開途國 優待에 대해서 선진국들은 어느 정도의 開途國 優待措置를 인정하고 있는데 개도국들은 自國의 이익을 위해 더 많은 부분을 요구하고 있다. 개도국 우대조건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요약 정리한 것이 〈表 3-4〉이다.

表 3-4 開途國 優待條件에 대한 각국의 입장

開途國優待에 관한 合意事項	各 國 立 場
〈폰타델에스테宣言〉 ○ 開途締約國이 안고 있는 過重한 外債 등에 注意 ○ 모든 締約國, 특히 開途國締約國이 惠澤을 볼 수 있도록 世界貿易을 보다 自由化 ○ 協商은 모든 締約國이 利益을 누리고 보다 增大대 惠澤을 볼 수 있도록 遂行 ○ 開途國에 대하여는 特別하고도 호의적인 特遇, 1979年11月28日 相互主意 및 開途國의	○ 美 國 、 — 새로운 GATT規範은 모든 締約國에 適用 — 先發開途國, 農業部門이 發展한 開途國은 合意事項을 完全히 適用할 것을 期待 — 低開發開途國은 特別待遇, 다만 農業 및 經濟開發水準을 考慮, 적당한 水準에서 최종 讓許關稅維持 認定 — 輸出開途國 關心品目에 대하여는 先進國이 보다 빠른 速度로 貿易障壁 및 國內支持政策 減縮

開途國優待에 관한 合意事項	各 國 立 場
參與擴大에 관한 締約國團의 決定" 등에 具體化되어 있는 特別하고도 好의적인 特遇原則 同意 ○ 貿易協商過程에서 相互主義 排除 — 自國의 個別的인 發展狀況, 財政需要, 貿易需要등에 附合하는데 寄與 〈中間評價 貿易協商委員會〉 ○ 開途國의 特別한 與件은 Punta del Este 宣言下의 開途國 優待原則下에 協商의 모든 段階에서 充分히 考慮 ○ 農業 農村開發을 促進시키기 위한 直·間接 政府支援措置는 開途國開發에 必須的이라 는 點에 同意 ○ 純輸入開途國考慮 ○ 短期措置 凍結義務免除	○ EC — 農業發展에 우선을 두고 있는 開途國에 대하여 保護 및 支援水準 減縮履行에 있어서 特別한 條件의 惠澤을 賦與 — 減縮約束에 대한 融通性은 開發程度 및 開發需要에 따라 相異해야 함. — 先發開途國은 적어도 對內外的으로 利害關係가 있는 主要品目에 있어서는 再均衡化(減縮約束)에 參與해야 함. — 長期間의 履行期間과 自律性을 賦與하고 政府의 間接的 支援은 許容되어야 함. — 減縮約束에 관한 開途國 優待條件은 i) 履行日程을 合意된 一定期間 동안 延長 ii) 輸入障壁減縮程度는 一般的으로 合意된 目標보다 낮은 水準으로 함. iii) 開途國 輸出關心品目에 대한 貿易障壁 및 補助金의 減縮速度加速化 ○ 純輸入開途國(이집트, 자마йка, 멕시코, 모로코, 페루) — 純輸入開途國들의 農業改革에 따른 價格上昇과 國際收支 負擔 輕減 — 農業部門의 脆弱性을 勘案하여 食糧生産을 包含한 農業生産을 增加시키기 위한 國家의 能力 提高 認定 ○ 브라질, 콜롬비아 — 合意事項 履行에 長期間賦與 — 減縮水準이 낮게 合意, 融通性 賦與 — 數量規制措置 許容

우리나라와 같이 농업이 취약한 개도국에게는 輸入自由化를 하되 農業構造調整에 필요한 유예기간이 충분히 허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선진국과는 달리 우대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開途國 優待措置는 반드시 GATT rule에 명시적으로 반영 하되 구체적으로는 개도국 구조조정에 필요한 장기간의 유예기간 부여 및 정책선택의 자율성 인정, 농업발전 단계를 고려한 감축의무 이행의 면제 또는 차등 적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경우 재정운용상 직접소득 지원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價格支持政策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특히 農業補助金 수준은 일정시점에서의 상호비교가 아니라 과거로부터 누적적인 보조금 수준의 비교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개도국 우대내용에 있어서 선진국은 先發開途國과 低開發開途國을 분리 취급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개도국 우대조치 전부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 農業의 非交易的 考慮事項(NTC)

먼저 NTC(Non-Trade Concerns)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자. NTC는 교역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농업이 지닌 고유한 역할로서 이에는 食糧安保, 環境保全, 雇傭維持, 地域開發 그리고 사회적 혹은 문화적 측면과 관련된 기능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 휴전상태로부터의 國家安全保障이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농업의 취약성 때문에 그 중요성이 다른 어느 국가보다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NTC의 협상의제와 GATT규정, 쟁점별 각국의 입장을 간단히 요약한 것이 〈表 3-5〉이다. 수출국인 미국과 케언즈그룹은 世界貿易의 자유화와 국내비축 및 輸入先 多邊化로 식량안보확보는 가능하리라

는 입장이다. 즉 NTC 수용에 대해 극히 소극적 입장이다. 이에 반해 수입국인 한국, 일본, 스위스 등은 반드시 수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表 3-5 NTC에 대한 GATT규정 및 주요국의 입장

GATT 규정	항 목 별 주 요 국 의 입 장
○ GATT 21조(安全保障을 위한 예외) (b)의 (iii) — 締約國의 안전보장상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시 또는 기타 國際關係上の 긴급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1. 농업의 非交易的 機能 ○ 미국: 食糧安保 ○ 케언즈: 食糧安保, 사회적 목표, 環境保全, 재교육 및 재배치, 社會保障制度, 토지이용조정 ○ 일본: 食糧安保, 토지 및 環境保全, 전체고용, 지역사회의 유지 ○ 스위스: 食糧安保, 環境保全, Territorial Settlement, Social Aspects ○ 북구: 食糧安保, 지역개발, 사회정책, 環境保全 ○ 한국: 食糧安保, 균형적 농촌개발, 環境保全, 고용유지
○ 貿易協商委員會(TNC) 합의요지 — 회원국은 농업정책 수행상 무역정책 이외의 요소들이 고려된다는 점을 인식, 장기목표 달성을 위한 협상에서 제안될 食糧安保 등 회원국들의 관심사항을 고려하도록 함.	2. 基礎食糧의 정의 ○ 케언즈그룹 — 평상시 주식으로 간주되며, 저소득층이 소비하는 식품 * 곡물 및 사료곡물만을 食糧安保 대상품목으로 인정 * 食糧安保를 위한 보호조치는 純輸入開途國에만 허용 ○ 일 본 — 국민의 주요 영양공급원이며, 일일 영양섭취의 주요부분이 되는 품목 — 정상적 상황에서는 안정적이고 충분한 생산의 확보, 食糧不足時는 우선적으로 국내생산과 공급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품목

GATT 규정	항 목 별 주 요 국 의 입 장
	○ 스위스 — 基礎食糧 개념에 대한 언급없음. 3. 목표제시 ○ 일 본 — 품목군별 자급률(또는 품목군별 국내생산 수준) ○ 스위스 — 最小市場接近率(Minimum Market Access Rate) · (농산물 총수입액/농산물 총소비액) %로 표시 · 농산물 생산의 계절적 변동을 고려하여 3개년 간 평균치로 표시 — 단, 현행시장 접근율이 最小市場 接近率보다 낮은 경우 충분한 經過期間(15년) 인정 — LDC에 대해서는 0%의 最小市場 接近率 적용 ○ 한 국 — 最小市場 接近率 또는 최소자급률 · 총인구, 소비형태, 세계식량 보유하고 등에 기초하여 결정 4. 許容對象措置 ○ 일 본 — 基礎食糧의 생산성 향상과 계획된 생산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모든 조치 — 국가 최고 권위기관에서 필요성이 인정된 조치, 즉 허용조치의 선택은 국가 주권적 판단사항임. ○ 스위스 — 最小市場接近率 범위내 보호 및 보조조치의 自律的 選擇(효과의 동등성 원칙인정) — 최소시장 접근을 보장한 국가가 수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지급한 國內補助金 ○ 한 국 — NTC의 이행에 필요한 수량제한 및 국내지원 조치

GATT 규정	항 목 별 주 요 국 의 입 장
	5. 관련조항 개선 ○ 일 본 — 11조에 식량안보를 위한 基礎食糧의 적정 국내 생산 유지에 필요되는 국경조치의 예외인정 — AMS적용에 있어 NTC의 특별고려 ○ 스위스 — 11조 (수량제한의 일반적 금지)의 개선 · 2항 (a) : 수입국의 특수한 입장을 인정 · 2항 (c) (i) : 최소시장 접근 약속이행에 필요한 국내상품의 數量制限 허용 · 2항 (c) (ii) : 輸入規制措置의 목적 통보 및 過剩再發 방지수단 협의 의무반영 — 16조 (보조금)의 개정 — 19조 (緊急措置), 20조(일반적 예외), 21조(安全保障을 위한 예외)의 개정 검토 ○ 한 국 — 식량안보 등 비교역적 관심사항에 필요한 수량 제한 및 국내지원 조치의 GATT규범에 허용(11조의 개선) — NTC와 관련된 非關稅措置는 관세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내 보조조치는 AMS측정대상에서 제외 — 기초식량의 국영무역 인정(17조 개선)

다음으로 각국의 입장과 쟁점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가) 미 국

미국은 NTC를 食糧安保로 한정하고 이는 모든 국가의 관심사항이나 食糧自給과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食糧安保는 세계무역의 자유화와 국내 비축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NTC 논의에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단지 수출국입장에서 輸出規制 및 禁止條項을 개선할 수 있으며 식량비축을 위한 보조금은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나) 케언즈 그룹

케언즈 그룹도 미국안과 유사하다. 케언즈그룹은 농업의 非交易的機能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농산물 생산 및 무역이 왜곡되어서는 안되며 식량안보는 곡물 및 사료곡물의 適正在庫維持와 供給先多邊化로 해결 가능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식량자급을 통한 食糧安保는 비효율적이며 과다한 비용이 들고 수출국에 대한 이익침해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다) 일 본

일본은 최대 수입국으로서 NTC중 食糧安保는 특별하고도 중대한 관심사항이라고 지적하고 食糧安保를 위해 적정한 국내생산기반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이 제안하고 있는 食糧安保의 개념은 국민 기초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의미하며 이를 위한 국경조치 (GATT 11조 2항 (c)i)는 명백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食糧安保에 염두를 두고 있는 품목은 쌀로써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쌀 만큼은 자유화품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배후에 깔려 있다. 일본에서 쌀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품목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라) 스위스

스위스는 비상업적 목적(Non-Commercial Objective) 달성을 위해 필요한 보호비용은 해당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最小國內農業水準 유지는 각국의 고유한 주권사항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합의된 全體自給率 범위내 보조 및 보호조치 수단은 각국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며 11조의 개정을 통해 이를 GATT에 명백히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 한 국

우리나라는 基礎食糧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내 생산기반 유지가

필요하며 이는 최저시장 접근률 또는 최소자급률로 표시되며 그 범위 내에서 필요한 국경 및 국내보호조치를 GATT규범에 허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을 비롯한 일본 스위스 등 수입국측은 NTC가 GATT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수입국마다 關心事項 및 保護品目에서 의견의 차이가 있어 공동보조를 취하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3. 議長草案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은 1989년 4월 제네바 중간평가회의 (Mid Term Review)의 결의에 따라 각국의 제안서가 제출된 이후 이러한 각국 제안에 기초하여 의견대립을 조정하고 합의를 도출해 내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수차례에 걸친 공식·비공식 회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거의 모든 協商議題에 대한 각국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협상이 타결될 전망은 극히 불투명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農産物協商 그룹의 드쥬(DeZeeuw) 의장은 1990년 4월 이후 각국의 의견을 청취하고 쟁점에 대한 의견대립을 조정하기 위해 각국의 대표를 개별 접촉하였으나 각국의 입장이 팽팽히 대립되어 있어 협상골격에 합의를 이룬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TNC회의에 合意草案을 제출·보고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드쥬의장은 보고시한에 쫓긴 나머지 초안에 대한 合意過程을 거치지 않은 채 職權으로 그동안 공식·비공식 회의를 토대로 合意草案을 작성, 1990년 6월 27일 GATT 사무국에 제출하였던 것이다.

드쥬의장은 “농산물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합의초안”으로서 동년 7월9~11일 까지 미국의 휴스턴에서 개최되었던 선진 7개국 경제정상 회담 (G7)에 제출하여 7月23日 개최되는 TNC회의에서 農産物協商 합의골격으로 채택되도록 정치적 결단을 유도하였으나 農業保護 및 支援

水準의 漸進的 減縮이라는 협상목적의 재확인과 의장초안은 협상의 토대(Basis)가 아닌 “협상을 촉진시키는 수단(as a means to intensify the negotiations)”으로 권고한다는 공동성명으로 귀착되었다.

또한 7월12일~13일까지 진행된 “농산물그룹 제23차 공식회의”에서도 議長草案의 채택여부가 집중적인 논의대상이 되었는데 의장과 수출국들은 議長草案이 협상의 기초(Basis)로 채택되어야 할 것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스위스 등 수입국들은 食糧安保 등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강력 제기하고 EC는 그동안 EC가 주장해온 國境保護 및 國內補助 그리고 輸出補助를 포괄하여 점진적으로 감축해야 한다는(Global Commitment) 것과 보호 및 지원수준의 재균형화(rebalancing), 관세화에 다른 보정요소(corrective factor)가 반영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議長草案의 내용 합의에 강력 반대하여 공식적으로 채택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드쥬의장 초안의 주요내용과 각국의 입장을 살펴봄으로써 농산물협상의 최근동향과 내용을 살려보는 것은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가. 議長草案의 要旨

① 國內補助

농산물 무역왜곡 효과를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각국의 국가정책 목표를 추구해야 하며 농업에 대한 國內補助의 상당수준으로 漸進的 減縮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하에 중간평가회의시 선진국에 의해 합의된 지원수준의 동결은 履行期間 동안 계속 有效하여야 하며 아울러 일정제약 조건하에서 허용되는 보조를 제외한 모든 國內補助는 1991~1992년부터 합의될 기간까지 AMS를 이용하여 일정률로 감축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감축대상 정책으로는 첫째, 국제시장 가격보다 국내가격을 높게 유지할 목적으로 취해지는 모든 市場價格 支持政策

둘째, 부족불지불을 포함한 생산자에 대한 直接所得 補助政策

세제, 신용대부나 영농비 지원을 포함한 농산물 생산에만 주어지는 금융 및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요소 및 유통보조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감축약속의 이행과 표시는 AMS(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를 활용하고 AMS산출이 불가능한 품목은 이에 상응하는 합의를 통해 감축해 나간다. AMS는 1988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품목당 총통화가치로 표시하고 국제가격(고정참조가격)은 1986~88년의 평균치를 사용한다.

또한 각 締約國은 10月1日까지 각국 농업지원 현황표인 Country List를 제출하되 그내용은 최고한도 양허될 품목별 支援水準 및 減縮約束에서 제외될 정책과 AMS 측정대상품목 그리고 개별품목별 감축되어질 AMS기초수준등이다.

허용대상 정책은 특정품목과 연결되지 않은 일반적 福祉政策으로 일반서비스, 환경보전, 자원전환 및 탈농지원, 재해구조 및 작물보험, 식량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재고유지 및 지역개발정책 등이다.

이러한 許容對象 政策은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농민에 대한 이러한 지원은 소비자로부터 전가된 것이 아니고 租稅負擔을 통한 政府財政에 의한 지원이어야 한다.

둘째, 현재나 미래의 생산수준 및 생산요소에 연계되어서는 안된다.

셋째, 특정품목이나 품목군과 연계되어서는 안된다(단 일반서비스 보조는 적용안됨).

넷째, 생산자에 대한 價格支持 효과가 없어야 한다.

다섯째, 영세농 소득보조정책의 경우 생산자 소득수준은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의 X %이상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만 허용되고 許容對象이 되는 정책이라도 항상 규제 및 감시대상이 되며 현수준 이상으로 보호의 정도를 강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開途國에 대하여는 개도국의 농업 및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농업지원은 개도국 개발사업의 일환이라는 중간평가 합의사항에 따라 감축약

속의 성격과 정도, 약속이행기간에 있어서 신축성을 부여한다. 다만 감축의무 면제조건으로 農業支援政策이 무역에 미치는 효과가 없거나 극소일 것과 국내가격이 동종상품의 국제가격보다 높지 않도록 유지해야 할 것 등을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② 國境措置

농업보호 및 보조수단의 상당정도의 점진적인 감축에 맞추어 市場接近機會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전제하에 모든 비관세 조치를 關稅化해 나가고 C/L에 나타난 모든 품목의 국경보호조치를 감축해 나가되 일부 품목의 비교역적 관심사항(NTC)은 관세화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한다.

관세화 방법으로는 정상적인 관세이외의 모든 國境措置를 關稅相當額으로 전환하고 관세상당액(T. E) 감축수준 및 방법은 C/L을 토대로 하여 1991~1992년부터 합의기간 동안 平均率로 매년 감축하여야 한다.

또한 關稅割當量(T. Q)은 C/L을 토대로 합의기간 동안 평균율로 매년 增量해야 하며 T. E 감축 및 T. Q 증량에 있어서 一部品目に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협상가능성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開途國 수출관심 품목에 대하여는 T. E 감축 및 T. Q 증량하고 개도국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감축약속 이행에 탄력성을 부여한다. 또한 關稅化의 보완장치로서 輸入急増, 國際市場價格 變動등에 대비 특별한 긴급수입 제한제도(Special Safeguard Provisions)가 인정되나 위의 사유가 해소되면 당초 약속 수준으로 환원된다.

③ 輸出競爭

수출에 대한 직접재정지원 및 기타 수출보조 및 지원 등은 상당한 정도 점진적으로 감축한다는 원칙하에 輸出補助의 경우는 다른 보조보다 급속히 감축해야 하고 감축방법에 있어서는 수출지원에 대한 총예산 지출액, 단위당 수출지원, 수출지원 되는 물량의 총량을 상당수준

감축하거나 이러한 방법들을 혼합하여 감축하는 방법을 고려한다. 그리고 1990년 10월 1일까지 최근 3개년간의 재정지출 또는 세입손실에 대한 각종 輸出補助金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 議長草案에 대한 각국의 입장

1990년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된 “제23차 농산품 그룹 공식회의”에서 드주의장은 자신이 작성한 초안을 제시하고 이를 협상의 기초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 회의에서 의장초안에 대한 각국 공식 입장만이 표명되었을 뿐 초안에 대한 토론없이 회의가 중단되었다. 그 후 7월19~20일 그리고 7월23일 두차례에 걸쳐 속개되었으나 議長草案에 대한 각국의 입장대립이 심화되어 초안을 협상의 기초로 채택하는 데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7월 21일 속개된 제23차 농산품 그룹회의는 議長草案에 대한 합의도출을 위하여 속개되었는데, 미국·EC간의 고위급 비공식 협의를 거쳐 초안내용의 수정없이 커버노트(Cover Note)만을 일부 수정한 후 드주의장은 貿易協商委員會에 상정할 보고서로서 초안을 통과시켰다.

제23차 농산품그룹 공식회의에서 개진된 초안에 대한 主要國의 입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미 국

議長草案은 모든 국가가 받아들이기에는 약간씩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합의문이 보다 일찍 나왔어야 한다고 하고 전반적으로 만족의사를 표명하였으나 AMS사용에 있어 許容對象政策의 보다 엄격한 적용을 요구하므로써 개별국가의 특수사항 고려에 불만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이 초안을 추후협상을 촉진시키는 수단으로 쓰자는 휴스턴 G-7 회담에서의 합의를 강조하면서 향후 협상의 기초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② EC

EC는 議長草案이 EC의 주장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협상의 기초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하였다. EC는 특히 議長草案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표명하였는데 첫째, 최저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의 허용조건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非關稅障壁의 관세화에 있어서의 곤란함을 설명하면서 補完裝置 및 재균형화(rebalancing)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셋째, 수출보조금을 더욱 빠르게 감축해야 한다는데 불만을 표시하며 輸出補助金の 감축도 국내·국경보호를 포괄하여 감축하는 global commitment 를 채택할 것과 넷째, 총량보호측정장치(AMS)의 기준년도를 1986년으로 하고 1986년 이후 EC의 정책개선에 대해서는 감축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Credit)해야 한다는 것이다.

③ 케언즈 그룹

케언즈 그룹을 대표하여 호주는 議長草案을 협상의 기초로서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모든 국가가 이에 동의할 것을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AMS의 사용 및 開途國 優待措置의 미흡 등에 불만을 표시하였으나 議長草案을 수정하는 것은 또 다른 복잡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하면서 현재대로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였다.

카나다, 뉴질랜드, 브라질, 인도네시아, 태국 등 케언즈 그룹 국가들은 호주 입장에 적극 동조하였다.

④ 일 본

일본은 수입국의 관심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Country List(C/L)는 초안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제출하기 어렵다고 하고 종전입장을 견지 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AMS사용, 關稅化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히 基礎食糧의 關稅化가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일본은 수입국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許容對象

政策의 범위와 요건을 정하고 이를 위해 GATT 제11조를 유지·개선해야 하며 관세화시의 보완장치 마련을 주장하였다.

⑤ 한 국

우리나라는 의장초안이 先進輸出國 입장에 기본적으로 치우쳐 있으며, 수입개도국의 어려움과 관심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농업개혁을 모든 국가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데 반대하였다.

또한 1989년 4월 중간평가 회의시 중요성이 인정된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NTC)이 극히 미흡하게 반영되었으며 우리나라 농업이 갖고 있는 취약한 農業構造 조건을 감안할 때 議長草案에 의해 협상이 타결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농업기반이 붕괴될 것이다. 議長草案을 협상의 기초로 채택하는 것은 원만한 협상진행 보다는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 주장하고 우리나라의 특별한 관심사항이 議長草案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표명하였다. 그리고 議長草案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國內補助와 관련해서는 무역 및 생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보조에 초점을 맞추고, NTC 수행에 필요한 보조는 감축대상에서 제외하여 의장이 제시한 엄격한 허용조건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國境措置와 관련하여 관세화는 농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NTC 관련 품목과 생산통제 품목은 관세화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재균형화(Rebalancing), 보정요소(Corrective Factor) 및 Safeguard 등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輸出競爭에 관해서는 현재 세계농업 문제는 수출국의 과잉보조에 더 큰 책임이 있으므로 선진수출국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輸出補助金を 國內補助 및 國境措置에 우선하여 급격히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第 4 章

Country List와 Offer List의 작성 및 제출

1. Country List의 작성 및 제출

농산물그룹 의장은 푼타델에스테 각료회담 및 중간평가회의 합의사항인 농산물무역자유화 또는 농업개혁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각국의 농업보호현황자료(Country List)를 제출할 것을 의장초안에서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0년 10월말 현재 27개국이 Country List를 제출하였다. 의장초안에서 밝힌 Country List에 포함된 내용은 농업에 대한 국내보조, 국경보호, 수출경쟁의 3개분야에 대한 보호현황이다.

국내보조 현황자료의 경우 각국의 모든 국내보조정책을 감축대상정책과 허용대상정책으로 구분하여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의장초안에 따르면 감축대상정책으로는 생산자가격을 국제시장가격 이상으로 유지할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모든 시장가격지지정책, 결손보전(Deficiency Payment)과 같은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정책 그리고 생산요소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 등이 포함된다. 위에 열거된 정책에 주어지는 금융 및 모든 재정지원도 감축대상에 속하게 된다. 한편 허용대상정책으로는 공공적 수혜를 목적으로 농업과 농촌에 시행되고 있는 일

반서비스정책 (연구사업, 지도, 교육, 훈련, 검사, 병충해 방제, 유통 및 판매촉진 등), 環境保全施策, 자원의 전환 및 은퇴를 돕는 정책, 재해보상, 작물보험, 국내식품지원(구호), 食糧安保目的의 공공비축, 지역개발 및 소득보호정책 등이 있으나 이들 정책이 허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특정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로부터의 소득이전이 아닌 일반납세자에 의한 지원일 것. 둘째 현재 또는 장래의 생산수준 또는 생산요소수준을 변동시키지 않을 것. 셋째 일반서비스를 제외한 許容對象政策의 경우 이들 정책이 특정품목이나 특정생산부문에 한정적이지 않을 것. 넷째 생산자에 대한 가격지지 효과가 없을 것. 다섯째 소득보호정책의 경우 최근 3년간의 평균소득의 일정수준 이상이 되지 않을 것 등이다.

이러한 모든 國內補助政策은 품목별로 總量測定裝置(AMS)에 의해 계측되어 Country List에 표시되어야 한다. 이때 품목별로 AMS 계측이 가능한 경우는 AMS 계측가능 품목란에 표시하고 통계자료의 미비 등으로 국내보조정책이 시행되었으나 계측이 불가능한 품목은 AMS 계측 불가능란에 표시하여야 한다.

국경보호자료는 현재 비관세조치로 보호받고 있는 상품에 대한 모든 비관세보호조치를 關稅相當額(Tariff Equivalent : TE)으로 계산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관세상당액 계산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이번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에서는 가격차 방식(Price Gap Method)이 채택되었다. 가격차 방식이란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를 관세상당액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는 從量稅(국내가격-국제가격) 또는 從價稅((국내가격-국제가격)/국제가격)로 표시할 수 있다.

의장초안에 따르면 관세상당액의 계산은 상품분류에 있어 HS 4단위 또는 HS 6단위를 기준으로 하고 자료는 최근의 자료인 1986~88 3개년을 기준으로 하여 그 평균치를 관세상당액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다. 가공식품의 관세상당액은 원료농산물의 관세상당액을 가공식품에 포함된 원료농산물 함량에 곱해서 결정하며 品質과 品種의 차이가 있을 때

는 적절한 係數를 이용하여 조정하도록 하였다. 가격기준에 있어서는 국제가격은 CIF 가격을 사용하고 국내가격은 국내의 年平均市場價格(대표가격)을 사용하며 수입실적이 없어 자국의 CIF가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인접국의 CIF가격 또는 주요수출국의 FOB가격을 運送料와 보험료를 포함한 CIF로 환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관세상당액은 1986~88 평균치 이외에 1986, 87, 88 각년도별 자료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세이외의 모든 국경보호조치, 수입량, 수입량과 국내소비량과의 비율 등도 Country List에 자세히 밝히도록 되어 있다.

輸出補助金에 대한 현황자료는 주로 농산물 수출국들에 해당되는 자료로 현재 정부 및 관련기관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모든 수출보조금을 보조금총액과 품목별 보조금으로 나누어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주요 수출보조정책으로는 수출농산물에 대한 直接輸出補助 즉, 수출되는 농산물에 대한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에 대한 차액보상, 수출농산물의 국내가격을 국제가격 이상으로 유지하는 정책, 정부가 보유하고 있거나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輸出用備蓄 農産物에 대한 보조(구매가격과 방출가격과의 차액, 보관비 등이 포함됨), 수출상품의 수송이나 유통비용에 대한 보조, 수출금융 지원, 수출상품의 유통이나 수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소득이나 價格補填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이 있다. 수출보조금에 대한 자료는 1987~89년간의 연도별 자료와 그 기간중의 평균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Country List는 당초 議長草案에 따르면 10월 1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각국의 사정으로 1990년 10월말 현재 27개국만이 제출한 상태이다. 그러나 Country List를 제출한 27개국은 실질적으로는 EC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주요협상 참가국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들 국가들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알젠틴, 말레이시아, 태국, 칠레, 브라질, 콜롬비아, 쿠바, 우루과이, 유고,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핀란드, 아이슬랜드,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모로코, 노르웨이,

싱가폴, 남아공, 스웨덴, 스위스이다. 주요국의 Country List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요국의 Country List 제출현황

앞서 밝혔듯이 Country List의 주요내용은 국내보조현황, 국경보호현황 그리고 수출보조금현황이며, 국내보조현황자료에 있어서는 감축대상정책과 허용대상정책의 분류가 중요하며 계속 논의의 대상으로 남아있으며 國境保護現況資料는 관세화 대상품목 및 관세화 불허품목의 제시 여부 그리고 輸出競爭의 경우에는 수출경쟁을 위한 보조금 지불형태 및 보조금 수준 등이 주요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 따라서 다음은 국가별 C/L 내용을 이들 3개분야별로 분석한 것이다.

1) 미 국

미국은 17개 농산물(쌀, 보리, 밀, 콩, 옥수수, 호밀, 귀리, 수수, 면화, 설탕, 담배, 땅콩, 꿀, 모헤어, 쇠고기, 낙농품, 양모)에 대한 국내보조현황자료를 비교적 의장초안에 따라 충실하게 제출하였다. 주요 관심사항인 허용대상정책(Green Box)으로는 일반서비스(연구사업, TVA사업, 유통, 검사, Extension), 자원보전정책, 자원의 離脫政策, 환경보전, 재해구조, 작물보험, Food Aid 등을 분류하고 있어 의장초안의 허용대상정책에 대한 조건을 거의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減縮對象政策(Amber Box)에는 모든 품목특정정책과 품목불특정정책중 금융지원과 水利費支援을 포함 총 250억 달러 정도를 감축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관세이외의 국경보호조치를 관세화 함에 있어 미국은 낙농품, 설탕, 면화, 낙화생, 쇠고기 등 현재 관세이외의 국경보호조치가 있는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상당액을 제시하여 모든 품목의 관세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非關稅措置로는 수출자율규제, 총량수입할당제, 非自動輸入承認, 국별수입할당제 등이 있다. 한편 輸出補助

금은 총 20개 품목에 대해 9억달러 정도가 주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일 본

일본은 AMS계산이 가능한 품목으로 밀, 보리, 쌀, 대두, 설탕, 우유 및 유제품,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계란의 10품목과 AMS계산이 불가능한 것으로 채소류, 과일류, 임산물, 수산물의 4개 품목군에 대한 국내보조금 지급현황을 AMS로 계산하여 제출하였다. 일본의 경우 감축대상정책(Amber Box)으로는 시장가격지지와 不足拂支拂制度만을 분류해 놓고 있으며 기타의 국내보조정책 들은 모두 허용대상정책(Green Box)으로 분류하였다. 일본의 주요 허용대상정책으로는 자원 전환정책, 利子率減免措置 등의 금융지원정책, 농업보험, 재해보상, 연구·지도·훈련사업, 병충해 방제사업, 구조개선 및 하부구조개선 관련사업, 유통 및 판매촉진 등이 있다. 단위당 AMS와 총 AMS를 모두 계산했으며 Punta Del Este 선언 이후의 자유화 실적을 Credit로 인정받기 위해 1986년도의 AMS도 계산하여 제출하였다.

비관세조치의 관세화에 있어 일본은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며, 기초식량 및 과잉생산으로 생산조절이 예상되는 품목(GATT 제11조2항C 대상품목)에 대하여는 관세화 불허 의사로 관세상당액을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일본은 현재 실시중인 비관세조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에 있으며 관세화불허 품목도 쌀, 보리, 밀, 기타곡물, 유제품, 땅콩, 당류, 곡물가공식품, 혼합조제식품 등 현행대로이다. 수출보조금은 없는 것으로 제출되었다.

3) 카나다

AMS 계산 가능품목으로 11개(밀, 보리, 옥수수, 콩, 사탕무, 쇠고기, 돼지고기, 유제품, 계란, 가금육, 카놀라)와 AMS 계산 불가능 품목으로 5개(사과, 감자, 양고기, 기타곡물, 기타육류) 품목에 대한 國內補助現況資料를 제출했으며 허용대상정책과 감축대상정책은 의장초

안에 비교적 근접하는 기준에서 분류되었다. 카나다는 감축대상 국내보조정책으로는 시장가격지지정책, 직접지불제도, 투입물 보조정책을, 허용대상정책으로는 금융지원, 작물보험, 연구·훈련사업, 검사, 구조개선 및 하부구조 개선사업, 油類消費稅 減免 등을 분류해 넣었다.

국경보호조치에 있어 카나다는 원칙적으로 모든 비관세조치의 관세화를 수용할 의도하에 CL을 제출하였으며 현재 GATT 11조 2항 C의 적용을 받고 있는 상품에 대한 關稅相當額도 계산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關稅化 不許立場을 표시하고 있다. 관세상당액을 제시한 주요품목으로는 밀관련제품, 보리관련제품, 밀, 보리, 유제품, 닭고기, 계란, 과자류 등 HS 6단위 또는 HS 8단위기준으로 71개 품목이다.

카나다는 밀, 보리, 옥수수, 카놀라, 콩, 귀리, 메밀, 특작물, 해바라기씨, 아마씨 등의 수출을 위해 총 2억 1600만 달러(자국화폐기준, C\$)의 輸出補助金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호 주

호주는 AMS 계측가능품목 14개(쌀, 밀, 보리, 옥수수, 수수, 귀리, 유채, 면화, 설탕,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양고기, 우유)와 AMS 계측불가능품목 또는 품목군 10개(계란, 담배, 사과와 배, 일시저장 과일, 양조용 포도, 건포도, 감귤, 과일쥬스, 기타채소류, 채소쥬스)에 대한 국내보조금 지급현황을 제시하였다. 일반서비스(재해보상, 연구, 유통개선, 병충해 방제, 수출품에 대한 검사를 제외한 농산물 검사, 구조조정, 토양보존사업), 감세정책, 연료에 대한 면세정책 등은 허용대상으로 분류하였으며 그 외의 정책들은 감축대상으로 분류하였다.

1986년 9월 기준으로 치즈, 감자, 귀리, 메밀 등이 非關稅措置에 의해 수입이 규제되었으나 대부분이 이미 관세로 전환되었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몇몇 상품에대한 비관세조치들도 1992~95기간중 철폐 내지 감축계획하에 있으며 이들 상품에 대한 수입량이 많아 관세상당액이 의미가 없음을 밝히고 있으며 따라서 관세상당액을 계산하지 않고

있다. 輸出支援의 경우 농산물유통에 대한 일부 보조가 이에 해당 될 수 있으나 이를 국내보조의 일반서비스에 포함시켜 수출보조금은 없는 것으로 CL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수출보조금은 국내보조나 비관세수입 규제보다 큰폭의 감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출농산물에 대한 유통보조금을 국내보조의 일반서비스에 분류하여 減縮對象에서 제외시키고 있음은 議長草案에 따른 분류라고는 볼 수 없다.

5) 뉴질랜드

AMS 產出可能 품목으로 밀, 사료작물, 우유 및 유제품,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양고기, 양모, 계란 등 9개 품목에 대한 국내보조금지급 현황을 제시하고 있으나 품목 불특정 정책의 경우 생산액비중에 따라 보조금액수를 분배하지 않고 정책과 그 정책에 대한 금액만을 표시하고 있어 밀과 유제품을 제외한 전 품목의 AMS는 없는 것으로 하였다. 경지개발, 금융보조, 소득세감면, 수리사업은 감축대상정책으로 검사, 등급화, 병충해 방제, 검역, 연구, 海草除去, Extension, 재해구호, 방역사업, 각종 농업단체에 대한 보조 등은 허용대상정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방식에 따르면 감축대상 국내보조금은 약 4억 1,900만 달러이며 허용대상 국내보조금은 약 1억 9,700만 달러가 된다.

뉴질랜드는 거의 모든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조치가 이미 철폐되었으며 현재 사과와 배에 대해서만 비관세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들의 관세상당액은 종가세로 6.3%로 계산되었다. 뉴질랜드는 지난 6년간의 非關稅措置 撤廢實績을 Country List에 첨부하여 自由化實績을 과시하고 있다. 수출보조금은 쇠고기, 양고기, 양모, 우유 및 유제품, 사과, 배에 주어지고 있으며 총 4억 4,500만 달러에 달한다.

6) 스웨덴

스웨덴은 AMS 산출가능품목 10개(밀, 사료작물, 유채, 설탕,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계란, 우유)와 AMS 산출불가능 품목 6개(사슴고기, 감자, 원예작물, 채두류, 사료작물 종자, 가용농산물)로 나누어 국내보조금 지급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1990년의 食糧政策調整計劃을 국별감축계획(Offer List)에 반영시킬 것을 고려하여 CL을 작성하였으며 지역개발, 자원의 전용(탈농지원 등) 등은 허용대상정책으로 분류하였다. 비관세조치의 관세화에 대하여는 HS 7단위기준으로 177개 품목에 대한 관세상당액을 제시하고 있으며 輸入賦課金を 징수하고 있는 전 품목에 대하여 100kg당 가격으로 표시되었다. 수출보조금은 밀, 보리, 귀리, 호밀, 유채, 쇠고기, 돼지고기, 치즈, 버터, 분유, 계란, 가금육, 설탕, 감자, 완두 등 15개 품목에 지원되고 있다.

7)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國內補助現況資料로 AMS 계측가능품목 9개(밀, 사료작물, 유채, 사탕무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우유)와 AMS 계측 불가능 품목 4개(기타농산물, 포도주, 면양, 기타축산물) 등 모두 13개 품목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으며 지역개발, 비축사업, 유류대 지원, 금융지원, 환경보전 등의 목적을 위해 수행되고 있는 정책은 許容對象政策으로 분류하였다. 국경보호에 있어서는 현재 비관세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255개 품목(HS 6단위 기준)에 대하여 대부분 관세상당액을 제시하고 있으나 과채류 등 관세상당액계산이 어려운 품목은 추후 이를 제출하기로 하고 Country List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관세상당액의 적용에 있어서는 inflation과 세계시장 가격변동, 환율변동 등의 변수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輸出補助金은 13개 품목(밀, 사료작물, 분유, 치즈, 유가공품, 소, 돼지, 말, 산양, 쇠고기, 돼지고기 등)에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8) 스위스

스위스의 경우 AMS 제측 가능품목 9개(밀, 기타곡물, 유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계란, 설탕)와 과채류와 담배 등 AMS 제측불가능 품목 9개에 대한 國內補助金 지급현황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Country List 작성이 짧은 시간내에 방대한 작업을 요해 자료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였다. 비관세조치의 관세화 대상품목 586개(HS 8단위기준) 가운데 관세상당액의 계산이 가능한 539개 품목에 대하여는 關稅相當額을 제시했으나 자료의 미비 등으로 관세상당액의 계산이 곤란한 경우는 이를 제시하지 않았다. 스위스는 9개품목에 대해 수출보조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자료가 제출되었다.

9) 태 국

쌀, 대두, 팜유, 설탕 등 AMS 제측가능품목과 양파, 마늘, 파인애플, 옥수수, 담배, 육류 등 AMS 제측이 불가능한 품목으로 나누어 국내보조현황자료를 제출했으나 모든 정책을 許容對象政策으로 분류하고 있다. 심지어 市場介入(市場價格支持)政策도 許容對象으로 분류했으며 이에 대해 국가는 헌법에 규정된대로 農業開發 및 農民福祉 向上의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정책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를 표시하고 있다. 국경보호조치의 경우 관세상당액의 계산이 불가능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관세상당액을 제시했으며 수출보조금 지급 정책으로는 輸出信用 提供이 유일한 정책이라고 밝히고 있다.

10) 노르웨이

OECD가 노르웨이에 대해 계산하고 있는 AMS 제측가능품목 9개(밀, 보리, 귀리, 우유, 쇠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계란)와 과채류, 감자 등 AMS 제측불가능 품목에 대한 국내보조현황자료를 제출했으며, 허용대상정책으로는 非交易的 關心事項(NTC)에 관련된 정책

들인 食糧安保, 環境保全, 地域開發, 社會政策, 生産調節 등이 포함되었고 감축대상정책으로는 시장가격 지지, 직접지불제도, 생산요소비용 보조 등이 분류되어 있다. 國境保護措置에 대하여 대부분의 비관세조치 보호품목의 관세상당액을 제시하고 있으며 10개 품목에 대한 수출보조금 지급현황도 제출하였다.

11) 기타국가들

기타 Country List 제출 국가들 가운데 브라질은 쌀, 콩, 옥수수 등 10개 품목에 대한 국내보조금 지급정책을 열거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숫자는 기록하지 않았으며 輸出補助金은 없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였다. 인도네시아는 국내보조금 지급 현황자료의 경우 모두 AMS 계측 불가능품목에 분류하여 정책내용만 기록하고, 금액은 표시하지 않았다. 許容對象政策의 분류에 있어서는 연구사업, 환경보전, 식량안보용 비축사업, 병충해 방제, 하부구조 개선사업, 재해보상, 식량보조사업 등이 포함되었으며 투입물에 대한 보조와 금융지원은 減縮對象으로 분류하였다. 관세화에 있어서도 품목 및 수량제한 방법은 표시되었으나 관세상당액은 계산하지 않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옥수수, 밀, 쇠고기, 양고기에 대한 국내보조금 지급현황을 제출했으며 시장가격 지지, 直接支拂制度, 투입물보조 등은 감축대상으로 분류했으나 水利事業에 관련된 사업들은 모두 허용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수리사업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있어 결정적인 農業投入財로 이에 대한 어떠한 감축도 허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관세상당액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양모, 옥수수, 기타과일류 등에 대해 수출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국내보조금, 비관세조치, 수출보조금 지급정책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자료가 제출되었다. 말레이시아도 쌀에 대해서만 品目特定國內補助金이 지급되고 있으며 기타 농산물에 대한 보조는 모두 품목 불특정으로 분류하였으며 수출보조금도 품목별로 제시하지 않고 총액만 표시하는 등 많은 국가들이

Country List 작성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 한국의 Country List

協商終了 時限을 1개월 정도 남기고 있는 UR농업협상은 25차 회의에서도 議長草案이 협상진전의 수단으로 쓰일 것만이 합의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협상의 Framework 또는 CL 작성시의 문제점이 토론되고 있다.

주요국에 대한 Country List 분석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의장초안이 CL 작성에 있어서의 기본원칙과 협상원칙에 있어 '각국의 利害關係나 농업현황을 고려할 수 있는 기본적 틀을 결여하고 있어 각국이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 할 수 있는 방향으로 CL이 작성 제출되었다. 한국도 의장초안에 따라 충실히 CL을 작성하고자 노력했으나 해석상에 문제나 융통성이 있는 부분을 한국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 될수 있는 방향으로 CL이 작성되었다. 지금까지 UR농업협상에 있어 한국은 가장 강력하게 드류의장의 협상초안에 반대하는 나라의 하나로 부각되어 왔으며 협상방식이나 CL 작성에 있어서의 기본적 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CL과 OL(감축계획에 대한 안)을 제출할 것을 희망해 왔다. 그러나 현재의 분위기로 보아서는 의장초안에 대한 협상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기존의 틀 내에서 제출된 CL과 OL을 기초로 양자 및 다자 협상에 의해 기본적인 틀이 확정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협상의 긴박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여 한국은 10월 29일 CL을 제출하였다.

韓國은 그간 UR농업협상에 있어 農産物輸入國의 입장에서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으로부터도 시장개방 압력을 받아 왔으며 先進輸出國은 물론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는 여러 개도국 사이에도 포함될 수 없는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다. 이것은 이미 構造調整段階를 끝낸 선진국이나 구조조정단계에 들어서지 못한 개도국과는 달리 한국이 이제 구조조정의 단계에 진입해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CL 작성에 있어 충분히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따라서 한국은 스위스, 오

스트리아,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과 함께 農業의 非交易的 關心事項(또는 非交易的 特性)을 감안하여 무차별적이고 획일적인 국내보조금 감축이나 급격한 시장개방은 허용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이 構造調整段階를 맞이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는 개도국이나 선진국과는 달리 구조조정을 위한 特別猶豫期間 設定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경제발전 단계에 따른 국가별 農業發展水準의 차이를 인정하여 국가발전과 구조조정 목적에 부합되는 보조정책과 수입규제의 허용을 목표로 협상에 임해 왔다. CL이 일단 제출되면 향후 그 내용의 수정이 어려울 것이며 CL의 내용은 사실상 앞으로 진행될 쌍무간 또는 다자간 협상의 기본이 되는 자료이며 표시된 수준이상의 보호가 허용될 수 없는 한계치가 된다는 사실도 CL작성시에 충분히 고려되었다. 이러한 韓國의 入場은 구체적으로 협상에 있어 NTC 反映如否, 특별유예기간 획득여부로 그 관심사항이 압축되었으며 국내보조와 국경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CL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경우 輸出補助金은 미미한 상태이며 따라서 수출보조금 내역은 CL에 포함되지 않았다.

1) 한국의 국내보조에 대한 CL

생산과 가격에 큰 영향을 미쳐 貿易歪曲 效果가 큰 국내보조정책은 점진적으로 감축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각국의 農業發展水準과 農業의 非交易的 機能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한국의 국내보조정책에 대한 기본적 입장이다. 따라서 개도국의 경우 개발목적 및 구조조정을 위한 국내보조와 NTC 관련정책은 비록 특정품목에 대한 보조일지라도 許容對象政策에 분류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농업기계화 관련 보조, 구조조정 및 작목전환에 대한 보조, 하부구조 개선정책 등은 식량안보, 환경보전, 지역개발, 고용유지 정책과 함께 허용대상정책으로 분류되었다. 한국은 또한 의장초안중 허용대상정책의 요인이 까다롭고 개도국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을 감안하여 무역왜곡효과가 적은 대부분의 정책들(예를 들어 생산 요소에 대한 보조, 시장가격지지 등)을 허용대상정책으로 분류하였

다. 결국 한국은 국내보조에 있어 NTC목적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품목에 대해 수행되고 있는 모든 정책과 의장초안에 분류된 허용대상정책을 모두 감축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AMS계측가능 품목으로 제시한 9개 품목(쌀, 보리 콩, 옥수수,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계란, 우유) 가운데 NTC 관련 품목을 제외하면 계란에 대한 국내보조 일부만 감축대상이 된다.

표4-1 議長草案의 減縮對象政策과 許容對象政策의 區分

減 縮 對 象	許 容 對 象 ¹⁾
- 市場價格支持 · 國際價格 이상으로 生産者價格을 유지시킬 목적의 제반 정책 - 生産者에 대한 직접지원 · 不足拂支給 등 - 生産要素 및 流通費用의 절감을 위한 시책 · 金融 및 稅制支援 포함	- 農業과 農村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적 성격의 일반서비스 · 研究指導, 敎育, 訓練, 檢査 · 病蟲害 防除 · 流通 및 販賣促進 등 - 環境 및 土壤保全政策 - 資源轉換 및 隱退支援政策 - 災害救護, 作物保險 - 食糧安保目的의 公共在庫維持 - 地域開發 및 所得安定措置 (Income Safety-Net Program)
* 貿易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國內生産獎勵 또는 費用節減 및 價格支持 등에 대한 政府(地方政府 포함)의 보조정책	* 品目別 生産 및 價格, 貿易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이고도 공공적인 목적 또는 福祉目的의 補助政策

註: 1) 許容對象 補助事業 및 시책의 세부요건

- i) 政府財政에 의한 지원일 것
- ii) 현재 또는 미래의 생산수준 및 生産要素水準과 연계되지 않을 것 (단, 農業生産으로부터 生産要素를 빼내는 경우는 제외)
- iii) 特定品目이나 특정 生産部門에 한정적이지 않은 것 (단, 一般 Service의 경우는 제외)
- iv) 生産者에 대한 價格支持效果가 없을 것
- v) 所得安定裝置의 경우 최근 3년간 平均所得의 X%를 초과하지 않을 것

國內補助 現況을 AMS로 계측하여 표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의 모든 보조정책을 적용받고 있는 품목을 결정하여 이를 AMS 계측이 가능한 품목과 불가능한 품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품목(또는 품목군)의 선정은 통계자료의 이용가능성 여부, 상대국의 품목에 대한 관심도를 고려하여 곡물류와 축산물은 OECD가 PSE 계산시 적용하고 있는 정도로 세분화하여 위에서 열거한 9개 AMS 계측가능 품목을 선정하였으며 기타 과실류와 채소류는 세분화하지 않고 품목군으로 묶어 AMS 계측이 불가능한 경우를 처리하였다. 다음은 선정된 품목별로 (표4-2)의 해당정책별 보조수준을 계측하고 이를 의장초안에서 밝힌 양식에 따라 국내보조 현황표에 기입하여야 한다. 韓國은 AMS 계측에 있어 기본적으로 OECD의 PSE 산출대상정책의 분류에 따르고 있으나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한국의 여건에 맞게 조정되었다. 즉, 직접지불에 해당하는 災害復舊는 일반적으로 품목 불특정사업으로 일반서비스 항목으로 분류하였으며, 作目轉換政策의 경우도 수입개방으로 인한 필연적인 정책으로 일반서비스 항목의 구조조정에 포함시켰다. 그 밖에도 생산요소에 대한 보조금은 의장초안에 따르면 감축대상정책에 속하나 농업기계화자금 지원은 構造調整事業으로 간주하여 일반서비스의 구조조정에 편입시켜 허용대상 정책으로 하였으며 금융지원도 품목 불특정사업 또는 생계비 보조로 간주하여 일반서비스의 기타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구조개선 및 하부구조 개선사업도 구조조정이라는 廣義의 범주에 분류하여 한국이 주장하는 구조조정정책의 중요성과 이에 속하는 모든 정책의 허용의지를 표명하고 있다(OECD와 한국의 분류방식에 대한 차이는 표4-2 참조).

表 4-2 AMS 對象政策의 再分類

OECD 算出方式	我國의 算出方式
I. Level of production	I. Level of production
II. Producer price	II. Producer price
III. Value of production (I × II)	III. Value of production (I × II)
IV. Direct payments	IV. Direct payments
V. Adjusted value of production (III+IV)	V. Adjusted value of production (III+IV)
VI. POLICY TRANSFERS	VI. POLICY TRANSFERS
A. MARKET PRICE SUPPORT	A. MARKET PRICE SUPPORT
B. DIRECT PAYMENTS	B. DIRECT PAYMENTS
1. Deficiency payments	1. Deficiency payments
2. Disaster payments	2. Disaster payments
3. Diversion	3. Other
4. Levies, fees (-)	
C. REDUCTION OF INPUT COSTS	C. REDUCTION OF INPUT COSTS
1. Capital grants	1. Fertilizer
2. Interest concessions	2. Other
3. Fuel	
4. Fertilizer	
5. Transport	
6. Insurance	
7. Other	
D. GENERAL SERVICES	D. GENERAL SERVICES
1. Research, advisory, training	1. Research, advisory, training
2. Inspection	2. Disaster restoration
3. Pest and disease control	3. Structural adjustment

OECD 算出方式	我國의 算出方式
4. Structures/infrastructures	4. Marketing and promotion
5. Marketing and promotion	5. Other
6. Other	
E. SUB NATIONAL	
F. OTHER	
1. Tax concessions	
2. Other	
VII. Total PSE (VI)	VII. Total PSE (VI)
VIII. Unit PSE (VII ÷ I)	VIII. Unit PSE (VII ÷ I)
IX. Percentage PSE (VII ÷ V)	IX. Percentage PSE (VII ÷ V)

품목별 PSE 계산을 위해서는 표 4-2의 양식에 따라 I 항목부터 IX항까지가 완성되어야 한다.

항목별 구체적인 계산과정은 다음과 같다.

〈計測이 可能的한 경우〉

生産 및 價格(項目 I - V)

- PSE 계산시 우선 필요한 것은 生産量(項目 I)과 農家販賣價格으로 표시된 生産額(項目 III)임. 生産額은 農家販賣價格(項目 II)에 生産量을 곱해서 구할 수도 있고(단, 政府收買가 있는 경우 收買量 만큼은 政府收買價格을, 收買量을 제외한 부분은 農家販賣價格을 적용하여 계산), 商品의 質이 同質의이지 않을 경우 生産量에다 加重平均價格을 곱해서 얻을 수 있음.
- 項目 V, 즉 조정된 總 生産額은 生産額(項目 III)에다 생산자에게 지불된 直接支拂額이나 補助金을 더하여 구함(項目 V = 項目 III + 項目 IV. 단, 項目 IV는 項目 VI-B와 동일액이 됨).
- VI 項目은 정부가 개입함에 따라 기인된 國內農業補助部分을 계

산해 내는 과정임. 즉, 政府의 市場介入手段을 다음과 같이 분류함.

- A. 市場價格支持
 - B. 直接支援
 - C. 投入財費用을 절감시키는 補助金
 - D. 一般 서어비스
 - E. EC의 경우 會員國政府 그밖의 국가의 경우 地方政府 (Subnational)에 의해 제공된 보조금
 - F. 租稅減免 등 기타 補助金 또는 移轉額
- 이들 6개조치들에 대한 합이 곧 補助金相當額 혹은 總 補助金인데 이는 VII 項目의 總 補助額이 됨. VIII 項目은 生産單位當 總 補助額, IX 項目은 조정된 生産額에 대한 總 補助金比率임.

市場價格支持(項目 VI-A)

- 國際市場價格 수준 이상으로 國內市場價格支持를 위한 구체적인 시책이 있는 품목의 경우만 해당됨.
- 市場價格支持에 의한 補助金은 政府收買價格과 國內都賣價格(또는 國際價格)과의 차이를 기초로 구해짐.
- 이렇게 구한 該當品目の 價格差異에 該當政策이 適用되는 量(예, 收買量)을 곱하여 補助金 相當額으로 계산함.

直接支拂(項目 VI-B)

- 生産者에게 지불된 直接支拂額과 관련된 자료는 政府財政計定(豫算, 決算)이나 關聯政府機構의 報告書에서 얻을 수 있음. 差額補償, 災害補償 등은 대개의 경우 品目水準(Commodity Specific)이며, 따라서 즉시 구분할 수가 있음.
- 그러나 補助政策(措置)이 品目基準이 아니거나 統計資料가 품목별로 구분이 안된 경우에는 전체 生産額에서 해당품목의 生産額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豫算額을 품목별로 할당하여 계산함.

生産投資材 補助(項目 VI-C)

- 生産投資材 費用節減을 위해 시행되는 諸般 補助事業(예: 肥料 購入에 대한 直接補助 및 農機械 購入資金 低利融資 등)...
- 租稅減免 또는 低利融資 및 減稅(특히 燃料 및 油類) 그리고 作物保險에 있어서의 特惠 등으로 인한 政府收入減少도 본 항목에 포함.
- 이 경우 利差, 市場價格과의 差, 一般保險에서의 特惠 등과 비교하여 PSE 계산.

一般 Service(項目 VI-D)

- 본 항목에는 대개 農業 및 農村對象의 公共的 受惠를 목적으로 하는
 - － 研究, 指導, 教育, 訓練, 檢査
 - － 防除事業
 - － 農業下部構造改善
 - － 流通補助
 등과 같은 정책이 그 대상에 포함됨.
- 설령 特定品目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라 해도 그것이 일반 Service의 성격을 지닌 것은 본 항목에 포함됨.

地方政府로부터의 移轉(項目 VI-E)

- 이 항목은 원래 위에서 언급한 項目 VI-A-D에 포함되어야 하나 본 항목을 설정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地方政府로부터의 補助나 移轉을 산출해 냄.
- 減縮 또는 許容補助事業으로 與否 표시

其他(項目 VI-F)

-F)

- 農業分野와 관련된 租稅減稅 惠澤 내지 移轉 등이 포함됨.
- 租稅減免의 경우 이로 인한 政府輸入減少가 PSE 계산의 기초가 됨.

○ 減縮 또는 許容補助事業 與否 표시.

項目 VII~IX

○ 항목 VII부터 IX는 표 4-2에 표시된 演算結果이며 항목 VII의 총 PSE는 항목 VI의 A부터 F까지의 합임.

〈計測이 不可能한 경우〉

○ 補助施策이나 사업의 적용을 받고 있는 품목가운데서 자료의 미비 등으로 PSE 계측이 불가능할 경우 관련 品目別 補助施策이나 事業 및 補助額을 減縮對象과 許容對象으로 구분 표시.

(1) PSE 計算 結果

앞에서 선정된 4個 곡물과 5개 축산물에 대한 PSE는 항목별로 위에 제시된 절차를 거쳐 계산되었으며 그 결과는〈表4-3〉, 〈表4-4〉와 같다. CL에 표시된 보조금 수준이 限界値(Ceiling)로 양허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PSE는 가능한 한 높게 계산되도록 하였다. PSE 계산에 있어 수치의 융통성 있는 부분은 VI항 A의 市場價格 지지 부분으로 國內價格과 國際價格의 적용에 있어 상당한 신축성 또는 자의성이 개입될 수 있다. 기타 항목들은 모두 실행예산 또는 실질 보조금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 곡물류의 경우 Percentage PSE가 1988년도에 쌀 86.7, 보리 82.1, 콩 81.9, 옥수수 77.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국내보조가 生産物 價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나 정부재정에 의한 지원이나 기타 기관에 의한 실질적인 보조는 미미하여 대부분이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로 인한 시장가격 지지 부분이다. 축산물의 경우 Percentage PSE가 가장 높은 것은 쇠고기로 83.3이고 다음이 우유 및 유제품으로 79.5이다. 쇠고기와 우유도 곡물류와 같이 대부분의 PSE가 國內價格과 국제가격차이로 인한 것이며 국내외 가격차가 크지 않은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의 Percentage PSE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표4-4참조). 韓國의 경우 PSE에 나타난 국내보조는 대부분 國境措置로 인한 보조임이 특색이다.

표4-3 食糧作物의 PSE, 1988

區 分	單 位	쌀	보 리	콩	옥수수
I. Level of production	1,000톤	6,053	781	230	127
II. Producer price	원/kg	1,039	450	1,027	344
III. Value of production (I × II)	(百萬원)	6,289,067	349,888	245,453	43,688
IV. Direct payments	(百萬원)	0	0	0	0
V. Adjusted value of production (III+IV)	(百萬원)	6,289,067	349,888	245,453	43,688
VI. POLICY TRANSFERS					
A. MARKET PRICE SUPPORT ('88)	(百萬원)	4,757,658	270,226	197,414	33,274
B. DIRECT PAYMENTS					
1. Deficiency payments	(百萬원)	0	0	0	0
2. Levies, fees (-)	(百萬원)	0	0	0	0
3. Other	(百萬원)	0	0	0	0
C. REDUCTION OF INPUT COSTS					
1. Fertilizer	(百萬원)	6,250	338	245	31
2. Other	(百萬원)	0	0	0	0
D. GENERAL SERVICES					
1. Research, advisory, training	(百萬원)	4,391	234	146	18
2. Disaster restoration	(百萬원)	11,073	267	194	25
3. Structural adjustment	(百萬원)	413,397	1,105	556	418
4. Marketing and promotion	(百萬원)	243,780	14,550	2,062	219
5. Other	(百萬원)	13,210	435	313	40
E. SUB NATIONAL	(百萬원)	(N/A)	(N/A)	(N/A)	(N/A)
F. OTHER		(N/A)	(N/A)	(N/A)	(N/A)
1. Tax concessions	(百萬원)				
2. Other	(百萬원)				
VII. Total PSE (VI)	(百萬원)	5,449,759	287,155	200,930	33,991
VIII. Unit PSE (VII ÷ I)	원/ton	900,340	367,676	840,711	267,646
IX. Percentage PSE (VII ÷ V)	%	86.7	82.1	81.9	77.8

표 4-4 畜産物の PSE, 1988

區 分	單 位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鷄 卵	牛 乳
I. Level of production	1,000톤	130	432	149	397	122
II. Producer price	원/kg	5,500	2,427	1,489	691	4,300
III. Value of Production (I × II)	(百萬元)	714,870	1049,827	242,580	274,360	525,504
IV. Direct payments	(百萬元)	0	0	0	0	0
V. Adjusted value of production (III+IV)	(百萬元)	714,879	1049,827	242,580	274,360	525,504
VI. POLICY TRANSFERS						
A. MARKET PRICE SUPPORT('88)	(百萬元)	499,200	447,203	93,865	62,348	390,461
B. DIRECT PAYMENTS						
1. Deficiency payments	(百萬元)	0	0	0	0	0
2. Levies, fees (-)	(百萬元)	0	0	0	0	.
3. Other	(百萬元)	0	0	0	0	0
C. REDUCTION OF INPUT COSTS						
1. Fertilizer	(百萬元)	0	0	0	0	0
2. Other	(百萬元)	0	0	0	0	
D. GENERAL SERVICES						
1. Research, advisory, training	(百萬元)	7,559	2	547	588	4,376
2. Disaster restoration	(百萬元)	32	47	11	12	24
3. Structural adjustment	(百萬元)	28,552	2	0	0	5,953
4. Marketing and promotion	(百萬元)	59,255	17,565	3,752	4,525	8,778
5. Other	(百萬元)	835	1,099	255	236	6,193
E. SUB NATIONAL	(百萬元)					
F. OTHER						
1. Tax concessions	(百萬元)	(N/A)	(N/A)	(N/A)	(N/A)	(N/A)
2. Other	(百萬元)	(N/A)	(N/A)	(N/A)	(N/A)	(N/A)
VII. Total PSE (VI)	(百萬元)	595,403	470,167	93,430	67,709	417,785
VIII. Unit PSE (VII ÷ I)	원/ton	4,580,023	1,087,096	660,639	170,498	3,418,583
IX. Percentage PSE (VII ÷ V)	%	83.3	44.8	38.5	24.7	79.5

(2) 國內補助에 대한 Country List 작성

표 4-2의 양식에 따라 작성된 품목별 PSE는 Country List의 AMS 계측가능 품목에 대한 국내보조 현황표 양식에 따라 Total PSE는 AMS 限界値欄에 기입되고 Unit PSE는 Unit AMS로 기입된다. 또한 표 4-2에 있어서 항목 VI-A부터 VI-F까지 세분된 國內補助政策 內容 및 金額은 Country List의 국내보조 현황표에 감축대상정책과 허용대상정책으로 재분류되어 기록된다. Country List에 기록된 韓國의 國內補助 現況을 보면 쌀의 경우 總 國內補助額이 1988년에 약 5조 450억 규모이며 이 가운데 87%가 국내외 가격차로 발생하는 시장가격 지지 부분이다. 쌀은 한국이 주장하는 NTC 목적달성에 필수적인 품목으로 모든 정책을 허용대상으로 분류하여 쌀에 관련된 어떠한 정책도 감축대상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보리에 대한 총 국내보조액은 2,870억이며 국내외 가격차에 의한 보호인 시장가격지지 부분이 총 보조금액의 94%인 2,702억원이다. 콩과 옥수수에 대한 국내 보조금은 각각 2,009억원과 340억원이며 이들에 대한 국내보조금도 대부분이 국내가격과 國際價格 差에 의한 보호이다. 축산물의 경우 쇠고기에 대한 총 국내보조는 5,954억원, 우유에 대한 총 국내보조는 4,178억원으로 이들 품목에 대한 국내보조 역시 국내외 가격차에 의한 보호이다. 돼지고기와 닭고기에 대한 총 국내보조는 각각 4,702억원과 984억원이다. 이들 품목도 한국이 주장하는 NTC 관련 품목으로 減縮對象政策과 이에 대한 감축대상 보조액은 없는 것으로 제출되었다. 한국이 국내보조를 감축하겠다고 제출한 유일한 품목은 계란으로 이에 대한 총 국내보조는 677억원이며 시장가격지지 부분인 623억원에 대해 앞으로 점진적인 감축이 허용될수 있으나 그 규모와 시기는 UR협상 타결결과에 따르게 된다(표4-6 참조).

2) 한국의 國境措置에 대한 CL

모든 非關稅措置를 關稅相當額(TE)으로 전환시키는 “關稅化”에 대해 한국은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수입국의 특수한 입장이 관세화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NTC 관련 품목의 관세화 불허, 각국의 農業發展 水準에 따른 관세상당액 감축 이행기간의 신축성 부여 등을 주장하여 왔으며 이것이 關稅化에 대한 한국의 기본 입장임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은 현행 GATT의 數量規制 許容 條項인 11조 2항C의 적절한 개선을 통해 수입자유화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할 것도 주장하였다. 한국은 이러한 기본입장을 CL에 반영하여 NTC 관련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상당액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수입국의 特殊한 立場이나 농업수준에 따른 이행기간의 신축성 부여 등은 감축계획안이라고 할 수 있는 Offer List에서 밝히고 있다. 관세상당액 계산 방식은 議長草案이 제시한 가격차 방식에 따랐으며 구체적인 계산기준은 표 4-5와 같다.

표 4-5 관세상당액(TE) 산출기준

기	준	비	고
① 最近의 資料利用 (1986~88 평균)			
② HS 4단위(주요品目) 및 HS 6단위(其他品目) 基準		· 가능한 資料 內에서 HS 6단위를 기준	
③ 加工品은 原料의 TE에 原料의 混合比率을 곱해서 決定		· 混合比率은 重量基準	
④ 品質·品種差는 적절한 係數를 利用하여 TE에 反映		· 計算의 實例를 찾기 어려움(대부분 무시되고 있음)	
⑤ 國際價格은 CIF 기준		· 隣接國의 CIF價格 援用可能	
		· FOB의 CIF化(運送, 保險料 등)	
⑥ 國際價格은 當該年度 平均換率을 適用 自國貨幣로 換算		· 價格 算出年度와 一貫性 維持	
⑦ 國內價格은 年平均 市場價格(代表價格)		· 都賣價格(都賣價格이 없는 경우는 小賣價格)	
⑧ 從量 또는 從價稅로 表示		· 兩者 모두 計算	

표4-6 계산가능한 품목에 대한 國內補助金 現況

품 목	國內補助 (AMS) 限 界 值	減縮對象 國內 補助金	許容對象政策 (AMS 한계치 계 산에서는 포함되었으나 감축대 상에서 제외된 정책)
쌀	○ 총 AMS : 5,449,759 백만원 단위당 AMS : 900,340 원/톤	○ 없 음	1. 일반서비스 (연구, 지도, 훈 련, 검사, 재해복구, 구조조 정, 유통 및 판매촉진, 기타) 2. 시장가격지지 3. 투입재 보조
보 리	○ 총 AMS : 287,155 백만원 단위당 AMS : 367,676 원/톤	○ 없 음	○ 쌀과 동일
콩	○ 총 AMS : 200,930 백만원 단위당 AMS : 840,711 원/톤	○ 없 음	○ 쌀과 동일
옥수수	○ 총 AMS : 33,991 백만원 단위당 AMS : 267,646 원/톤	○ 없 음	○ 쌀과 동일
쇠고기	○ 총 AMS : 595,403 백만원 단위당 AMS : 4,580,032 원/톤	○ 없 음	1. 일반서비스 (연구, 지도, 훈 련, 검사, 재해복구, 구조조 정, 유통 및 판매촉진, 기타) 2. 시장가격지지
돼 지	○ 총 AMS : 470,167 백만원 단위당 AMS : 1,087,096 원/톤	○ 없 음	○ 쇠고기와 동일
고 기			
가금육	○ 총 AMS : 98,430 백만원 단위당 AMS : 60,639 원/톤	○ 없 음	○ 쇠고기와 동일
계 란	○ 총 AMS : 67,709 백만원 단위당 AMS : 170,498 원/톤	○ 시장가 격지지 : 62,348 백 만원	○ 일반서비스 (") ○ 쇠고기와 동일
우 유	○ 총 AMS : 417,785 백만원 단위당 AMS : 3,418,583 원/톤	○ 없 음	

관세상당액 산출대상품목은 非關稅措置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모든 품목이며 한국의 경우 농축산물의 輸入制限 品目數는 HS 10단위기준 330개이다. 한국은 또한 UR협상 개시이후 현재까지 많은 농축산물에 대한 貿易 自由化를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수입자유화 실적을 협상에 반영시키기 위해 지난 1986년부터 1990년까지 수입자유화된 HS 10단위 기준 174개에 대한 관세상당액을 산출하여 CL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한국은 HS 10단위 기준으로 총 504개 품목에 대한 관세상당액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국이 협상에서 일관되게 주장해온 NTC관련 품목의 關稅化不許 方針과 자료가 미비한 품목을 제외하면 관세상당액 제시 품목은 HS 10단위 기준으로 총 325개이다(표4-7). 의장초안에 따라 HS 4~6단위로 계산하면 품목수는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表 4-7 TE 算出對象品目數¹⁾ (HS 10단위 기준)

區 分	輸入制限 品目 (A)	86~90開放 品目 (B)	計 ((C=A+B)	除外品目 (D)	TE算出對象 品目 (C-D)
農 産 物 ²⁾	230	131	361	116	245
畜 産 物	100	43	143	63	80
計	330	174	504	179	325

註 1) 91년도 輸入自由化 豫示品目 82개중 포함된 숫자임.

2) 林産物중 關稅率表上 1-24類에 해당하는 품목포함.

관세상당액을 계산하여야 할 품목이 결정되면 이들 품목에 대한 가격자료가 수집되어야 한다. 관세상당액 산출에 있어 가격기준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의장초안에 의하면 국내가격은 해당국의 해당상품에 대한 대표가격 즉, 연평균 시장가격을 사용하고 국제가격은 수입국의 CIF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국내가격은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는 국제가격의 형성이 도매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한국의 TE계산 결과는 表 4-8과 같다.

表4-8 品目別 關稅相當值(TE) 算出內譯

品 目	關稅相當 值 (TE)	國內價格 ('86~'88)	國際價格 ('86~'88)	品目係數	輸 入 量 ('86~'88)	輸入比率
	%	원/kg	원/kg		천톤	%
쌀	505	1,552	258	1.58	0.4	0.0
맥 주 맥	439	713	132	1.50	0.0	0.0
보 리	276	387	103	1.00	1.1	0.0
옥 수 수	338	357	83	1.00	4,575.0	97.0
대 두 두	457	1,069	193	1.00	1,071.0	85.0
땅 콩	300	2,267	519	1.00	4.9	18.9
참 깨	1,203	6,335	556	1.00	5.8	11.0
대 두 유	118	952	421	1.00	0.0	0.0
설탕(자당)	207	598	195	1.00	0.0	0.0
수삼과 홍삼	990	401,577	37,440	1.00	0.0	0.0
백 삼	189	68,840	39,829	1.00	0.0	0.0
바 나 나	779	4,216	479	1.00	8.7	44.0
과 인 애플	251	1,450	416	1.00	0.0	0.0
견 사	112	42,614	20,757	1.00	0.0	0.0
생 사	77	39,866	22,544	1.00	2.3	53.0
누에 고 치	64	5,551	3,380	1.00	1.2	20.0
쇠 고 기	213	4,053	1,517	1.00	4.7	3.2
돼 지 고 기	26	1,864	1,482	1.00	0.0	0.0
닭 고 기	41	1,489	1,053	1.00	0.0	0.0
탈 지 분 유	433	4,300	844	1.00	0.5	0.1
전 지 분 유	235	3,875	1,160	1.00	0.2	1.9
버 터	268	3,585	980	1.00	0.1	3.3
치 이 즈	529	7,000	1,100	1.00	0.1	5.0
감 자	115	310	148	1.00	0.0	0.0
양 파	113	378	181	1.00	0.0	0.0
마 늘	170	1,818	697	1.00	0.0	0.0
고 추	470	4,917	923	1.00	0.1	0.0
팔	510	1,573	262	1.00	15.8	31.3
고 구 마	301	348	90	1.00	0.0	0.0
오 렌 지	145	3,575	1,637	5.00	0.2	100.0
감 껍	105	715	358	1.00	7.6	0.0
포 도	93	2,837	1,471	1.00	0.0	0.0
사 과	108	944	456	1.00	0.0	0.0
배	147	881	359	1.00	0.0	0.0
복 송 아	49	696	470	1.00	0.0	0.0
단 감	57	1,691	1,097	1.00	0.0	0.0
계 란	20	769	654	1.00	0.0	0.0

표 4-8은 주요품목에 대한 관세상당액만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에 표시된 품목과 가까운 代替財나 이들을 원료로 하는 加工品의 경우는 이들 주요품목의 관세상당액이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가공식품의 경우 각 제품별로 관세상당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며 의장초안에서 밝힌 바와 같이 原料農産物의 함량을 기준으로 각 제품의 관세상당액을 계산하는 것도 제품별로 함량이 다르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 따라서 가공기술의 차이에 따른 가격차를 반영할 수 없는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료농산물의 관세상당액을 가공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2. Offer List 作成 및 提出

가. OL 작성에 따른 기본적인 고려사항

국별 농업보호 및 지원조치의 구체적 감축이행 약속인 Offer List는 향후 예상되는 쌍무협상의 실질적인 토대로서 고도의 전략적 판단 하에 작성되어야 할 것인 바 그동안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견지해오던 기본입장을 기초로 하되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NTC 반영문제로 농업의 非交易的 考慮事項을 우리나라의 Offer에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는 결국 NTC 대상품목의 범위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협상에서 NTC 目的達成을 위한 국내보조의 감축불가 및 NTC 대상품목의 관세화 불가입장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동 품목의 선정에 있어서는 국내적 농업여건 및 대외협상에 있어서의 설득력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둘째는 開途國 優待措置에 근거한 유예기간의 설정 문제를 들 수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1989年 10月 GATT의 BOP조항 졸업으로 그동안 수출입공고에 의하여 수입을 제한해왔던 농축산물 264개 品目

을 오는 1997년까지 단계적으로 수입자유화 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는 바 이를 감안한 유예기간 설정문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아울러 農業開途國으로서 취약한 農業生産基盤의 정비를 위하여 構造調整에 필요한 猶豫期間의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동 유예기간 설정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는 구체적인 減縮幅 및 履行期間의 설정문제이다. 현재 이와 관련한 각국의 입장을 보면 농산물 교역의 完全自由化를 주장하는 미국 및 케언즈 그룹이 10년간 75% 감축을, EC 및 일본, 스위스, 북구 그리고 우리나라 등이 10年間 20~30%정도의 감축수준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몇년간에 걸쳐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농업보조를 감축할 것인지의 결정은 협상타결에 따라 우리나라 농업이 입게될 피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넷째는 非關稅措置의 관세화에 따른 (초기)관세할당량 (initial tariff quota) 설정 및 이의 増量問題로 고율의 관세상당액 적용을 받지 않게 될 관세할당량 설정 및 증량 역시 생산자인 농민의 所得損失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바 Offer작성시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다.

기타 現行關稅率의 인하문제 및 농산물교역 자유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문제, 그리고 타수입국 Offer와의 형평성 유지문제 등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Offer의 전략적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나. 주요국의 Offer List 제출현황 및 내용검토

1990年 10月 31일 현재 GATT 사무국에 Offer List를 제출한 국가는 12개국으로 (케언즈 그룹을 개별국가로 칠 경우 23개국) 미국, 일본, 캐나다, 케언즈그룹(12개국), 그리고 북구의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및 스위스, 오스트리아, 남아공, 인도, 우리나라 등이다.

EC의 경우 그간에 계속된 회원국간의 의견조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의 반대로 Country List 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 제7차 農業 및 通商長官 合同會議에서 비로소 입장을 조정, EC의 농산물 협

상 단일안을 채택하였는 바 동 단일안은 EC 농업담당 집행위원의 제안을 토대로, 종전의 그들의 입장에 기초한 1986년부터 1996년까지의 10년간 국내보조 및 국경조치를 포함한 농업보조의 30%를 감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타 멕시코를 비롯한 페루, 코스타리카 등의食糧純輸入 開途國과 체코, 짐바브웨 등이 조만간 자국의 감축약속을 밝힌 Offer List를 GATT 사무국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제출된 각국의 Offer 내용의 특징을 검토해보면, 예상했던 바대로 미국을 위시한 케언즈 그룹이 가장 강력한 감축안을 제출하여 향후 10년간 국내보조 및 TE의 75% 감축을 제시하고 있으며 EC를 비롯한 일본, 북구, 우리나라 등이 20~30%의 감축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國境保護와 관련하여 미국과 케언즈 그룹은 TE감축에 따른 최종년도의 관세율 수준을 50% 이하로 제시하고 있어 고율의 관세상당액이 가지는 수입제한의 효과를 가능한 억제하고 있으며 관세할당량 역시 각각 국내 소비수준의 3%, 5% 이상을 표명함과 아울러 최종년도에 가서는 이의 철폐를 주장하고 있어 수출국들의 일방적 논리를 강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캐나다, 일본의 경우 현행 GATT 제 XI조 2항(C) 적용대상품목의 경우 관세화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아울러 國內生産統制效果를 적절히 반영한 국내보조의 감축을 제시하고 있다. 북구 및 스위스의 경우 NTC의 중요성을 강조, 일부품목에 대해 비관세조치의 계속적 유지를 표명하고 있다.

한편 국내 農業政策의 분류에 있어서 미국과 케언즈 그룹은 의장초안의 내용과 거의 유사한 기준을 적용, 허용대상정책의 범위를 가능한 제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국의 농업여건을 고려, 적절한 자의적 기준을 적용 신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開途國 優待措置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신축적인 이행기간 및 감축수준을 언급할 뿐 구체적인 우대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만이 1인당 GNP에 따른 差等減縮 履行方法을 제시하고 있다(표 4-9 참조).

表 4-9 주요국 Offer List 주요내용

국 별	국 내 보 조 (Internal Support)	국 경 보 호 (Border Protection)	수 출 보 조 (Export Subsidies)	기 타 (Others)
미 국	○ 정책분류: 議長草案의 기준에 충실히 따름 - 減縮對象政策: 시장가격 지지, 직접 지불, 생산 요소 및 유통비용 절감 등 - 許容對象政策: 議長草案과 동일 ○ 減縮方法 - AMS를 통한 감축 - 履行期間: 1991/92년부터 10년 - 減縮幅: 75% 이상 · 단 품목 별 특정 보조의 경우 30%감축 - 기준년도: 1986~88년 ○ AMS감축이행에 대한 國別計劃表 제출 ○ AMS계측불가 품목의 경우 상응한 감축	○ 모든 비관세 조치의 관세화: TE로의 전환후 양허 ○ TE감축방법: 공식인하 방법 - 이행기간: 1991/92년부터 10년 - 감축폭: 75% 이상 · 단 10년후 최종관세율 수준은 50% 미만이어야 함 - 기준년도: 1986~88년 ○ 關稅割當量(TQ)의 設定 - 이전에 비관세 조치下에 있었던 품목이나 수입량이 국내소비량의 3% 미만인 품목: 현소비수준의 3%이상 - 국내소비가 없거나 미미한 품목: 유사품목의 국내소비수준 이용 - 관세만 부과된 품목: 현수입수준 - TQ의 증량은	○ 1991/92년부터 10년간 90%이상 감축 - 단 가공농산물에 지원된 수출 보조금의 경우 6년 이내 철폐	○ 개도국 우대: 1인당 GNP를 기준으로 감축이행기간에 차등 - 1인당 GNP 500 \$ 이하; 15년간 75% 감축 - 1인당 GNP 501~2,500 \$; 12년간 75% 감축 - 1인당 GNP 2,500 \$ 이상; 선진국과 동일

국 별	국 내 보 조 (Internal Support)	국 경 보 호 (Border Protection)	수 출 보 조 (Export Subsidies)	기 타 (Others)
		10년간 75% 이상으로 하 되 최종년도 에는 TQ철폐 ○ 현행의 관세 인하는 TE감 축과 동일 ○ Special Safeguard 조치; 관세 화 경 과 기 간 에 한해 인정 - 가격기준 · 수입가격이 최근 3개년 평균수입가 격의 75% 이 하로 하락하 고, 국내생산 이 없었을 경우 국내외 가 격 차 의 50%까지 관 세증액 허용 · 해당산품에 수출보조금 이 지급된 경 우 적용불가 - 물량기준 · 전년도 수입 량의 120%를 초과한 경우 당해년도에 한해 이행초 기년도의 관 세수준 또는 200%수준의 관세증액 허 용 · 수출보조금 에 의한 경 우 상계관세 부과가능		

국 별	국 내 보 조 (Internal Support)	국 경 보 호 (Border Protection)	수 출 보 조 (Export Subsidies)	기 타 (Others)
		- 위의 2가지 적용방법 동 시사용불가		
케언즈그 룹(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콜 롬비아, 우루과 이, 말레 이지아, 인도네시 아, 태국, 필리핀, 헝가리등 12개국)	○ 정책분류: 미 국안과 유사 ○ 減縮方法 - AMS를 통한 감축 - 履 行 期 間 : 1991/92年부 터 10年 - 減縮幅: 75% 이상 - 基 準 年 度 : 1986~88年 · 단 1995/96 年 세계시장 가격 재평가 ○ 국내 inflation 율이 OECD 국가의 평균 inflation율을 상회하는 경 우 deflator 적용가능 ○ 該當品目 또 는 品目群의 특정년도 지 원수준이 생 산액의 5%미 만일 경우 次 年度 감축이 행 불필요 ○ AMS계측 불 가품목의 경 우 생산자 가 격 지지 및 정 부 예산지출 의 축소를 통 하여 75%감축	○ 모든 비관세 조치의 관세 화: TE로 전 환후 양허 ○ TE減縮方法 - 이 행 기 간 : 1991/92年부 터 10年 - 감축폭: 75% 이상 · 단 최종관세 율 수준은 50%이하 ○ TQ의 설정 - 과거 수입이 없거나 미미 한 품목; 현 소비수준의 5% 이상 (저 세율 내지 O 세율 적용) - 관세만 부과 되던 품목: 현수입수준 보장(1988年 9月 기준의 세율적용) - TQ의 증량은 10년간 75% 이상(최종년 도에는 TQ절 폐) ○ NTC는 관세 화 이행과정 에서 적절히 고려 ○ Special Safeguard 조치: 관세화	○ 1991/92年부터 10년간 90% 이상 감축	○ 國內補助關聯 開途國 優待 措置 - 이행기간: 15 年 부여가능 - 감축수준: 선 진국 감축 수 준의 절반이 상 - 개도국의 개 발목적 국내 정책은 AMS 계측 대상에 서 제외 ○ 국경보호관련 개도국 우대 조치 - 이행기간: 15 年부여 - 감축수준: 선 진국 감축수 준의 45%이 상 · 단 특정품목 별 감축폭은 22.5%이상 ○ 최저 개도국 에서는 동개 혁조치의 의 무면제

국 별	국 내 보 조 (Internal Support)	국 경 보 호 (Border Protection)	수 출 보 조 (Export Subsidies)	기 타 (Others)
	○ AMS감축이행에 대한 국별 계획표 제출	- 경과기간에 한해 인정 - 물량기준 · 전년수입수준의 15%를 초과하고 수입가격이 과거 평균수입가격의 70% 이하로 하락시 발동. - 경과기간이후 동조치는 개정될 GATT 24조에 따름		
캐나다	○ 政策分類 - 허용대상 정책 · 작물보험, 재해구호, 농업신용 (agricultural credit), 환경 및 토양 보존, 지역 개발 등 농업부문 일반에 해당되는 지원조치 ·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조치 (farm income safety nets) · OECD정책 분류상 일반 service에 해당하는 지원 조치 ○ 減縮方法 - AMS를 통한	○ 모든 비관세 조치의 관세화: TE로 전환 후 양허 (단 GATT 제 11조 적용대상 품목은제외) ○ TE감축방법 - 이행기간: 1991/92년부터 10년 - 감축폭: 50% (단 최종년도의 관세율수준은 20%이하) - 필요시 이행기간에 대한 협상용의 ○ TQ의 설정: 구체적 방법 미제시 ○ 비관세조치下의 품目の 경우 현재의 수입수준에 대해서는 현행	○ 모든 輸出補助金の 10年内 完全철폐	

국 별	국내 보조 (Internal Support)	국경 보호 (Border Protection)	수출 보조 (Export Subsidies)	기 타 (Others)
	감축 - 이 행 기 간 : 1991/92년부터 10年 - 감축폭:50% ○ 단 AMS계측 시 국내생산 통제 효과를 적절히 고려	관세율을 적용하며 추가적인 수입량에 대해서는 고율의 TE를 적용 ○ 육류에 대해서 비관세 수입제한 조치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는 동조치를 철폐하는 대신 현행 GATT 19조를 활용 ○ 현행 GATT 11조2항(C)(i)은 존치하되 주석부분을 개정 ○ 관세인하:調和公式에 의하여 최대 38% 인하 - 공식: $R = 32 + \frac{D}{5}$ - 10年の 이행기간 후 모든 농산물 관세수준은 20%미만으로 양허		
일 본	○ 政策分類:자국의 판단하에 자의적 분류 - 감축대상정책 · 시장가격지 지 및 부족 불지급 ○ 감축방법	○ 1986년 이후 철폐한 수입쿼타를 Credit으로 제시 ○ 1992년에 철폐예정인 수입쿼타 제시 ○ 관세인하 - AMS를 통한	○ 언급없음	

국 별	국내 보조 (Internal Support)	국경 보호 (Border Protection)	수출 보조 (Export Subsidies)	기 타 (Others)
	- AMS를 통한 감축 - 이행 기간 : 1987년부터 10年 - 감축폭:30% - 기준년도 : 1986年 ○ 基礎食糧의 生産統制效果 및 수입비율을 적절히 고려 - 쌀의 경우 실제감축율; (목표감축율 - 기이행한 감축수준) × (1-생산통제 비율) - 밀, 보리, 설탕, 우유 및 유제품은 (목표감축율 - 기이행한 감축수준) × (1-수입비율) ○ 대두의 경우 감축에서 제외 ○ 설탕 및 우유 유제품은 단위 AMS를 이용하여 감축	- 감축약속을 하지 않은 품목 및 현재 수입제한되고 있지 않은 품목에 한해 R/O 방식에 의한 관세율 인하 용의 - 감축수준:동경라운드 수준 ○ GATT 제11조 2항 (C) (i)에 근거하여 수입 제한되던 품목에 대하여서는 국내생산 및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현수준의 시장접근 유지 또는 개선을 고려		
스웨덴	○ 政策分類 - 허용대상정책은 감시의 대상이 되며 총보조는 거치 - 허용대상정책 특정지역 유지를 위한	○ 관세 이외의 국경보호조치의 관세화 및 TE양허 - 단 安定裝置 (Stabilizer element)에 의한 보완선	○ 모든 수출보조금의 完全撤廢 - 단 원료농산물에 대한 보조 및 식량원조를 위한 보조는 제외	○ 매년 국별 감축이행계획서 제출 ○ 개도국우대 - 감축기간 및 폭에 있어서 신축성 부여

국 별	국 내 보 조 (Internal Support)	국 경 보 호 (Border Protection)	수 출 보 조 (Export Subsidies)	기 타 (Others)
	환경보전 지 원조치 · 특정지역의 생산유지를 위한 지역지 원조치 (단 해당 지 역의 생산이 국내 총생산 의 일정비율 을 초과할 수 없음) ○ 減縮方法 - AMS를 통한 총체적 감축 - 이 행 기 간 : 1986년부터 10년 - 감축폭:30% - 기 준 년 도 : 1986年 · 단 이행기간 및 감축수준 에 관하여 협상할 용의 (40~50 % 감축용의) ○ AMS 계측불 가 품목의 경 우 대부분은 관세만이 유 일한 보호조 치인 바 이들 품목에 대해 서는 30%의 관세인하용의 ○ 세 계 적 인 Inflation율을 상 회하는 Inflation 의 경우 실질 적 감축을 위 해 조정가능	행 ○ TE감축 ;국내 보조의 감축에 상응 한 정도로의 감축 ○ TQ의 설정 ;국내 농업 정 책의 개혁 및 수출보조금의 철폐로 자동 적으로 보장 될 것임 ○ 관세인하 - 10년간 30% 감축		

국 별	국 내 보 조 (Internal Support)	국 경 보 호 (Border Protection)	수 출 보 조 (Export Subsidies)	기 타 (Others)
노르웨이	○ 減縮방법 - AMS를 통한 감축 - 이 행 기 간 : 1988년부터 10年 - 감축폭:20% - 기 준 년 도 : 1988年 ○ AMS 계측불가품목의 경우 우는 동이행 기간중 정부 재정 지출의 20%감축 ○ 낙 농 제 품 에 대한 생산통 제 조 치 는 Credit으로 인정	○ 다음의 몇 개 품목을 제외 하고 모든 品 目の 관세화 용의 - 우유 및 유제 품 (HS0401, 0402, 0405) - 사슴류의 고 기 (Reindeer) - 우유 및 유 제품의 경우 는 GATT 현 행제11조2항 (C)의 적용 대상품목임 - 사슴류의 고 기는 國內傳 統産業의 보 호 및 Lapp 지역주민의 생존을 위한 목적임. ○ 다음의 품목 에 관해서는 變動賦課金을 도입하되 세계 시장 예측력 제고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 - 산동물, 육 류제품, 계 란 및 감자 ○ TE의 감축 - 현행관세의 재 조정 및 보정 요소(Corrective Factor) 반영 조건 하에서 TE로 전환 - Milk products,	○ 1996년 까지 完全撤廢	

국 별	국 내 보 조 (Internal Support)	국 경 보 호 (Border Protection)	수 출 보 조 (Export Subsidies)	기 타 (Others)
		치즈, 곡물, 곡물종자 및 농축사료에 대 해 서 는 1991~96년 간 30%감축		
오스트리아	○ 減縮方法 - 이 행 기 간 : 1988년부터 10年 - 감축폭:20% - 기 준 년 도 : 1988年	○ 세계시장가격 및 환율의 변 동을 적절히 감안할 수 있 는 Corretive Factor의 도 입을 전제로 관세화 수용 ○ TE감축 - 향후 10년에 걸쳐 20%감 축 (Linear Cut) ○ 현행 관세인 하 - 평 균 적 으 로 19.65% 수 준으로 인하 ○ GATT 제11조 2항 (C) (i) 는 유지 - 생산통제 品 目に 동조항 이용할 의향 ○ 최소시장 접 근 - 국 내 소 비 의 1%미만 수 입되는 경 우:현수입수 준을 TQ로 보장. (최대 국 내 소 비 의 1%까지)	○ 이증가격제도 의 유지下에 총수출 보조 금을 국내보 조 감축에 따 라 삭감 - 기 준 년 도 : 1989年 - 환율변동고 려 - 개별 품목군 에 대한 감축 은 전체 감축 의 범위에 상 응(가격 또는 물량이용)	○ 衛生 및 植物 檢疫 - 국민의 건강 또는 중요한 자원 (토양, 공기, 수자 원, 산림자 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 ○ 개도국 우대 - 장기간의 이 행기간부여

국 별	국 내 보 조 (Internal Support)	국 경 보 호 (Border Protection)	수 출 보 조 (Export Subsidies)	기 타 (Others)
핀란드	○ 減縮方法 - 총 보 호 수 준 (감축 및 허용대상 포함)을 1986年 수준에서 동결 - 이 행 기 간 : 1986年 부터 10年 - 감 축 폭 : 20~30% - 기 준 년 도 : 1986年	○ 구체적 감축 약속은 추후 제시 ○ TE감축 - 1996年 까지 매년 5~10% 감축 (품목별 로 상이) - 기 준 년 도 : 1988~89 평균 ○ 일부 品目에 대해서는 GATT 제11조에 근거 수량제한 ○ 가 공 식 품 의 감축율은 공 산품에 준해 서 적용	○ 1996年 까지 60% 감축	○ NTC강조 - 허용대상 정책의 범위 및 감축폭 결정 시에 적절히 반영 ○ 개도국우대 - 장기간의 이행기간 허용
스위스	○ 국내보조의 80%이상이 감축대상보조임 ○ 감축방법 - AMS를 통한 감축 - 이 행 기 간 : 1991년부터 10年 - 감축폭: 20% (real term) ○ 생산통제 정책은 계속유지	○ 關稅化 - 특정 산 품 에 대한 수입관 세이외의 모든 형태의 부과금의 세율을 고정 - 단 재정적 성격의 부과금 및 공공의 건강을 위한 부과금 그리고 식량의 안정적인 재고관리를 위한 부과금 등은 여기서 제외 - 다음 品目에 대해 관세화 · 사 료 곡 물 , 적 포 도 주 , 계란, 가공	○ 1991년부터 10년간 수출보조를 위한 정부 재정지출의 30%로 감축 - 새로운 수출보조금의 도입금지	○ 각국 농업정책의 비교역적 기능의 중요성 강조 → GATT rule에 반영 ○ 현재의 자급율을 고려하여 감축수준을 결정 ○ 생태학적인 고려강조 ○ 국내입법과정을 고려한 충분한 이행기간 ○ 비관세조치대상품목 - 스위스 농업의 계속적 유지에 필수적인 品目

국 별	국내 보조 (Internal Support)	국경 보호 (Border Protection)	수출 보조 (Export Subsidies)	기 타 (Others)
		육, 말고기, 절화, 유지류, 냉동채소 이들 품목에 대한 TE 감축은 1991년부터 10년간 국내 보조의 감축과 비례하여 감축 ○ 현행 관세만 적용되던 품목의 경우 10년간 20%의 관세를 인하		- 비교역적 목적달성에 필수적 품목 - 이미 국내적으로 생산을 통제하고 있는 품목 ○ 총보조를 증가시키지 않는 생산과 간접적으로 연계된 정부 직접 보조의 증가는 가능하고 때로는 새로운 보조제도도 도입 가능 ○ 稅率据置前に - 세계시장 가격 및 환율변동을 감안한 변동요소 설정 - NTC 위한 일정량의 수량제한 인정 - 수입 급증시 safeguard 조항도입 - 최종 감축수준설정 등이 선행되어야 함

다. NTC 반영문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NTC 目的達成을 위한 國內補助는 감축대상에서 제외할 것과 NTC 대상품목의 경우 수량제한 등의 非關稅措置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관세화불가 立場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이와같은 NTC주장은 오히려 광범위한 수입규제조치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미국을 위시한 케언즈그룹 등 수출국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국인 EC조차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NTC를 주장하고 있는 국가들 간에도 NTC대상품목 및 정책목적이 약간씩 달라 협상결과에 이를 반영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무리한 NTC 반영요구는 오히려 우리나라에 불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NTC 대상품목의 선정에 있어서는 이와같은 대외적인 협상분위기를 적절히 감안하되 국내적으로 최후까지 우리나라가 지켜야 할 중요한 品目を 대상으로 하여 협상에서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것으로 생각된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시나리오별 NTC 대상품목은 아래와 같이 선정될 수 있을 것이다.

□ 選定基準

NTC 대상품목은 말그대로 농업이 지니고 있는 非交易的 機能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품목으로서 그 첫째는 식량안보적 측면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食糧安保次元에서 NTC 고려대상 品目으로서는 국민의 식생활관습상 必須基礎食品으로서 쌀 및 쇠고기등의 一部곡물과 축산물을 생각할수 있는데 특히 쌀은 식량안보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고용유지 및 환경보전, 지역경제의 발전 전통문화의 유지등 그야말로 포괄적으로 NTC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NTC 대상품목이라 보여진다.

기타 環境保全 및 雇傭維持,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등 NTC

선정 기준은 다양하나 위에서 언급한 쌀 및 쇠고기를 제외한 여타 品目은 이같은 NTC기능을 포괄적으로 수행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무역자유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국제협상에서 설득력있는 논리제공이 쉽지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NTC를 주장하는 이면에는 국내적으로 最小農業維持를 위한 국내농업보호라는 측면도 아울러 상존하고 있는바 이를 위해서는 또다른 다양한 選定基準이 제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수입개방에 따른 농가피해정도, 총농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資源의 遊休化程度, 생산농가수, 식부면적, 생산의 집중도 등을 적절히 감안하여 國內農業保護側面에서 NTC 대상품목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NTC 대상품목을 선정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농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쌀이 39%로 가장 높으며 돼지 7.3%, 한우 4.6%, 우유 및 유제품 4.3%, 고추 4.4%, 사과 2.9%, 마늘 2.6% 순으로 상위 15개 품목이 총농업생산액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표 4-10참조).

생산농가수 측면에서도 쌀이 160만 농가로 제일 크며, 대두 120만 농가, 참깨 100만 농가, 고추 90만농가, 보리, 팔, 마늘, 고구마 감자, 소 등이 50~70만 농가에 달하고 있으며, 식부면적 역시 쌀 1,300千ha, 보리 200千ha, 대두 150千ha, 참깨, 고추는 80~ 90千ha 등의 순이다. 한편 品目별 생산지역 집중도가 높게 나타난 품목은 밀감, 바나나, 파인애플, 유채 등으로 제주도에 집중되어 있으며 옥수수, 사과, 생강, 단감 등도 地域集中度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지역집중도는 代替作目的 유무에 따라서 地域經濟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므로 적절히 감안해야 할 것이다.

表4-10 主要 農産物の 生産現況과 農家經濟에서 차지하는 比重

品 目	87~88 平均 生産額(억원)	比 重 (%)	生産農家 (千戶)	植付面積 (千ha)	地域集中度 ¹
쌀	54,744	38.8	1,632	1,261	41.9
보리	2,972	2.1	510	200	55.8
밀	10	-	5	1	52.4
조	24	0.02	31	2	60.3
수수	17	0.01	37	1.5	51.3
수옥수수	343	3.24	139	24.2	67.6
메밀	84	0.06	49	10.9	43.6
대두	2,091	1.5	1,175	149.6	45.0
팥	488	0.35	640	31.6	43.3
녹두	178	0.13	190	5.6	50.0
감	1,525	1.1	503	21.7	49.4
고구마	1,671	1.2	700	25.1	51.0
고추	6,158	4.4	1,004	95.6	44.4
양파	3,675	2.67	586.2	43.1	44.0
생강	671	0.48	57	11.5	53.2
사과	380	0.27	13	4.5	70.1
배	4,035	2.9	61.8	41.1	67.4
송아	1,110	0.78	15.9	8.2	45.5
복숭아	723	0.51	37.0	13.7	48.2
포도	1,101	0.78	38.0	16.4	47.3
밀단	2,529	1.8	21.6	18.2	100.0
감자	507	0.36	21.0	10.4	57.8
유채	39	0.03	7.7	4.3	97.5
참깨	3,142	2.2	1,029.0	86.3	44.1
들깨	599	0.42	120.0	38.1	45.2
땅콩	619	0.44	97	19.1	42.9
호프	29	0.02	1.8	-	-
소	6,427	4.6	778	1,741	42.7
젖소	1,823	1.3	37	472	54.7
돼	10,327	7.3	282	4,567	45.1
닭	3,349	2.4	231	231	50.1
계	2,653	1.9	-	-	-
우	4,182	3.0	-	-	-
벌	741	0.53	49	49	43.5
누에고치	330	0.23	54	54	41.8
계	119,286	84.6	-	-	-
총농산물생산액	141,065	100.0	-	-	-

註1) 生産地域集中度는 $\sqrt{\sum_{i=1}^6 p_i^2}$ 이고 100에 가까울수록 生産地域이 集中되어 있고

$40.8 = \sqrt{6 \times \left(\frac{100}{6}\right)^2}$ 에 가까울수록 生産集中이 分散

資料: 農林水産部, 『作物統計』, 1988.

農林水産部, 『農林水産統計年報』, 1988

農林水産部, 『農林水産物交易 關聯資料(V)』, 1989. 1

이렇게 볼때 쌀, 보리, 대두, 고추, 마늘, 참깨, 쇠고기, 돼지고기, 우유 및 유제품 등은 우리나라 농업의 근간이 되는 品目일 뿐만 아니라 輸入開放에 따른 波及效果가 대단히 큰 品目으로 판단되며 기타 옥수수, 고구마, 감자, 양파, 감귤, 사과, 닭고기 등을 비롯한 일부품목도 지역경제나 농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NTC 대상품목의 선정에 있어서 개방에 따른 농가소득의 감소 역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수 있을 것이다. 물론 UR 농산물협상 타결에 따른 수입개방으로 농가가 입게될 所得損失額 산정은 현행 관세화 논의에 따라 TE 및 TQ의 설정 그리고 감축을 및 기간을 고려하여 계측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편의상 현행 관세율체계下에서 품목별 생산자 잉여감소액을 추정하였다.

특히 과실의 경우 作目轉換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廢棄豫想果樹의 미래기대수익을 고려하여 현재가치로 환산 계측하였다.

이같은 방법으로 현행 관세율 체계하에서 계측된 예상 農家被害額은 쌀의 경우 3조5천억으로 가장 높으며 고추 3천9백억, 마늘 3천6백억, 쇠고기 2천7백억, 참깨 2천3백억, 대두, 보리, 돼지고기, 우유 및 유제품 등이 1,100억~1,700억으로 나타났으며 과실류의 경우 감귤 및 사과가 900억 내외로 계측되었다(표 4-11 참조).

기타 NTC품목 선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상대국의 Request 대상품목 여부 및 資原 遊休化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수입자유화는 필연적으로 산업간의 자원재분배를 수반하는바, 일반적으로 農業部門에서의 토지, 노동 등의 자원은 그 이동이 원활치 못한 관계로 심각한 자원유탈화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이러한 자원유탈화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손실뿐만 아니라 농촌실업을 유발시켜 인구의 도시집중 및 농촌의 잠재실업증가라는 사회 정치적 측면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언급한 국내적 여건을 감안한 NTC품목의 경우 쌀 및 쇠고기 2개의 品目만 해도 관세화 대상에서 거론되는 HS4~6단

表4-11 農産物 輸入開放에 따른 農家被害額

品 目	供 給 彈性值	國內價格 (원/kg)	國際價格 (원/kg)	現在의 國 內生産量 (千M/T)	自由化時 國內生産 量(千M/T)	生産者剩 餘減少額 (억원)	現 關 稅 率 (%)
쌀	0.28	959	224	5,718	3,848	35,192	5
보리	1.82	750	92	515	12.36	1,735	5
콩	0.17	1,119	198	220	165.26	1,774	5
팥	0.17	1,325	263	34.64	27.51	330	30
밀	0.17	917	179	10.55	8.06	69	5
수수	0.43	838	81	1.92	0.72	10	5
옥수수	0.17	293	83	115	93.58	219	5
녹두	1.82	549	153	136	27.81	324	50
고구마	0.17	1,999	315	7.69	5.87	114	30
감	0.24	281	93	457	366.16	774	20
자	0.17	304	145	480	443.06	719	30
고기	0.55	5,136	3,086	142	123.96	2,726	30
닭고기	0.54	1,864	1,482	377	415	1,513	50
계란	0.33	1,489	1,053	140	153	639	31
전지분유	0.17	769	654	364	529	513	31
탈지분유	0.23	3,875	1,160	9.55	7.82	236	40
유	0.23	4,300	989	8.2	6.1	237	20
조제분유	0.18	2,133	815	2.23	1.99	28	40
치즈	0.23	3,133	1,436	19.1	17.24	309	40
버터	1.53	6,820	3,903	8.56	6.1	214	40
고추	1.42	3,300	2,019	3.6	2.89	42	40
양파	0.33	3,498	1,048	182	139.78	3,942	50
마늘	0.71	378	181	477	377	841	50
참깨	0.36	1,818	697	358	293	3,649	50
땅콩	0.43	7,398	557	47.97	18.23	2,264	40
생강	0.59	2,630	547	27	13.04	417	40
호박	0.3	928	721	38.14	37.35	78	20
호프	1.0	6,438	2,512	7.3	3.42	210	20
누에고치	1.5	11,054	6,400	0.6	0.44	24	40
바나나	0.3	5,884	3,380	7	5.96	162	2
파인애플	0.1	4,216	473	11.03	9.23	379	50
사과	0.1	1,450	416	4.3	3.95	43	50
배	0.14	944	456	39,536	37,792	897	50
도	0.14	881	359	8,495	7,929	300	50
송아	0.14	2,837	1,471	16,656	16,080	205	50
감	0.14	307	687	13,827	13,827	0	50
감	0.14	715	357	53,151	51,042	966	50
감	0.14	1,691	1,097	10,562	10,522	48	50

註1) 모든 資料는 1986~88년 3개년 平均値임.

2) 現行 關稅率下의 植付面積 減少는 生産量 減少에 準하여 계산한 것임.

3) 果實類의 경우 期待所得은 農村振興廳의 『農畜産物 標準所得資料』를 사용하였고 우리나라 果樹의 平均 栽培期間은 약 20년인바 現제 植付되어 있는 果樹의 平均樹齡은 약 10년임. 따라서 장래 收益發生期間을 10년이라고 가정하였음. 또한 割引率은 定期預金의 利率인 10%를 적용하였음.

위 기준으로 9~18개 품목인바 여타 몇개 품목을 추가한다해도 그 숫자는 70~80개로 늘어나 UR협상에서의 설득력 문제와 아울러 중요품목에 대한 NTC반영 가능성 조차 오히려 감소시킬 수 있는 역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2] 시나리오별 NTC품목 선정

위에서 언급한 對內外的 與件을 감안하여 시나리오별 NTC대상품목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 I. 농업생산액 중 해당품목의 생산액이 總農業生産額의 60%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下的 품목(61.14%)
 - 쌀, 보리, 콩, 옥수수, 고추, 마늘, 쇠고기, 우유 및 유제품(HS 4단위기준 28개 품목)
- II. 농업생산액중 해당품목의 생산액이 총농업생산액의 50%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하의 품목(54.4%)
 - 쌀, 고추, 마늘, 쇠고기, 우유및 유제품(HS 4단위 기준 24개 품목)
- III. 농업생산액중 해당품목의 생산액이 총농업 생산액의 40%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하의 품목(44.5%)
 - 쌀, 쇠고기(HS 4단위 기준 9개 품목)

주1) ()안은 1987~89年 평균 총 농업생산액 비중임.

돼지고기, 닭고기 및 과실의 경우 어느정도의 보호 육성으로 國際競爭力 향상이 가능하여 향후 戰略輸出農産物이 될수 있을 것으로 보아 고율의 관세상당액 부과에 의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옥수수의 경우 수입비중이 매우높아 NTC 대상품목으로 선정하기 보다는 적절한 생산통제조치 下에 현행의 GATT 제11조2항(C)에근거 수입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경우에 따라서 대두도 가능).

참깨의 경우 국제경쟁력이 매우 낮아 보호에 의문이 제기되며 적절

한 補償對策 및 동식물 검역에 근거한 적절한 輸入管理體系를 통한 보호가 효율적으로 보이며 고추, 마늘, 양파 등의 조미채소도 경우에 따라서는 보다 중요한 쌀, 쇠고기, 우유 및 유제품을 확실히 지키기 위해 양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웃 중국으로부터 대량 수입이 우려되는 바, 현재 중국은 GATT 정식회원국이 아니므로 이같은 점은 충분히 활용 쌍무간 협상을 통해 적절한 보호대책이 수립될 수도 있다고 본다.

아울러 이들 조미채소류는 수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내 生産過剩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GATT 제11조 2항(C)를 이용한 輸入制限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라. BOP졸업 및 開途國 優待와 關稅化

우리나라는 지난 1989年 10月 GATT 제18조(b) (일명 開途國 優待條項)을 졸업하게 됨에 따라 그동안 國際收支赤字를 이유로 광범위한 輸入制限을 해왔던 264개 品目の 農畜産物을 전면 개방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다만 급작스러운 개방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1997년까지 2차에 걸쳐 단계적인 輸入自由化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최장 7년의 開放猶豫期間을 획득해 놓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UR농산물 협상에서는 모든 非關稅措置의 關稅化에 대부분의 국가가 원칙적인 합의를 본 상태이며 이에 따라 自國의 Offer를 제출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BOP조항을 졸업하면서 양해받은 7년간의 단계적 수입자유화 권리, 즉 品目에 따라서는 최장 7년간의 수입개방 유보 권리와 현행 關稅化간의 법적인 관계가 모호한 형편이다.

즉 BOP 졸업에 따라 양해받은 7년간의 猶豫期間이 그대로 기득권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BOP졸업과는 무관하게 전 品目を 관세화해야 하는 것인지 명확한 유권해석이 없는 실정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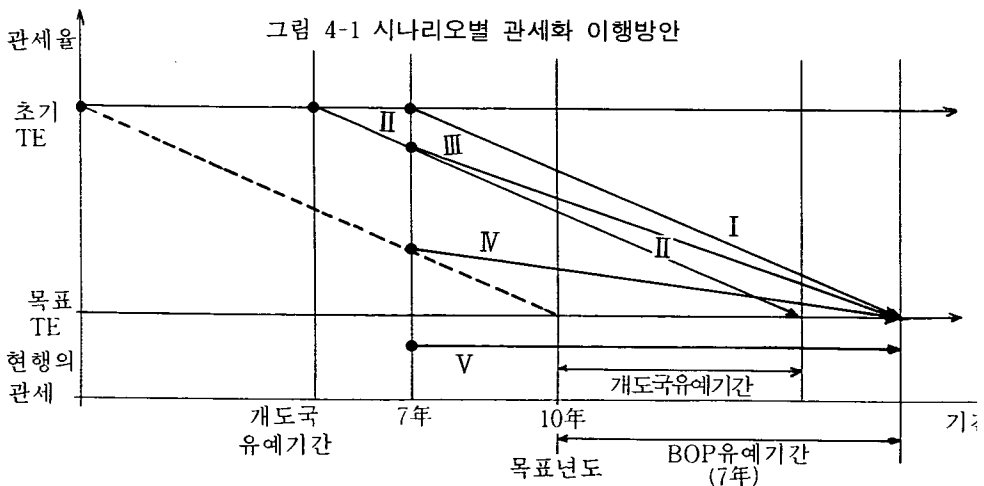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개도국 우대조치에 입각하여 장기간의 이행기간을 허용 받을 경우까지를 고려한다면 減縮期間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Offer 작성

은 매우 복잡한 내용을 갖게 된다.

물론 開途國 優待에 의한 감축유예기간이 주어지고, 그것도 7년이상으로 결정된다면 우리나라로서는 BOP줄업으로 획득한 유예기간을 고려할 필요도 없이 가장 유리한 경우가 될 것이나 현재 거론되고 있는 개도국 우대 논의는 장기간의 減縮履行期間 및 감축수준만을 언급하고 있어 유예기간의 획득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GATT 18조 (b) 항 졸업국으로서 BOP줄업시 얻은 최장 7년간의 수입자유화 留保權利는 엄연한 기득권인 바 일정한 감축 유예기간허용 주장은 가능할 것이다. 다만 그것이 7년보다 작을 경우 우리나라로서는 開途國 猶豫期間을 따를 것인지 BOP줄업에 의한 최장 7년간의 단계적 수입자유화 기득권을 이용할 것인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아울러 BOP줄업에 따를 경우 關稅化에 따른 고율의 關稅相當額 적용 여부 또한 논란의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는 開途國優待에 따른 유예기간이 BOP유예기간보다 작을 경우를 상정하여 예상되는 몇가지 시나리오별 關稅化 이행방안을 검토하였다<그림 4-1 참조>.



시나리오 I : BOP유예기간을 이용한 후 그때부터 합의될 기간동안의 TE감축

시나리오 II : 개도국 유예기간을 이용한 후 그때부터 합의될 기간동안의 TE감축

시나리오 III : 시나리오 I 을 따르되 TE감축은 시나리오 II에 근거하여 합의될 기간동안 감축

시나리오 IV : 시나리오 I 을 따르되 TE감축은 선진국 감축수준에 근거하여 합의될 기간동안 감축

시나리오 V : BOP유예기간을 이용하되 관세화에 따른 TE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시나리오 I 의 경우 BOP 기득권과 관세화에 따른 고율의 TE적용의 잇점을 모두 이용한 안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유리하나 수출국들의 강한 반발 및 대응논리 부족문제를 안고 있으며 시나리오 II는 개도국 유예기간후 TE를 감축하는 안으로 開發國 유예기간이 허용되는 대신 장기간의 이행기간만 허용될 경우는 더욱 세분화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시나리오 III은 I 과 II의 절충형으로 볼수 있으며 IV는 I 과 V의 절충형으로서, 최종 타결과정에서 거론될 수 있는 우리나라의 最終代案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시나리오 V는 선진 수출국들이 들고 나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응안으로서 BOP기득권 이용후 關稅化에 의한 TE적용을 할 수 없는 경우다.

마. 감축수준 결정

현재 거론되고 있는 감축방법은 미국과 케언즈그룹이 國內補助와 國境保護를 분리하여 각각 75% 감축을 주장하고 있으며 EC는 국내보조 및 국경보호 그리고 수출보조를 하나로 묶어 총체적으로 30% 감축을, 북구는 TE가 이미 국내보조에 계산되어 있으므로 국내보조 감축에 따

라 TE를 감축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일본은 品目에 따라서 단위 AMS 또는 Total AMS 감축과 수입비중 및 生産統制效果를 적절히 감안한 감축수준을 밝히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전반적인 농업보호형태는 앞서 Country List에서 본바와 같이 주로 국내의 가격차이에 의한 국경보호가 90%이상으로 실제 정부재정지출에 따른 農業保護水準은 10%미만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와같은 점을 고려하여 감축수준을 결정하되 특히 농업보호형태를 감안하여 國內補助의 감축과 TE감축간에는 다양한 감축폭을 상정, 검토분석하여 우리나라에 가장 유리한 방향에서의 감축수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減縮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표4-12, 4-13 참조).

표 4-12 방안Ⅰ. 국내보호, 국경조치
공히 30% 감축시

현행 보조체계	감축율	최종년도 보호수준	비고
국내보호 (10)	3%	7%	○ 현재 UR협 상에서 논의 되고 있는 최저수준의 감축율
국경보호 (90)	27%	63%	
총보호수준 (100)	30%	70%	

표 4-13 방안Ⅱ 국내보호 50%
국경보호 20% 감축시

현행 보조체계	감축율	최종년도 보호수준	비고
국내보호 (10)	5%	5%	○ 국내보호의 감축폭이 국 경보호 감축 보다 커 국내 반발 예상 ○ 그러나 총보 호수준에서는 방안Ⅰ보다 더욱 높음 ○ 협상에서 아 국의 입지를 강화하면서 실제 보호수 준을 높일 수 있음.
국경보호 (90)	18%	72%	
총보호수준 (100)	23%	77%	

즉, 위 <표4-12,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國內補助와 國境措置의 감축율을 동일하게 30% 감축할 경우(방안Ⅰ)와 각각 50%, 20%로 할

경우(방안Ⅱ)는 총보호수준에서 후자의 방안이 우리나라의 농업보호에 더욱 유리하다고 볼수 있다. 물론 국내보조의 감축에 따른 국내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으나 실제로 어느 방법이 생산자인 농민을 위한 것인가는 자명할 것이다.

바. 우리나라의 단계적 Offer(안)

제 1 段階

① 國內補助分野

- NTC 對象品目에 대한 國內補助는 減縮對象에서 제외
 - 실제 減縮對象品目は 아래와 같음
 - 穀物類: 옥수수
 - 畜産物: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 其他: 果實類 및 채소류(고추, 마늘 제외)
- 減縮方法: Total AMS 또는 Unit AMS
 - 品目間 伸縮性 確保가 가능한 品目群別 減縮
 - 減縮率: 最大 30%
 - 履行期間: 10년
 - 猶豫期間: 開途國 優特 및 제 7차 經濟社會開發 5個年計劃 (1992~96), 農漁村發展 特別法案에 근거 1996년까지 6년간의 猶豫期間 주장

② 國境保護分野

- NTC 對象品目は 關稅化對象에서 제외
 - 기타 輸入制限品目만 TE를 제시하되 품목별 중요도 및 輸入自由化 豫示計劃에 따라 1991년부터 1996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이행
- 減縮期間 및 幅: 10년간 最大 20%
- 初期 關稅割當量

- 輸入이 있었던 品目: 1986~88년 平均 輸入量
- 輸入이 없었던 品目: 1986~88년 平均 消費량의 1% 미만
- 단 輸出國의 利益만을 반영한 TQ의 増量은 不許
- 關稅는 동경라운드 수준으로 감축(단 1986년 기준)

제 2 段階

① 國內補助分野

- NTC 對象品目の 일부를 減縮對象에 포함(고추, 마늘)
- 減縮方法: 제1단계와 동일
 - 단, NTC 對象品目에서 제외된 고추, 마늘의 경우 1991년부터 7년간의 猶豫期間이후 1998년부터 減縮履行

② 國境保護分野

- NTC 對象品目の 일부를 關稅化對象에 포함(고추, 마늘)
 - 고추, 마늘은 1991년부터 TE전환후 7년간의 유예기간후 1998년부터 TE 감축
- 減縮期間 및 幅
 - 제1단계와 동일하나 제1단계시의 각년도 TE 감축대상품목의 범위를 확대함
(1992년 TE減縮對象品目中 일부를 1991년에 포함시키는 방법)
- 初期 關稅割當量 및 關稅: 제1단계와 동일

제 3 段階

① 國內補助分野

- NTC: 쌀 및 쇠고기를 제외한 전품목을 감축대상에 포함
(牛乳 및 乳製品, 보리, 콩을 추가로 감축대상에 포함)
- 減縮方法

- 履行期間:10년
- 減縮率:40%
- 猶豫期間
 - 牛乳 및 乳製品, 보리, 콩:4년(1995년부터 감축)
 - 고추, 마늘:3년(1994년부터 감축)
 - NTC 이외 기타 품목:2년(1993년부터 감축)

② 國境保護分野

- NTC:쌀 및 쇠고기를 제외한 전품목을 減縮對象에 포함
- 減縮方法
 - 履行期間:10년
 - 減縮率:30%
 - 猶豫期間:牛乳 및 乳製品, 보리, 콩:4년('95년부터 TE감축)
고추, 마늘:3년(1994년부터 TE감축)
 - 其他品目:2년의 猶豫期間
 - 제 2단계시의 각년도 TE 減縮對象品目の 범위를 다시 확대
시킴(제2단계시의 91~92 開放品目を 91년도에 포함하고
93~94 開放品目を 92년도에, 95~96년 開放品目を 93년도
에 포함)
- 初期 關稅割當量 및 關稅:제 1단계와 동일

제 4 段階

① 國內補助分野

- 모든 NTC 대상품목을 減縮對象에 포함
- 減縮方法
 - 履行期間:10년
 - 減縮率:40%(30%)
 - 猶豫期間:쌀:5년(1996년부터 減縮履行하되 減縮率은 30%)

나머지는 3단계와 동일

② 國境保護分野

- 쌀을 제외한 모든 NTC 對象品目を 關稅化
 - 쇠고기는 5年間 유예기간후 1996년부터 TE감축시작
- 減縮方法:3段階와 同一
 - 단, 쌀은 적정수준의 TQ를 보장
- 初期 關稅割當量:제1단계와 동일
- 關稅:제1段階와 同一

제 5 장

우리나라 Request List 작성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UR참가국이 의장초안에 따라 C/L 및 O/L을 제출하게 되면 곧바로 각 참가국들은 협상과정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과정속에서 각 참가국들은 상대국에게 自國의 이익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 輸入開放, 貿易障壁 완화 및 철폐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를 利害當事國間의 雙務協商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 협상에서 각 참가국들은 상대국에게 최소한으로 양보하고 최대한의 開放措置를 얻으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요 交易相對國에 대한 Request 작성은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상대국에 대한 치밀한 Request를 작성함으로써 상대국의 기존 貿易障壁을 제거시켜 자국의 농산물 수출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自國에 대한 무리한 수입개방요구를 못하게 함으로써 자국의 협상력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1. Request 작성제출의 기본방향

가. 기본목표

UR농산물협상에서 Request의 기본목표는 2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첫째, 우리나라에 대한 交易相對國의 수입개방압력을 저지시킬수 있고

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상대적인 협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고, 둘째, 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수출 유망품목에 대한 교역상대국의 保護措置 철폐 요구로 UR협상후에 우리나라 농산물의 수출 촉진기반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기본전략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輸入開放壓力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Request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며 give and take 방식이 될 수 있도록 양보하는 만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輸出有望品目 내지 戰略品目에 대한 주요국의 수입장벽을 제거할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하고 우리나라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 Request 대상국가·정책·품목

Request 제출대상국가는 모든 국가를 모두 할수는 없고 우리나라와 교역이 많은 국가 즉, 우리나라가 수입을 많이하고 우리나라에 대해 輸入開放 요구가 큰 국가가 될 것이고 우리나라가 농산물 수출을 많이하고 있거나 향후 수출전망이 큰 국가로 한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Request 제출을 고려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케언즈그룹(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EC국가, 일본, 기타국가(필요한 경우) 등이 될 것이다.

한편 Request의 기본목표에 맞추어 대상품목을 선정한 것이<表 5-1, 5-2>이다.

表 5-1 輸出有望品目

品 目	輸出對象國家	品 目	輸出對象國家
(1次産品)		(加工品)	
사과	東南亞, 美洲, EC	김치	日本, 美國, EC, 東南亞
배	東南亞, 美洲, EC	양송이통조림	美國, EC
밤	日本, 美國, 캐나다, 東南亞	果實 및 菜蔬	日本, 美國, EC
감귤	美洲, EC	통조림	
감	美洲, EC	장류	美國, 캐나다, 日本
딸기	日本	매실(엑기스)	日本
양파	홍콩, 東南亞	담배	日本, EC
무우, 배추, 果菜類	일본		
엽연초	日本, EC, 美國		
인삼	日本, 美國, EC, 홍콩, 東南亞		
돼지고기	日本		
닭고기	日本		
花卉類	일본, EC		

表 5-2 我國에 대해 開放要求가 크거나 향후 예상되는 品目

品 目	要 求 國 家
(1次産品)	
主要 穀物類	美國, 호주, 캐나다
(쌀, 보리, 콩, 밀, 옥수수등)	
쇠고기	美國, 호주, 뉴질랜드
돼지고기	캐나다, 뉴질랜드, 덴마크, 美國
닭고기	美國
배, 사과	뉴질랜드
오렌지	美國
잎담배	美國, 캐나다
(加工品)	
탈지粉乳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EC
담배	美國

2. Request 대상국가의 수입규제조치

가 미 국

미국의 주요 국경조치와 우리나라 수출 농산물에 수입규제내용은 <表 5-3, 5-4>와 같다.

表 5-3 미국의 國境措置

區 分	規 制 內 容
○ Waiver를 통한 輸入 규제	○ 酪農品(牛乳, 버터, 치즈) 땅콩, 설탕함유된 乳製品(초코렛 등), 설탕, 면화 ○ 이번 UR 협상에서 美國은 Waiver를 포기하고 모두 관세화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음.
○ 食肉輸入法에 의한 輸入規制	○ 쇠고기, 쇠고기 調製食品, 산양고기 등 ○ 輸入량의 일정수준(豫想 輸入량의 11%)초과시 수입규제 발동
○ 輸出自律規制 協定	○ 美國, 호주간 쇠고기 輸出自律規制(년간 303천톤)
○ 相計關稅 및 반덤핑 關稅	○ 1989년 7월 캐나다산 돼지고기에 대해 파운드당 3.6센트 부과
○ 加工度別 關稅隔差構造(Tariff escalation)	○ 原料 農產物보다 加工農產物에 高率關稅 賦課
○ 其 他	○ 動植物檢疫 ○ 食品 및 藥品, 화장품법(FDA):食品 및 飲料 Fair Packaging and Labelling Act에 의거한 표시요건 강화(商品內容, 重量, 包裝 및 流通人 등을 영문으로 표시 요구) ○ 規格 및 等級制:加工食品 뿐만 아니라 野菜, 과일 生鮮까지 擴大 ○ 綜合貿易法에 의한 輸入規制 強化 - 相計關稅 및 반덤핑조사 요건 강화(쇠고기 및 양고기 등의 畜產物, 꿀, 花卉類 등) - 原產地 證明 義務化

表 5-4 우리나라의 輸出 農産物에 대한 輸入規制(미국)

品 目	規 制 內 容	
○ 사 과, 배, 감 귤	共 通	· 植物檢疫 - 농무성의 動植物檢査局과 FDA의 규제 - 農藥殘留與否를 檢査하기 위해 美國植物檢疫所職員이 내한하여 수차례 檢査(所要經費 輸出國 負擔) * '89년 우리 나라 배에 대해 통관 거부 · 모든 과실에 대해 등급화 강화, 美農務省 檢査官 直接檢査(檢査遲滯로 EC 不滿) · 原產地證明 強化 · 品目別 現行關稅率 - 사과: 0세율 - 배: 12월1일~익년 5.31일 8.5% - 오렌지: 2.24/kg(그외기간 35%)
	오렌지	· 반덤핑 및 相計關稅(오렌지쥬스 및 냉동쥬스): '86 對 브라질 · 季節關稅(出荷期: 40%, 非出荷期 20%)
○ 밤, 인삼, 양송이 통조림	共 通	· 植物檢疫 · 原產地證明 · 품목별 現行 關稅率 - 밤: 0세율 - 인삼: 0세율 - 양송이통조림: 7.1/kg+10%
	양송이 통조림	· 原產地表記를 통조림 등의 외부에 영어로 양각토록 의무화
○ 김 치		· 植物檢疫 · 食品規格, 原產地 證明 · 現行 關稅率: 10%
○ 花卉類		· 植物檢疫 · 자국내 장미산업보호를 위한 조사요건강화 · 꽃꽂이 꽃에 대한 相計關稅 및 반덤핑관세부과 빈발 · 現行 關稅率(절화): 4~8%
○ 잎담배		· 植物檢疫 · kg당 종량세 79.14센트 · 기타 인위적 수입규제 없음

나. 케언즈그룹

케언즈그룹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의 주요 국경조치와 우리나라의 수출 농산물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는 <表 5-5, 5-6>과 같다.

表 5-5 케언즈 그룹의 主要 國境措置

國 家	規 制 內 容
공 통	○ 動植物 檢疫
호 주	○ 담배에 대한 混合規定 ○ 과일에 대한 混合規定을 위한 高率關稅 ○ 치즈에 대한 關稅quita 적용 ○ 부란병 예방을 이유로 사과, 배 輸入禁止 ○ 食品標準 및 첨가물의 규격
캐 나 다	○ 비자동 輸入承認(輸入許可) - 밀, 귀리, 대맥 ○ 總量quita제 - 가금류, 치즈와 커어드, 조란과 난황, 밀크와 크림(輸入承認並行) ○ 食肉輸入法에 의거 新鮮 혹은 冷蔵 쇠고기 및 송아지 고기 수입제한 ○ 新鮮과일 및 野菜에 대해 高率의 季節關稅 賦課 ○ Labelling 規定 : 加工과일 및 野菜
뉴 질 랜 드	○ 輸入獨占權 (굴, 바나나, 사과, 배) ○ 엄격한 衛生規定으로 家畜 花卉類 등이 수입제한 ○ 위생상의 이유로 돼지고기, 일부 산식물, 식탁용 포도, 핵과 등의 수입제한

表 5-6 우리나라의 輸出農産物에 대한 輸入規制措置(케언즈)

品 目	規 制 內 容
人蔘 및 人蔘加工品	○ 植物檢疫
양 송 이 통 조 립	○ 植物檢疫
醬 類	○ 植物檢疫

다. EC

EC의 주요 국경조치와 우리나라의 수출 농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내용은 <表5-7, 5-8>과 같다.

表 5-7 EC의 主要 國境措置

區 分	規 制 內 容
○ 變動賦課金 賦課	○ 穀物類, 올리브유, 설탕, 牛乳 및 乳製品(輸入 價格-경계가격) ○ 가금육, 돼지고기(곡물가격차+sluice gate price 7%) ○ 쇠고기 및 송아지고기(종가세+변동부과금) ○ 과일, 채소, 포도주(기본관세+상계과징금)
○ 輸出自律規制	○ 酪農製品 : 뉴질랜드 ○ 치 즈 : 캐나다와 호주
○ 個別國家에 의한 輸入 制限	○ 英 國 : 포괄적 輸入許可制度 ○ 프 랑 스 : 천연꿀, 고구마, 토마토 등 19개품목 ○ 西 獨 : 고구마 등 3개품목 ○ 이탈리아 : 바나나 ○ 포르투갈 : 대외무역국의 輸入許可書 발급
○ 其 他	○ 動植物檢疫 - 成長 호르몬 및 항생제를 투여한 육류 통관 금지

表 5-8 우리나라의 輸出農産物에 대한 輸入規制(EC)

品 目	規 制 內 容	
사과, 배, 감귤	共 通	○ 植物檢疫 ○ 표준화等級, I 등, II 등 등 3等級으로 규정 ○ 收買價格에 의한 域內價格支持 및 安定化(사과, 배, 감귤 등에 대해 실시) ○ 품목별 공동관세 : · 사과 : 10% 또는 100kg당 0.5ECU중 작은 것 · 배 : 13% 또는 100kg당 0.5ECU중 작은 것 · 감귤 : 4.1~4.30:15% 또는 부과금, 협정세율 13% 5.1~5.15:15% 또는 부과금, 협정세율 6% 5.15~10.15:15% 또는 부과금, 협정세율 6% ○ 參照價格을 기준으로 輸入價格이 이 수준을 하회할 경우 상계관세 부과 ○ 사과, 배, 감 등에 대해 不特定輸入制限
	프랑스	○ 감에 대해 輸入制限(不特定)
김치, 과일 및 菜蔬調製品	共 通	○ 植物檢疫 ○ 표준화 ○ 불특정 輸入制限 - 調製菜蔬(김치, 양송이, 채소통조림) - 과일 및 채소쥬스 - 乾燥菜蔬 ○ 품목별 共同關稅 - 김치통조림; 자동관세 24%, 협정 22%
	프랑스	○ 乾燥菜蔬;總量쿼타 ○ 과일쥬스, 채소쥬스, 총량쿼타
	이탈리아	○ 과일야채쥬스; 불특정 수입제한
	西 獨	○ 調製菜蔬; 불특정 수입제한
人蔘 및 人蔘加工品		○ 植物檢疫 ○ 現行關稅率: 무관세
양송이통조림	共 通	○ 植物檢疫 ○ 現行 關稅率: 23% ○ 關稅+輸入賦課金 ○ 不特定 輸入制限(기타조제채소)
	西 獨	○ 불특정 輸入制限 ○ 韓國에 대해 一方쿼타제 실시
	프랑스	○ 품질 및 규격기준 강화 - 化學要素의 첨가금지 - 加工에서 外部包裝까지의 規定遵守要求, 미이행 시 통관거부

品 目	規 制 內 容
葉 煙 草	○ 植物檢疫 ○ 現行關稅率 ○ 數量制限없음(關稅 GATT에 讓許) ○ 우리나라 GSP受惠(6% 關稅) 除外→23~30% 關稅 - 30% 관세 + 100kg 최고 70ECU에서 최소 29ECU
花 卉 類	○ 植物檢疫 ○ 品目別 現行 關稅率 - 절화 6월 1일~10월 31일 24% 11월 1일~익년 5월 31일 20%

라. 일 본

일본의 주요국경조치와 우리나라 수출농산물에 대한 수입규제내용은 <表5-9, 5-10>과 같다.

表 5-9 일본의 主要 國境措置

區 分	規 制 內 容
○ 키타제에 의한 輸入제한	○ '88년까지 22개품목 ○ 美國의 提訴에 따른 GATT Panel 권고에 따라 8개 품목 단계적 자유화, 4개품목 키타확대 * 밀크크림, 쌀, 땅콩, 꿀, 전분 등 수개품목의 殘存輸入制限
○ 彈力關稅	○ 옥수수; 關稅割當 ○ 오렌지, 자몽; 季節關稅 ○ 양파; 슬라이드 關稅
○ 國營貿易	○ 쌀, 소맥, 대맥, 쇠고기, 버터 등
○ 기 타	○ 動植物檢疫 ○ 『農林物質의 規格化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飲料, 食品 등에 공인규격(JAS) 부여 ○ 食品添加物에 대한 규정 ○ 까다로운 輸入申告

表 5-10 우리나라 輸出農産物에 대한 輸入規制(일본)

品 目	規 制 內 容
○ 돼지고기	○ 動物檢疫 ○ 殘留物質檢査(항생, 항균물); 후생성이 輸入物량의 100%를 검사 * '87년 우리나라 豚肉에서 항생제검출로 禁輸措置 ○ 關稅賦課; 差額關稅 * 5% 基本稅率 또는 差額關稅중 높은 것 - 枝肉의 差額關稅(x-CIF)엔/kg, (x; 基準輸入價格) ○ 돼지고기는 자유화되었고 豚肉製品은 1990. 1. 4에 개방 자유화후 關稅 10~70%
○ 사과, 배, 밤	○ 植物檢疫 ○ 現行 關稅率 — 사과 : 기본 20% — 배 : 기본 20%, 협정 8% — 밤 : 기본 20%, 잠정 5%
○ 무우, 배추, 과채류(조제포함)	○ 植物檢疫 ○ 品目別 現行 關稅率(무, 배추); 기본 10%, 잠정 5% ○ 양파; 슬라이드 關稅
○ 양송이 통조림	○ 植物檢疫 ○ 現行關稅率; 기본 35% (가당), 기타(25%)
○ 人 蔘	○ 植物檢疫 ○ 現行關稅率; 기본 10%, 잠정 5%
○ 김 치	○ 植物檢疫 ○ 規格要件 強化 ○ 現行關稅率; 9.6% ○ 방부제 함유 김치 通關不許

第 6 章

向後協商 展望 및 우리의 對應方案

1. 向後協商 展望

UR農産物協商的 妥結方向을 展望해 보기 위해서는 協商 主導力上 쌍벽을 이루고 있는 美國과 EC의 國內農業事情과 協商戰略을 分析해 볼 필요가 있다.

EC가 補助金現況表(CL)와 減縮計劃書(OL)를 提出時限을 훨씬 넘기고서도 內部意見의 不一致로 제출하지 못하여 年內的 협상타결은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였었다. EC는 1990년 10월 28일 회원국간에 頂上會談을 열고 CL, OL제출을 논의하였지만, 영국, 네덜란드만 찬성했을 뿐이며 그후 10월 30일 外務, 農務長官 연석회의는 또다른 會員國間的 異見差異로 무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난 11월 초에는 가까스로 농업보조금을 1986~1996年間 30% 감축하기로 한 OL을 확정하였으나 이에 반대하는 農民들의 반발이 드세어지고 있다.

EC는 애초에 協商에 임하면서 일부 農産물의 과잉생산과 農業赤字

의 문제가 심각해져 내부적으로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즉 외부의 힘을 빌려 자연스럽게 내부의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기본입장이었으나, 그들이 시행하고 있는 共同農業政策(Common Agricultural Policy)의 근간을 저해하는 輸入自由화와 輸出補助金の 감축에는 완강히 반대해 왔다. 특히 EC는 미국으로부터 비난의 표적이 되어온 변동수입부과금제도(Variable Levy System)는 條件附로 관세화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으나 輸出補助金を 급격하게 감축하자는 주장에는 난색을 표명하였던 것이다. EC의 공동농업정책은 生産費가 비싼 限界農까지 所得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높은 生産者價格을 지지해 주고 있다. 또한 輸入의 경우에는 域內價格과 世界市場價格差異만큼을 輸入賦課金を 징수하고 輸出을 해야 할 경우는 과잉생산된 농산물에 輸出補助金を 지급하므로써 유지되는 政策이다. 따라서 역내의 높은 가격지지로 인한 과잉생산과 財政赤字問題를 관세화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또는 조건부로 해결할 의향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EC는 農産物 輸出國家인 미국이나 케언즈그룹에 비하여 경쟁력이 없는 상태하에서 과잉 생산된 農産物 輸出補助金 지급이 금지되었을 경우 심각한 在庫累増과 재정적자의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EC역내에는 농업에 比較優位를 유지하고 있는 프랑스, 이태리등의 국가와 경쟁력이 없는 영국, 서독등의 국가가 혼재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프랑스, 이태리의 경우에는 수출보조금 감축문제에 민감하고 영국, 서독에게는 수입개방과 관세화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들 국가간의 이해가 어떻게 조정되느냐가 큰 관심사항이다. EC가 새로 제정한 보조금의 감축폭인 30%내에서 역내의 이해가 조정될 것으로 본다.

이에 반하여 미국이나 케언즈그룹은 輸出補助金 완전철폐에 따라 市場占有率이 높아지는 측면보다는 輸入國들의 非關稅障壁이 철폐되므로써 輸入需要가 크게 증대되어 많은 農産物을 수출할 수 있다는데 중점

을 두고 있다. 農産物 輸出國家의 입장에서 輸入國家의 비관세장벽으로 인하여 輸入物量이 인위적으로 제한되는 효과뿐만 아니라 價格傳導가 이루어지지 않아 세계적인 價格波動이 증폭된다고 비난하여 왔다.

현시점에서 美國과 EC의 의견조정은 어려워 보이지만 妥協이 이루어 진다면 美國은 EC가 주장하는 國內補助, 國境措置, 輸出補助등을 포함하여 총체적인 보호수준(AMS)를 줄여 나가자는 案(Global Approach)을 수용하는 대신 EC는 이와같은 AMS 減縮率에 있어서 양보를 하는 것으로 타결될 전망이다. 즉 총체적인 AMS를 감축해 나가되 감축율은 EC가 주장하는 선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모든 非關稅措置의 철폐와 國內補助金の 감축은 기정사실화되고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주장하는 NTC에 의한 例外措置는 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 반영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NTC를 주장하는 輸入國間에도 관심사항 및 保護目的에 차이가 있어 共同步調를 취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도미노현상을 우려하여 農産物 그룹 議長과 美國등이 예외 품목 설정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우리 農業에 미치는 影響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先進國에 비하여 國境保護措置로 인한 農業補助의 비중이 매우큰을 감안할 때 關稅化와 關稅相當額의 감축은 農家所得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主要 品目別로 農家補助를 政府財政에 의한 國內補助와 國境保護措置로 인한 農家補助로 구분하여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표 6-1 참조>.

표 6-1 주요품목별 보조유형 1988년기준,

단위:백만원

	쌀	보리	콩	옥수수	쇠고기	돼지고기	채소	과일
I. 市場價格 支 持	4,703,979	278,982	194,888	26,977	526,332	447,203	-	-
II. 投資財 補 助	14,577	2,307	2,120	73	919	1,731	7,572	2,613
III. 一 般 서 비 스	647,696	16,172	6,294	217	96,332	21,766	109,547	7,315
IV. 總補助 (AMS)	5,366,522	297,461	203,302	272,267	623,583	470700	117119	9928
V. 政府財政 補助 (II + III)	662,273	18,479	8,414	290	97,241	23,497	117,119	9928
VI (V/IV)	0.123	0.062	0.041	0.011	0.156	0.0499	-	-

資料:韓國農村經濟研究院, 「UR 協商資料」, 1990

위의 表에서와 같이 政府財政을 통한 農家補助는 2-7%에 해당되며 쌀과 돼지고기의 경우에만 각각 12%와 16%에 달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의 UR 農産物協商에서 우리나라는 政府補助減縮보다는 關稅相當額(TE)의 減縮이 國內農業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關稅相當額이 계속 감축되는 과정에서 그만큼 경쟁력 향상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國內 農産物 生産基盤維持가 어려울 것이며 또한 國際 農産物價格의 불안정이 그대로 국내에 전가되어 국내 農産物價格의 파동이 빈발할 우려가 있다.

關稅相當額이 30~40% 감축될 경우 農家所得 被害額은 주요 40여개 農産物을 완전 輸入開放 했을 때의 被害額 5조 4천억원(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9년 研究資料;1988년 기준)인 점과 農産物 供給曲線이 右

上向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한다면 5조4천억원의 절반에 해당되는 2조7천억원(1988년 農産物 總生産額:13조)쯤으로 예상된다. 이 액수는 일시에 감축하는 것이 아니지만 最終年度와 1988년과의 農家所得과의 차액에 해당되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國內農業支援政策이 점진적 감축대상이 되고 있는데 1988년 기준으로 이와 같은 보조금은 1조400억원 정도에 이르고 있다. 國內補助의 減縮으로 우선 예상되는 문제점으로서는 農業投資가 대폭적으로 축소될 것이라는 점이다.

농업부문의 평균 자본수익률은 6~8% (農村經濟研究院推定)로서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利差補償支援이 중단될 경우 農民에 의한 農業部門 投資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輸入開放에 대응하여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規模의 經濟達成과 農業機械化의 달성이 필수적이나 農機械購入補助가 없어질 경우 農機械 需要減少와 農業機械化 정체는 불가피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農業의 國際化, 開放化에 대응하여 農産物輸出増大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데 輸出有望品目에 대한 輸出補助金 支給과 해외 시장개척 지원이 곤란해 질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農業部門의 生産要素인 土地와 勞動力, 資本設備는 부문간에 유동성이 매우 작은 것이 특징이므로 농산물 수입 개방후 資源의 遊休化 費用은 굉장할 것이며 이에 따른 社會的인 不安定은 증폭될 것으로 본다.

3. UR農産物 協商對策

農産物協商이 외견상으로는 첨예한 利害對立으로 어려워 보이긴 하

지만 엇갈린 주장의 내용은 구체적인 減縮幅이나 減縮履行方法들에 관한 것들이고 대강의 원칙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協商決裂을 점친다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원칙에 대한 협상보다는 실질적인 關心國들끼리의 雙務協商만이 남아 있으므로 우리나라가 주장해 온 NTC, 開途國 優待 措置, 猶豫期間許容 등에 관한 사항을 美國, 케언즈그룹과의 雙務協商에서 효과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전략을 세워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美國과의 雙務協商時 현재 우리나라가 提案하고 있는 15개 NTC 品目들을 양국의 協商利益을 極大化시키는 방향에서 조정해 나가는 方法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協商분위기로 미루어 보아 많은 품목의 例外措置 許容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므로 너무 NTC에 집착하지 말고 장기의 이행기간, 猶豫期間, 減縮方式 등에서 유연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여 關稅化가 무차별하게 실현될 경우에는 議長의 勸告內容에서와 같이 主要品目에 대한 自由化日程 연기, 減縮幅의 縮小 등 品目別로 상이한 減縮公式를 적용하도록 노력하고 國家別로 상이한 減縮原則이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위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國內補助金 減縮보다는 關稅化와 關稅相當額의 감축이 더 곤란하므로 輸入自由化에 관한 協商에 중점으로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가 제안한 OL은 이러한 측면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느낌이다.

關稅化 過程에서의 諸般 副作用과 衝擊을 緩和하기 위해서는 GATT XI조, XIX조, XX조의 적절한 修正과 補完에 최대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特別緊急輸入制限制度 (Special Safeguard)에서는 關稅引上 뿐만 아니라 물량규제도 가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雙務協商에서 상대방요구의 예봉을 꺾고 우리 農産物 輸出의 增大를 위해서는 相對國의 農業政策과 輸入制限, 國內補助政策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逆으로 우리의 요구사항을 提案하는 것이 필요하다.

4. 國內 農業政策方向

UR 農產物協商은 전례가 없는 世界的 農業改革과 市場指向的인 農產物貿易體系의 수립에 관한 협상이다. 따라서 협상타결이후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모든 締約國의 農業은 완벽하지는 못하나 國際化, 開放化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韓國의 農業政策方向은 크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선 韓國農業이 國際化, 開放化에 순응하기 위해서는 國際分業과 比較優位原理에 의한 專門化의 방향으로 農業生産體系를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氣候나 自然與件에 맞을 뿐만 아니라 生産자원의 賦存與件에 맞는 土地 節約的이고 資本과 技術集約的인 農產物을 생산해야 한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農業의 國際競爭力을 제고시키는 방법이다. 물론 作目體系 再調整에 따른 기술적인 미비사항이나 生産基盤造成 등에 대해서는 현재 UR에서의 減縮履行期間이나 猶豫期間동안 政府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小數 戰略品目으로의 生産轉換과 國內需要의 한계성으로 過剩生産과 價格暴落事態가 필연적으로 수반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農產物 輸出戰略도 함께 수립해 나가야 되리라 본다. 따라서 UR 農產物協商에서 상대방에 대한 Request List의 신중한 제출이 요망된다. 이러한 방식의 作目體系調整이 필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다. 현재 議長草案에서는 모든 補助金을 減縮과 許容對象으로 분류하고 감축 대상을 합의된 기간 내에 일정수준으로 감축하며 許容對象政策도 1988년도 보조수준을 상회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補助總額은 점차 감축해야 할 입장

이나 減縮方式은 EC의 總體的 減縮이 수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우리나라도 주어진 보조총액 한도내에서 보조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作目體系의 調整이 시급한 것이다. 이와 함께 NTC 關聯品目에 대한 지원은 價格支持보다는 生産構造 및 基盤整備에 대한 補助로 전환하여 最小의 農業을 最小의 費用으로 維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은 農業의 國際化에 대응한 補完對策에 불과하므로 農家所得損失의 발생은 不可避할 것이다. 따라서 UR協商에서도 권고하고 있는대로 生産과 價格에 직접적인 連繫性이 없는 所得補轉政策(Decoupled Income Support Policies)이나 福祉政策의 擴充이 필요하다.

부록

UR農産物協商主要背景文書

1. 푼타 델 에스테 宣言文

빈

면

MINISTERIAL DECLARATION ON THE
URUGUAY ROUND

Ministers, meeting on the occasion of the Special Session of the CONTRACTING PARTIES at Punta del Este, have decided to launch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The Uruguay Round). To this end, they have adopted the following Declaration. The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will be open to the participation of countries as indicated in Parts I and II of this Declaration. A Trade Negotiations Committee is established to carry out the negotiations. The Trade Negotiations Committee shall hold its first meeting not later than 31 October 1986. It shall meet as appropriate at Ministerial level. The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will be concluded within four years.

PART I
NEGOTIATIONS ON TRADE IN GOODS

The CONTRACTING PARTIES meeting at Ministerial level

DETERMINED to halt and reverse protectionism and to remove distortions to trade

DETERMINED also to preserve the basic principles and to further the objectives of the GATT

DETERMINED also to develop a more open, viable and durabl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CONVINCED	that such action would promote growth and development
MINDFUL	of the negative effects of prolonged financial and monetary instability in the world economy, the indebtedness of a large number of less developed contracting parties, and considering the linkage between trade, money, finance and development
DECIDE	to enter into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on trade in goods within the framework and under the aegis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A. OBJECTIVES

Negotiations shall aim to:

- (i) bring about further liberalization and expansion of world trade to the benefit of all countries, especially less-developed contracting parties, including the improvement of access to markets by the reduction and elimination of tariffs, quantitative restrictions and other non-tariff measures and obstacles;
- (ii) strengthen the role of GATT, improve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based on the principles and rules of the GATT and bring about a wider coverage of world trade under agreed, effective and enforceable multilateral disciplines;
- (iii) increase the responsiveness of the GATT system to the evolving international economic environment, through facilitating necessary structural adjustment, enhancing the relationship of the GATT with the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aking account of changes in trade patterns and prospects, including the growing importance of trade in high technology products, serious diffi-

culties in commodity markets and the importance of an improved trading environment providing, *inter alia*, for the ability of indebted countries to meet their financial obligations;

- (iv) foster concurrent cooperative action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to strengthen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rade policies and other economic policies affecting growth and development, and to contribute towards continued, effective and determined efforts to improve the functioning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and the flow of financial and real investment resources to developing countries.

B. GENERAL PRINCIPLES GOVERNING NEGOTIATIONS

- (i) Negotiations shall be conducted in a transparent manner, and consistent with the objectives and commitments agreed in this Declaration and with the principles of the General Agreement in order to ensure mutual advantage and increased benefits to all participants.
- (ii) The launching, the conduct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outcome of the negotiations shall be treated as parts of a single undertaking. However, agreements reached at an early stage may be implemented on a provisional or a definitive basis by agreement prior to the formal conclusion of the negotiations. Early agreements shall be taken into account in assessing the overall balance of the negotiations.
- (iii) Balanced concessions should be sought within broad trading areas and subjects to be negotiated in order to avoid unwarranted cross-sectoral demands.

- (iv) The CONTRACTING PARTIES agree that the principle of differential and more favourable treatment embodied in Part IV and other relevant provisions of the General Agreement and in the Decision of the CONTRACTING PARTIES of 28 November 1979 on Differential and More Favourable Treatment, Reciprocity and Fuller Particip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applies to the negotiations. In the implementation of standstill and rollback, particular care should be given to avoiding disruptive effects on the trade of less-developed contracting parties.
- (v) The developed countries do not expect reciprocity for commitments made by them in trade negotiations to reduce or remove tariffs and other barriers to the trade of developing countries, i.e. the developed countries do not expect the developing countries, in the course of trade negotiations, to make contributions which are inconsistent with their individual development, financial and trade needs. Developed contracting parties shall therefore not seek, neither shall less-developed contracting parties be required to make, concessions that are inconsistent with the latter's development, financial and trade needs.
- (vi) Less-developed contracting parties expect that their capacity to make contributions or negotiated concessions or take other mutually agreed action under the provisions and procedures of the General Agreement would improve with the progressive development of their economies and improvement in their trade situation and they would accordingly expect to participate more fully in the framework of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e General Agreement.
- (vii) Special attention shall be given to the particular situation and problems of the least-developed countries and to the need to encourage positive measures to facilitate expansion of their trading opportunities. Expedious implementa-

tion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1982 Ministerial Declaration concerning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shall also be given appropriate attention.

C. STANDSTILL AND ROLLBACK

Commencing immediately and continuing until the formal completion of the negotiations, each participant agrees to apply the following commitments:

Standstill

- (i) not to take any trade restrictive or distorting measure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e General Agreement or the Instruments negotiated within the framework of GATT or under its auspices;
- (ii) not to take any trade restrictive or distorting measure in the legitimate exercise of its GATT rights, that would go beyond that which is necessary to remedy specific situations, as provided for in the General Agreement and the Instruments referred to in (i) above;
- (iii) not to take any trade measures in such a manner as to improve its negotiating positions;

Rollback

- (i) that all trade restrictive or distorting measures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e General Agreement of Instruments negotiated within the framework of GATT or under its auspices, shall be phased out or brought into conformity within an agreed timeframe not later than by the date of the formal completion of the negotiations, taking into account multilateral agreements,

- undertakings and understandings, including strengthened rules and disciplines, reached in pursuance of the Objectives of the Negotiations;
- (ii) there shall be progressive implementation of this commitment on an equitable basis in consultations among participants concerned, including all affected participants. This commitment shall take account of the concerns expressed by and participant about measures directly affecting its trade interests;
- (iii) there shall be no GATT concessions requested for the elimination of these measures.

Surveillance of standstill and rollback

Each participant agrees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se commitments on standstill and rollback shall be subject to multilateral surveillance so as to ensure that these commitments are being met. The Trade Negotiations Committee will decide on the appropriate mechanisms to carry out the surveillance, including periodic reviews and evaluations. Any participant may bring to the attention of the appropriate surveillance mechanism any actions or omissions it believes to be relevant to the fulfilment of these commitments. These notifications should be addressed to the GATT secretariat which may also provide further relevant information.

D. SUBJECTS FOR NEGOTIATION

Tariffs

Negotiations shall aim, by appropriate methods, to reduce or, as appropriate, eliminate tariffs including the reduction or elimination of high tariffs and tariff esca-

lation. Emphasis shall be given to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tariff concessions among all participants.

Non-tariff measures

Negotiations shall aim to reduce or eliminate non-tariff measures, including quantitative restrictions, without prejudice to any action to be taken in fulfilment of the rollback commitments.

Tropical products

Negotiations shall aim at the fullest liberalization of trade in tropical products, including in their processed and semi-processed forms and shall cover both tariff and all non-tariff measures affecting trade in these products.

The CONTRACTING PARTIE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rade in tropical products to a large number of less developed contracting parties and agree that negotiations in this area shall receive special attention, including the timing of the negotiations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results as provided for in B(ii).

Natural resource-based products

Negotiations shall aim to achieve the fullest liberalization of trade in natural resource-based products, including in their processed and semi-processed forms. The negotiations shall aim to reduce or eliminate tariff and non-tariff measures, including tariff escalation.

Textiles and clothing

Negotiations in the area of textiles and clothing shall aim to formulate modalities that would permit the eventual integration of this sector into GATT on the basis of

strengthened GATT rules and disciplines, thereby also contributing to the objective of further liberalization of trade.

Agriculture

The CONTRACTING PARTIES agree that there is an urgent need to bring more discipline and predictability to world agricultural trade by correcting and preventing restrictions and distortions including those related to structural surpluses so as to reduce the uncertainty, imbalances and instability in world agricultural markets.

Negotiations shall aim to achieve greater liberalization of trade in agriculture and bring all measures affecting import access and export competition under strengthened and more operationally effective GATT rules and disciplines, taking into account the general principles governing the negotiations, by:

- (i) improving market access through, *inter alia*, the reduction of import barriers;
- (ii) improving the competitive environment by increasing discipline on the use of all direct and indirect subsidies and other measures affecting directly or indirectly agricultural trade, including the phased reduction of their negative effects and dealing with their causes;
- (iii) minimizing the adverse effects that sanitary and phytosanitary regulations and barriers can have on trade in agriculture, taking into account the relevant international agreements.

In order to achieve the above objectives, the negotiating group having primary responsibility for all aspects of agriculture will use the Recommendations adopted by the CONTRACTING PARTIES at their fortieth Session, which were developed in accordance with the GATT 1982 Ministerial Work Programme, and take account

of the approaches suggested in the work of the Committee on Trade in Agriculture without prejudice to other alternatives that might achieve the objectives of the negotiations.

GATT Articles

Participants shall review existing GATT Articles, provisions and disciplines as requested by interested contracting parties, and, as appropriate, undertake negotiations.

Safeguards

- (i) A comprehensive agreement on safeguards is of particular importance to the strengthening of the GATT system and to progress in the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 (ii) The agreement on safeguards:
 - shall be based on the basic principles of the General Agreement;
 - shall contain, *inter alia*, the following elements:
 - transparency, coverage, objective criteria for action including the concept of serious injury or threat thereof, temporary nature, degressivity and structural adjustment, compensation and retaliation, notification, consultation, multilateral surveillance and dispute settlement; and
 - shall clarify and reinforce the disciplines of the General Agreement and should apply to all contracting parties.

MTN Agreements and Arrangements

Negotiations shall aim to improve, clarify, or expand, as appropriate, Agreements and Arrangements negotiated in the Tokyo Round of Multilateral Negotiations.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Negotiations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shall be based on a review of Articles VI and XVI and the MTN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with the objective of improving GATT disciplines relating to all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that affect international trade. A negotiation group will be established to deal with these issues.

Dispute settlement

In order to ensure prompt and effective resolution of disputes to the benefit of all contracting parties, negotiations shall aim to improve and strengthen the rules and the procedures of the dispute settlement process, while recognizing the contribution that would be made by more effective and enforceable GATT rules and disciplines. Negotiations shall include the development of adequate arrangements for overseeing and monitoring of the procedures that would facilitate compliance with adopted recommendations.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trade in counterfeit goods

In order to reduce the distortions and impediments to international trade, and taking into account the need to promote effective and adequat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o ensure that measures and procedures to enforc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o not themselves become barriers to legitimate trade, the negotia-

tions shall aim to clarify GATT provisions and elaborate as appropriate new rules and disciplines.

Negotiations shall aim to develop a multilateral framework of principles, rules and disciplines dealing with international trade in counterfeit goods, taking into account work already undertaken in the GATT.

These negotiations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other complementary initiatives that may be taken in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and elsewhere to deal with these matters.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Following an examination of the operation of GATT Articles related to the trade restrictive and distorting effects of investment measures, negotiations should elaborate, as appropriate, further provisions that may be necessary to avoid such adverse effects on trade.

E. FUNCTIONING OF THE GATT SYSTEM

Negotiations shall aim to develop understandings and arrangements:

- (i) to enhance the surveillance in the GATT to enable regular monitoring of trade policies and practices of contracting parties and their impact on the functioning of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 (ii) to improve the overall effectiveness and decision-making of the GATT as an institution, including, *inter alia*, through involvement of Ministers;
- (iii) to increase the contribution of the GATT to achieving greater coherence in global economic policy-making through strengthening its relationship with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sponsible for monetary and financial matters.

F. PARTICIPATION

(a) Negotiations will be open to:

- (i) all contracting parties,
 - (ii) countries having acceded provisionally,
 - (iii) countries applying the GATT on a *de facto* basis having announced, not later than 30 April 1987, their intention to accede to the GATT and to participate in the negotiations,
 - (iv) countries that have already informed the CONTRACTING PARTIES, at a regular meeting of the Council of Representatives, of their intention to negotiate the terms of their membership as a contracting party, and
 - (v) developing countries that have, by 30 April 1987, initiated procedures for accession to the GATT, with the intention of negotiating the terms of their accession during the course of the negotiations.
- (b) Participation in negotiations relating to the amendment or application of GATT provisions or the negotiation of new provisions will, however, be open only to contracting parties.

G. ORGANIZATION OF THE NEGOTIATIONS

A Group of Negotiations on Goods (GNG) is established to carry out the programme of negotiations contained in this Part of the Declaration. The GNG shall, *inter alia* :

- (i) elaborate and put into effect detailed trade negotiating plans prior to 19 December 1986;
- (ii) designate the appropriate mechanism for surveillance of commitments to standstill and rollback;
- (iii) establish negotiating groups as required. Because of the interrelationship of some issues and taking fully into account the general principles governing the negotiations as stated in B(iii) above it is recognized that aspects of one issue may be discussed in more than one negotiating group. Therefore each negotiating group should as required take into account relevant aspects emerging in other groups;
- (iv) also decide upon inclusion of additional subject matters in the negotiations;
- (v) co-ordinate the work of the negotiating groups and supervise the progress of the negotiations. As a guideline not more than two negotiating groups should meet at the same time;
- (vi) the GNG shall report to the Trade Negotiations Committee.

In order to ensure effective application of differential and more favourable treatment the GNG shall, before the formal completion of the negotiations, conduct an

evaluation of the results attained therein in terms of the Objectives and the General Principles Governing Negotiations as set out in the Declaration, taking into account all issues of interest to less-developed contracting parties.

PART II

NEGOTIATIONS ON TRADE IN SERVICES

Ministers also decide, as part of the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to launch negotiations on trade in services.

Negotiations in this area shall aim to establish a multilateral framework of principles and rules for trade in services, including elaboration of possible disciplines for individual sectors, with a view to expansion of such trade under conditions of transparency and progressive liberalization and as a means of promoting economic growth of all trading partners and the development of developing countries. Such framework shall respect the policy objectives of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applying to services and shall take into account the work of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GATT procedures and practices shall apply to these negotiations. A Group of Negotiations on Services is established to deal with these matters. Participation in the negotiations under this Part of the Declaration will be open to the same countries as under Part I. GATT secretariat support will be provided, with technical support from other organizations as decided by the Group of Negotiations on Services.

The Group of Negotiations on Services shall report to the Trade Negotiations Committee.

IMPLEMENTATION OF RESULTS UNDER PARTS I AND II

When the results of the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in all areas have been established, Ministers meeting also on the occasion of a Special Session of CONTRACTING PARTIES shall decide regarding the international implementation of the respective results.

빈

면

2. UR中間評價合意文(MTN.TNC/11)

빈

면

MID-TERM MEETING

This document sets out the entire package of results adopted by the Trade Negotiations Committee at its mid-term review held in Montreal on 5-9 December 1988 and in Geneva on 5-8 April 1989.

A record of the Montreal meeting has been circulated as MTN.TNC/8(MIN). A record of the meeting held in Geneva on 5-8 April 1989 will be issued as MTN.TNC/10.

TROPICAL PRODUCTS

1. Ministers take note of the results obtained thus far in negotiations and note that these will be implemented by January 1989 except as otherwise indicated*. These results wi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e overall achievement of the Uruguay Round.

2. In pursuance of their commitment to the objective of achieving the fullest liberalization of trade in tropical products, including in their processed and semi-processed forms as contained in the Declaration of Punta del Este, Ministers agree to pursue negotiations on the seven product groups as identified in Section II, paragraph 46 of document MTN.GNG/13** with due regard, *inter alia*, to the

* Document MTN.GNG/17 and Add.1. Autonomous unilateral contributions have also been tabled in the Negotiating Group on Tropical Products by Hungary(MTN.GNG/NG6/LT/39), South Africa(MTN.GNG/NG6/LT/45 and Add.1) and Czechoslovakia (MTN.GNG/NG6/LT/47).

** Tropical beverages ; spices, flowers and plaiting products ; certain oilseeds, vegetable oils and oilcakes ; tobacco, rice and tropical roots ; tropical fruits and nuts ; natural rubber and tropical wood ; jute and hard fibres. It was understood that this would not constitute a definition of tropical products nor an exhaustive listing and that other products might be included as negotiations proceed.

following elements :

- (a) Elimination of duties on unprocessed products.
- (b) Elimination or substantial reduction of duties on semi-processed and processed products. These actions would include the objective of eliminating or reducing tariff escalation.
- (c) Elimination or reduction of all non-tariff measures affecting trade in these products.

3. All participants agree to engage in such negotiations and make appropriate contributions towards achieving the above objective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Punta del Este Ministerial Declaration including those contained in its Part I.B.

4. The Negotiating Group on Tropical Products at its next meeting is invited to make appropriate arrangements for continuation of negotiations on the basis of the above understandings.

5. The Negotiating Group shall, before the formal completion of negotiations, conduct an evaluation of the results attained therein in terms of the objectives of the negotiations.

AGRICULTURE

1. The Negotiating Group on Agriculture has made substantial progress in elaborating the elements of the negotiating proposals and submissions under the subsequent negotiating process. The stage has now been reached in this process where the general direction and procedures to be followed in the final phases of the negotiations need to be defined in operational terms so as to provide a framework for liberalizing trade in agriculture and bringing all measures affecting import access and export competition under strengthened and more operationally effective

GATT rules and disciplines.

2. There is a broad measure of consensus that agricultural policies should be more responsive to international market signals in order to meet the objective of liberalization of international trade and that support and protection should be progressively reduced and provided in a less trade-distorting manner.

3. The particular needs and conditions of developing countries should be fully taken into account at all stages of the negotiation in conformity with the principle of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to developing countries as laid down in the Punta del Este Declaration.

4. Ministers accordingly endorse a framework approach comprising the following interrelated long- and short-term elements and arrangements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regulations.

A. LONG-TERM ELEMENTS AND GUIDELINES FOR REFORM

5. Ministers agree that the long-term objective of the agricultural negotiations is to establish a fair and market-oriented agricultural trading system and that a reform process should be initiated through the negotiation of commitments on support and protection an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strengthened and more operationally effective GATT rules and disciplines.

6. The above-mentioned long-term objective is to provide for substantial progressive reductions in agricultural support and protection sustained over an agreed period of time, resulting in correcting and preventing restrictions and distortions in world agricultural markets. This goal will be realized through negotiations on specific policies and measures, through the negotiation of commitments on an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the terms of which will be negotiated, or through a combination of these approaches. Credit will be given for

measures implemented since the Punta del Este Declaration which contribute positively to the reform programme.

7. In realizing the long-term objective stated above, the strengthened and more operationally effective GATT rules and disciplines, which would be equally applicable to all contracting parties, and the commitments to be negotiated, should encompass all measures affecting directly or indirectly import access and export competition, in particular :

Import access

- quantitative and other non-tariff access restrictions, whether maintained under waivers, protocols of accession or other derogations and exceptions, and all measures not explicitly provided for in the General Agreement, and the matter of conversion of the measures listed above into tariffs ;
- tariffs, including bindings ;

Subsidies and export competition

- internal support measures (including income and price support) which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 trade ;
- direct budgetary assistance to exports, other payments on products exported and other forms of export assistance.

Export prohibitions and restrictions

- export prohibitions and restrictions.

8. Ministers agree that :

-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to developing countries is an integral element of the negotiations particularly on the strengthened and more operationally effective GATT rules and disciplines ;
- government measures on assistance, whether direct or indirect, to encourage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are an integral part of the development programmes of developing countries ;

- ways should be developed to take into account the possible negative effects of the reform process on net food importing developing countries.

Non-trade concerns

9. Participants recognize that factors other than trade policy are taken into account in the conduct of their agricultural policies. In the negotiations to achieve the long-term objective, account will be taken of proposals aimed at addressing participants' concerns such as food security.

Implementations

10. Implementation of the first tranche of agreed commitments on the long-term reform programme shall take place in 1991.

Work Programme

11. Participants are invited to advance by December 1989 detailed proposals for the achievement of the long-term objective, including the following ;

- the terms and use of an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
- strengthened and more operationally effective GATT rules and disciplines ;
- the modalities of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for developing countries ;
- sanitary and phytosanitary regulations and the work programme foreshadowed in (C) below ;
- tariffication, decoupled income support, and other ways to adapt support and protection ;
- ways to take account of the possible negative effects of the reform process on net food-importing developing countries.

12. Not later than the end of 1990, participants will agree on the long-term reform programme and the period of time for its implementation. Soon thereafter, taking into account the different national procedures for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agreements, participants will notify their plans for meeting the obligations and commitments agreed upon.

Surveillance

13. The reform programme will be subject to multilateral surveillance and other procedures necessary to ensure full compliance with commitments made in the negotiations.

B. SHORT-TERM ELEMENTS

14. With effect from the adoption of this decision and continuing until the formal completion of these negotiations on agriculture by December 1990, participants, within the scope of their existing legislation and their existing GATT rights and obligations, undertake to ensure that current domestic and export support and protection levels in the agricultural sector are not exceeded. Participants undertake to ensure that tariff and non-tariff market access barriers in force at the date of this decision are not subsequently intensified in relation to imports of agricultural products nor extended to additional products, including 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 Participants shall be deemed to be in compliance with this undertaking so long as the access opportunities granted to individual products in 1989 and 1990 are not less than those granted on average in 1987 and 1988. Participants shall also ensure that support prices to producers, to be expressed in national currencies¹, that are set or determined directly or indirectly by governments or their agencies are not raised above the level prevailing at the date of this decision or otherwise take actions to ensure that the current levels of support for the commodity concerned are not increased.

15. Participants state their intention to reduce support and protection levels for 1990. This could be done either by using an AMS or by taking specific policy

1. ECU in the case of the EEC.

measures. They will notify the undertakings for fulfilling this commitment by October 1989.

Reporting requirements

16. Participants agree to report on their compliance with the above undertakings at six-month intervals. The first report shall be submitted not later than 1 December 1989.

17. Any participant may raise any matter relating to or affecting the observance of the commitments at a meeting of the Negotiating Group on Agriculture.

18. In exceptional circumstances² a participant can be relieved by the Negotiating Group on Agriculture of commitments under the above undertakings.

Developing countries

19. Developing countries are not expected to subscribe to the commitments under B.

C. SANITARY AND PHYTOSANITARY REGULATIONS

20. Ministers endorse harmonization of national regulations as a long-term goal and a work programme embodying the following objectives :

- (1) develop harmoniz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regulations and measures, on the basis of appropriate standards established by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the International Office of Epizootics and the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
- (2) strengthen Article XX so that measures taken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are consistent with sound scientific evidence and use suitable principles of equivalency ;

2. For particular countries excessive rates of inflation will be taken into account.

- (3) review existing notification and counter-notification procedures to ensure transparency and the existence of an effective notification process for national regulations and bilateral agreements ;
- (4) develop a consultative process which ensures transparency and allows opportunity for the bilateral resolution of disputes ;
- (5)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multilateral dispute settlement process within the GATT in order to provide the necessary input of scientific expertise and judgment, relying on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 (6) assess the possible effects on developing countries of the GATT rules and disciplines for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and evaluate the need for technical assistance ;
- (7) examine the possibilities for implementation of the above programme in the context of short-term elements.

3. UR 農產物協商議長草案

빈

면

의장초안 (MTN/GNG/NG5/W/170,
1990년 7월 11일)

[Introduction]

1. In line with the requirements set out by the Chairman of the TNC at its eleventh meeting (MTN.TNC/14 refers) the following text outlines a framework of modalities for negotiation leading to agreement on the Reform Programme which has been adopted by participants in the Negotiating Group on Agriculture on..... Its purpose is to establish a basis for initiating the reform process in line with the objectives of the negotiations as set out in Punta del Este Declaration and the Mid-Term Review Agreement.

Participants note that their agreement to this text is conditional both on the satisfactory negotiation of certain issues within it and on the overall balance of agreements in the Round as a whole. The framework covers the following : internal support, border protection, export competition, reduction targets, sanitary/phytosanitary regulations and barriers, rules, surveillance, and provides a basis for taking account in the negotiation of non-trade concerns,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for developing countries, and the situation of net food importing developing countries.

A. INTERNAL SUPPORT

2. Participants agree that a substantial and progressive reduction of internal support to agriculture shall be implemented so as to

[서론]

1. 제11차 TNC회의(MTN/TNC/14참조)시 의장 요구사항과 맥락을 같이하여 이 초안은 농산물협상그룹에서 채택된 일련의 개선조치의 합의의 도출하기 위한 방법을 요약하고 있다.

이 초안의 목적은 푼타 델 에스테 선언과 중간평가 합의사항에서 제시된 협상목표에 합치하는 개선조치의 구체적 이행을 제안할 수 있는 기초를 정립함에 있다.

협상참가자들은 농산물협상에서 만족한 협상결과를 얻고 UR전체협상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은 이 초안의 정신에 합치하느냐 여부에 달려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 초안이 다루고 있는 사항들은 국내보조, 국경보호, 수출경쟁, 감축 목표, 위생 및 검역규제, 규정, 감시기능등이며, NTC, 개도국 우대, 식량 순수입 개도국에 대한 고려도 포함하고 있다.

A. 국내보조

2. 협상참가자들은 체약국들이 무역효과를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자국의 국가정책 목표를 추구해가는 한편, 무역왜곡을 최소화하고, 농산

minimize trade distortion and increase the market orientation of production, while maintaining the possibility for contracting parties to pursue national policy goals affecting agriculture through policies with minimal trade effects.

3. Accordingly, the Mid-Term Review commitment by developed countries not to exceed current levels of support per commodity (MTN. TNC/11, paragraph 14 refers) shall continue in force for the duration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to be agreed for the results of these negotiations. Furthermore, all internal support with the exception of policies which meet certain agreed criteria shall be reduced from 1991~1992 over an agreed number of years at a rate to be negotiated in line with paragraph 2 above, using an Aggregate Measure of Support as described below.
4. The progressive and substantial reduction of all internal support to agriculture other than that whose exemption is agreed under paragraphs 9~11 below, shall apply at national and sub-national level. This commitment shall encompass market price support, including any measure which acts to maintain producer prices at levels above those prevailing in international trade for the same or comparable products, and taking account of levies or fees paid by producers; direct payments to producers other than those which may be exempted on the basis of the agreed criteria, including

품거래의 시장기능을 증가시키기 위해 농업에 대한 국내보조의 상당하고 점진적인 감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3. 이에 따라 중간평가시 선진국들이 현재의 품목당 보조수준을 늘리지 않겠 다고한 공약(MTN. TNC/11, 14항 참조)은 이협상이 타결된 이후 있게될 이행기간동안에도 효력을 발휘하게 할 것이다.

더구나, 모든 국내보조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정책들을 제외하고는 1991-1992년부터 2항의 정신에 따라 합의된 기간과 비율에 따라 아래 설명될 농업보조 총량측정 장치(AMS)에 의해 감축되어 나갈 것이다.

4. 아래 9-11항에서 인정된 예외를 제외한 모든 농업에 대한 보조의 점진적이고도 상당한 감축은 국가 혹은 준국가를 대상으로 적용될 것이다. 감축의 내용은 시장가격지지, 직접보조와 생산요소 및 유통비용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시장가격지지는 동종 혹은 유사상품의 국제시장에서의 가격보다 국내가격을 높게 유지하는 모든수단을 포함하고, 생산자가 지불하는 부과금과 수수료는 보조액에서 빼야 한다.

직접보조는 결손보상을 포함하고, 예외로 인정된 경우는 제외되며, 생산자가 지불하는 부과금이나 수수료는 보조액에서 빼야 한다.

deficiency payments and taking account of levies or fees paid by producers ; and input and marketing cost reduction measures available only in respect of agricultural production, including credit and other financial input assistance and taking account of input taxes.

5. Participants agree that an Aggregate Measure of Support (AMS) shall be used in the express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commitments to substantial and progressive reduction set out above, with equivalent commitments for products where an AMS cannot be calculated. The AMS will be expressed by total monetary value per commodity using the base year 1988 and a fixed reference price based on 1986~88 data. It will be applied for a negotiated period. The fixed reference price may be subject to periodic reassessment. The policy coverage of the AMS for the purpose of commitments shall include the policy categories noted in paragraph 4 above as well as any other policies not qualifying for exemption on the basis of the agreed criteria (see paragraph 9 below).
6. Participants will submit, no later than 1 October 1990, country lists drawn up according to the following parameters :
 - (a) the level of support per commodity which is proposed to be bound as an overall ceiling ;

생산요소 및 유통비용 지원은 농산물생산에만 주어지는 금융 및 재정지원을 포함하고 생산요소에 부과되는 조세는 빼야 한다.

5. 협상참가자들은 위에서 명시된 상당하고 점진적인 감축의 표시 및 이행에 있어서 농업보조 총량측정장치(AMS)를 사용하고, AMS가 계산될 수 없는 품목에 관해서는 계산가능한 품목과 동등한 수준의 감축을 이행할 것을 합의한다.

AMS는 1988년을 기준년도로 하고 1986-1988자료에 의한 기준가격을 설정하여 품목별로 총금액을 산출하여 표시한다.

산출된 AMS는 협상 참가자들이 합의하는 기간동안 적용될 것이다. 기준가격은 일정기간마다 재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AMS 감축에 포함되는 정책은 4항에 명시된 정책과 예외로 인정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정책을 포함한다(아래 9항 참조).

6. 협상참가자들은 다음 각 사항들을 포함하는 C/L(Country Lists)을 늦어도 1990년 10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a) 협상참가자가 제안하는 각 품목별 보조수준의 최고한도

- (b) the policies proposed for exclusion from the commitment to substantial and progressive reduction on grounds of their conformity with the criteria outlined below ;
- (c) the products for which an AMS can be calculated ;
- (d) for each of the above products, the AMS base level to be subject to reduction.

7. Participants also agree that, where the calculation of an AMS is not practicable, the products concerned shall be subject to equivalent commitments which are to be specified in conjunction with the country lists.
8. The policies which may be excluded from the commitment to progressive and substantial reduction, but which will remain subject to the overall ceiling on support as well as to surveillance and review on a basis to be agreed, shall include programmes aimed at providing general services of a generally beneficial public nature to agriculture and the rural community ; environmental and conservation programmes ; resource diversion and retirement programmes ; bona fide disaster relief, crop insurance and domestic food aid ; public stockholding for food security purposes ; regional development and income safety-net programmes. Such policies must conform to criteria which are to be based on the following elements :

(b) 감축대상에서 예외가 되는 정책(아래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함)

(c) AMS 계산가능한 품목

(d) 위 품목들에 대한 AMS의 감축수준

7. 협상참가자들은 C/L과 관련하여 AMS계산이 불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대등한 수준의 감축이 이행되어야 한다는 데 합의한다.

8. 감축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최고한도에 의해 보조금액이 제한되고 각국간의 합의에 의한 통제 및 감시대상이 되는 정책들은 농업과 농촌사회에 일반적으로 유익한 공공적 성격을 띤 일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 환경 및 토양보존정책, 농업에 사용되는 생산자원의 용도 전환 및 사용중지를 유도하는 정책, 재해보상, 작물보험 및 국내 식량보조, 식량안보를 목적으로 한 공공재고 보유, 지역개발 및 소득안정 장치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다음에 열거된 사항에 근거한 기준에 합치하여야 한다.

- (a) the assistance must be provided through a taxpayer-funded government programme not involving transfers from consumers
- (b) it must not be linked to current or future levels of production or factors of production, except to remove factors from production ;
- (c) it must not be restricted to any specific agricultural product or product sector ;
- (d) it must not have the effect of providing price support to producers ;
- (e) in the case of income safety-net programmes, it must not maintain producer incomes at more than [x] per cent of the most recent threeyear average.

The condition in (c) above shall not apply to general services.

9. The formulation as necessary of more specific criteria based on the elements above shall take account of the proposals in the country lists. This process will also allow for the possibility of negotiating additional requirements where justified. The criteria thus agreed will continue in force as part of the result of the negotiation.
10. In conjunction with the arrangements for monitoring and surveil-

- (a)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은 소비자로부터 이전되지 않고, 정부의 재정에서 충당되어야 한다.
- (b) 현재 또는 미래의 생산수준 및 생산요소의 증감과 관계되지 않아야 한다. 단, 생산요소를 농업생산으로부터 제외시키고자 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 (c) 어떤 특정한 품목이나, 품목분야에 한정되어서는 안된다.
- (d) 생산자에게 가격지지 효과를 주어서는 안된다.
- (e) 소득안정장치의 경우 생산자소득이 최근 3년동안 평균의 X%를 상회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위 (c)항은 일반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9. 위 열거된 사항에 근거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결정할 때는 C/L에 나와있는 여러 제안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위에서 명시된 것 이외에 새로운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해 추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서로 합의된 기준은 협상결과의 일부로써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10. 감시 및 통제와 관련하여 상당하고 점진적인 감축대상에서 제외되는

lance, a basis will be agreed for review of the initial assignement of a specific policy or policies to the category exempt from substantial and progressive reduction. Where in the course of such review a policy cannot be shown to have satisfied the agreed criteria for inclusion in the category, it shall be placed under the commitment to substantial and progressive reduction. The treatment of any new policies, including the modification of current policies, shall be decided on a similar basis following their prior notification. The review process will also provide the means of taking account of excessive rates of inflation in relation to the implementation of commitments.

11. Flexibility concerning the nature and extent of commitments and the timing of their implementation may be accorded to developing countries, on a basis to be agreed, in keeping with the recognition in the Mid-Term Review Agreement that assistance to agriculture to encourage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is an integral part of the development programmes of these countries. In particular, developing countries assistance to agriculture in pursuit of development objectives shall be exempt from the reduction commitments set out above, provided that (i) it has no, or a minimal, effect on trade and that (ii) it does not act to maintain domestic prices higher than free-at-frontier prices for like products.

구체적인 정책들이 엮인 것인가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입장이 서로 합의되어야 한다. 만약, 검토결과 어떤 정책의 위에서 명시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나타냈을 때는 그 정책은 감축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새로운 정책 혹은 현존 정책의 일부 수정의 경우에도 정책 입안 단계에서 위의 경우와 같은 절차를 거쳐 감축대상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조사과정에서 감축계획이행과 관련하여 물가상승율이 지나칠 때는 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11. 농업 및 농촌 발전을 육성시키는 것이 개발도상국의 농업지원정책의 절대 필요한 부분이라는 중간평가 합의시의 취지를 살려, 개발도상국에게는 감축계획이행과 그 이행시기의 성격과 범위에 있어서 신축성이 부여될 수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이 개발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의 농업에 대한 지원은,

- (i) 그 정책이 무역에 미치는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고,
- (ii) 그 정책이 국내가격을 유사품목에 대한 도입가격보다 높이 유지하는 것이 아닌 한 감축대상에서 면제될 것이다.

B. BORDER PROTECTION

12. Participants agree that, in order to foster the market orientation of domestic policies which should result from commitments on internal support, market access opportunities will be improved in line with substantial and progressive reductions of support and protection. Accordingly, participants agree to negotiate commitments on all border measures on the basis of country lists covering all products subject to these measures. Relevant non-trade concerns shall be accommodated to the maximum possible extent within this approach. These country lists shall be tabled by 1 October 1990 and built on the following parameters :

- (a) conversion of all border measures other than normal custom duties into tariff equivalents irrespective of the level of existing tariffs ; the modalities of such a conversion should be based on the existing gap between external and internal prices as close as possible to actual prices and following the guidelines contained in Annex I ;
- (b) binding of these tariff equivalents ;
- (c) maintenance of current access opportunities on terms at least equivalent to those existing through, inter alia, tariff quotas ;
- (d) in the case of absence of significant imports, establishment of

B. 국경보호

12. 협상참가자들은, 국내보조의 감축결과에 따른 국내정책의 시장기능을 육성하기 위하여 보조 및 보호의 상당하고도 점진적인 감축과 맞추어 시장접근 기회를 증가시키는데 합의한다. 이에따라 C/L에 나타난 모든 품목의 국경보호조치를 감축해 나갈 것을 협상하기로 동의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상품의 비교역기능(NTC)은 앞에서 밝힌 입장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수용될 것이다. 이러한 사항을 포함하는 C/L은 10월 1일까지 제출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들에 기초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a) 정상적인 관세이외의 모든 국경조치를 현존 관세수준에 관계없이 관세상당액(TE)으로 전환하고, 부록 I 에 마련된 지침에 의거, 가능하면 실제가격과 가까운 국제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이에 기 존하여 TE를 산정하고

(b) 이러한 TE는 향후 더 높일 수 없고,

(c) 시장접근 기회는 관세할당(TQ)을 통해 적어도 현재 허용되고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며,

(d) 수입물량이 미미할 경우, 1991-1992년부터 저율 혹은 영세율로

a minimum level of access from 1991~92, also on the basis of tariff quotas at low or zero rate and representing at least [x] per cent of current domestic consumption of the product concerned ;

(e) for products subject to normal custom duties only, current access opportunities shall be maintained on terms at least equivalent to those existing ; in particular, all existing tariff rates shall be bound.

13. Participants also agree that the tabling of these country lists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the possibility of negotiating specific solutions in case of particular situations which may exist for some products.

14. All tariffs and tariff equivalents as agreed on the basis of the country lists shall be substantially and progressively reduced from 1991~92 at an average rate and over a number of years to be negotiated in line with paragraph 2 above.

Tariff quotas as agreed on the basis of the country lists shall be expanded at an average rate and over a number of years to be negotiated as above. This would allow for the possibility of negotiating specific rates of reduction of tariff equivalents and/or specific rates of expansion of tariff quotas in case of particular situations which may exist for some products. All access opportunities over and above existing levels shall be on an m.f.n. basis.

기본 TQ를 관련상품의 현재 국내소비량의 적어도 X%에 해당토록 하여 최소수준의 시장접근을 허용하고

- (e) 현재 정상적 관세만 있는 상품의 경우, 적어도 허용되고 있는 수준의 시장접근이 유지되어야 함. 특히, 모든 현행 관세율은 향후 인상할 수 없다.

13. C/L 의 작성에 있어서 일부상품의 발생할지도 모르는 특수 상황을 예견하고 그 경우의 해결책을 염두에 두어 공정성을 잃어서는 안된다.

14. C/L에 근거하여 합의된 모든 관세는 TE는 2항에 명기된 것처럼 1991 - 1992년부터 협상참가자들이 합의한 기간동안 연평균 일정비율로 상당히 점진적으로 감축되어 갈 것이다.

C/L에 근거하여 합의된 TQ는 위와 같이 협상참가자들이 합의한 기간동안 연평균 일정비율로 확대 되어 갈 것이다.

이 과정중에서 일부 품목들에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TE 감축비율과 TQ증가비율이 재조정될 수 있다.

현재 수준을 초과하는 모든 시장접근 기회의 허용은 최혜국 대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5. Participants further agree that in implementing the commitments on market access, the particular needs and conditions of developing countries shall be fully taken into account by providing, inter alia, for a faster rate of reduction of tariffs and tariff equivalents and /or a faster rate or expansion of tariff quotas for products of particular interest to these countries. Developing countries shall also be allowed, where necessary, to give effect to the implementation of their commitments in a way commensurate with their development needs.

16. With respect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above commitments, participants agree that special safeguard provisions will be negotiated which should enable recourse to tariff increase, subject to notification requirements but without compensation and which will become operative in case of import surges or world price movements, expressed in terms of domestic currencies, which exceed limits to be agreed. Such tariff increases would only remain in force as long as the conditions for their implementation continue to exist. Tariffs will then return to levels consistent with the commitments undertaken.

C. EXPORT COMPETITION

17. Participants agree that, in line with the objective of establishing

15. 시장개방 과정에 있어서 개도국가 이해 관계가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나 TE를 계획보다 빠른 비율로 감축하거나 TQ를 빠른 비율로 증가시켜 나감으로서 개도국의 이익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한다. 또한, 개도국은 개발목적에 상응하는 범위내에서 의무이행의 신축성을 부여받는다.

16. 위에서 명시된 TE의 감축 및 TQ의 증가에 있어서 특별긴급조치(Safeguard)조항으로 예외적 상황을 인정한다.

이 긴급조치 조항을 적용함으로서 관세를 인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상대교역국에게 통지해야 하며 관세인상으로 상대국이 당하는 불이익을 보상하지 않는다. 이 긴급조치 조항은 수입이 급증했거나, 국내 화폐단위로 표시된 국제가격이 양자가 사전에 합의한 일정수준을 초과 상승했을때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관세인상은 위에서 말한 예외적 상황이 계속되는 동안만 효력을 발생한다. 긴급조치를 발동할 조건이 없어졌을 때는 관세는 감축계획에 규정된 본래의 수준으로 되돌아 가야 한다.

C. 수출경쟁

17. 협상참가자들은 공정거래와 시장기능에 입각한 농산물교역체제를 확

a fair and market-oriented agricultural trading system, direct budgetary assistance to exports, other payments on products exported and other forms of exports assistance are to be substantially and progressively reduced and that the use of permitted export assistance will be subject to strengthened and more operationally effective GATT rules and disciplines.

18. Participants agree that the commitments to reduce export assistance shall result in such assistance being reduced effectively more than other forms of support and protection and that these commitments may take the form of commitments to progressively reduce aggregate budgetary outlays on export assistance, per unit export assistance, the total quantity of a product in respect of which export assistance may be provided, or some combination of such commitments:
19. The annual average for the three most recent financial or marketing years in respect of budgetary outlays, per unit export assistance and quantities of subsidized exports shall constitute the base for negotiating an agreed percentage reduction in export assistance over an implementation period of {y} years.
20. Accordingly by 1 October 1990 participants shall table country lists for each of the three most recent financial or marketing years

림한다는 목적을 살려, 수출에 대한 직접보조, 기타 수출상품에 대한 지원 및 다른 모든 형태의 수출지원은 상당하고 점진적으로 감축되어야 하며, 허용된 수출지원정책도 더 강화되고 효과적으로 운용되는 GATT규정에 구속될 것임에 합의한다.

18. 협상참가자들은 수출보조의 감소는 다른 형태의 지원 및 보호정책보다 더 많이 감축되어야 하며, 정부의 재정지출, 상품당 지원, 수출지원이 주어지는 상품물량, 혹은 이 3가지가 혼합된 형태등의 수출지원정책이 점진적으로 감축되도록 할 것을 합의한다.

19. 최근 3회계년도 동안의 연평균 재정지원, 상품당 수출지원 및 보조를 받은 수출상품량이 수출보조에 있어서 향후 Y년동안 합의된 일정비율로 이행하게 될 감축대상이 된다.

20. 이에 따라 1990년 10월 1일까지 협상참가자는 최근 3회계년도 각각 국가 및 준국가수준에서 집행된 다음 각항의 지원금액을 C/L에 포함

providing data on financial outlays or revenue foregone at the national and subnational level in respect of :

- (a) direct financial assistance to exporters to compensate for the difference between the internal market price in the exporting country and world market prices ;
- (b) payments to producers of a product which result in the price or return to the producers of that product when exported being higher than world market price or returns ;
- (c) costs related to the sale for export or publicly owned or financed stocks ;
- (d) assistance to reduce the cost of transporting or marketing exports ;
- (e) export credits provided by governments or their agencies on less than fully commercial terms ;
- (f) the provision of financial assistance in any form by governments and their agencies to export income or price stabilization schemes operated by producers, marketing boards or other entities which play de facto a dominant role in the marketing and export of an agricultural product ;
- (g) export performance-related taxation concessions or incentives ;

한다.

- (a) 수출국의 국내가격과 국제시장가격의 차이를 보상해주기 위한 수출업자에 대한 직접 재정지원
- (b) 국제가격보다 높은가격으로 수출될 경우 그 품목의 생산자들에게 수출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조
- (c) 공공이 소유하거나 재정지원을 받은 물량의 수출에 들어 간 비용
- (d) 수출상품의 수송 및 유통비용을 감축시키기 위한 지원
- (e) 정부 혹은 정부기관에 의한 시중금리 이하로 제공되는 수출신용
- (f) 정부 혹은 정부기관에 의해서 농산물 유통과 수출에 있어서 사실상 지배적 역할을 하는 협회 혹은 단체에 의해 운용되는 수출 소득 혹은 가격안정제도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제공되는 금융지원
- (g) 수출촉진을 위한 수출실적에 비례한 조세감면

(h) subsidies on agricultural commodities incorporated in processed product exports

21. Corresponding data for the base period shall also be table on the quantities of subsidized exports and on related per unit export subsidies.

22. Concurrently negotiations shall proceed on disciplines to govern the use of export assistance including, inter alia : (i) conditions designed to eliminate targeted export subsidy practices ; (ii) conditions governing government participation in the operation of producer-financed export subsidy schemes ; (iii) disciplines relating to subsidies on agricultural commodities incorporated in exported products ; (iv) disciplines on export credits ; and (v) disciplines on food aid and concessional sales.

23. The disciplines to be negotiated on food aid and concessional sales shall ensure that supplies of basic foodstuffs are available to least developed and net food-importing developing countries on appropriate terms and conditions.

D. REDUCTION TARGETS

24. Participants will negotiate the amount and duration of the substa-

(h) 농산물 가공상품 수출에 포함된 농산물에 대한 보조

21. 보조를 받은 수출물량과 상품당 수출보조에 관한 기준년도 자료도 C/L에 포함되어야 한다.
22. 수출보조감축과 동시에 수출지원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관한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특히 (i) 특정국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보조를 어떻게 폐지할 것인가? (ii) 생산자에 의해 지원되는 수출 보조제도의 운용에 정부개입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iii) 수출상품(주로 가공수출품)에 포함되어 있는 보조 농산물과 관련된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iv) 수출신용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v) 식량원조와 개도국에 대한 할인판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23. 식량원조와 할인판매에 관한 규정은 후진국과 순식량 수입개도국에게 합당한 조건으로 기본식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보증한다.

D. 감축목표

24. 협상참가자는 C/L이 제출되는 대로 수출보조와 농산물보호를

ntial and progressive reductions in support and protection as soon as the country lists are tabled as agreed above.

E. SANITARY AND PHYTOSANITARY REGULATIONS AND BARRIERS

25. Participants agree to conduct negotiations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regulations and barriers on the basis of the text contained in Annex II.

F. RULES AND DISCIPLINES

26. Participants agree that concurrently with the negotiation of the commitments outlined above, they will undertake negotiations aimed at strengthening GATT rules and disciplines and making them more operationally effective in line with the long-term objective of the agricultural negotiations as agreed in the Mid-Term Review (MTN.TNC/11, paragraph 5 refers).

G. SURVEILLANCE

27. Arrangements for the surveillanc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mmitments negotiated on the basis of this framework shall be agreed by the end of the negotiation. Similar arrangements will also be agreed to provide as necessary for review of certain aspects of commitments as indicated in the preceding chapters.

상당하고 점진적으로 감축해 나가도록 감축량과 감축기간을 협상한다.

E. 위생 및 검역규제

25. 협상참가자는 부록Ⅱ에 기초하여 위생 및 검역규정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한다.

F. 규 정

26. 협상참가자는 위에 명시된 감축의무이행 협상과 동시에 중간평가(MTN. TNC/11, 5항 참조)에서 합의된 농산물협상의 장기목표와 일치하는 GATT 규정을 강화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한다.

G. 감 시

27. 이 초안에 의거 협상이 이루어진후 의무이행을 감시하기 위한 계획이 협상의 최종단계에서 합의될 것이다.
위와 유사한 계획으로 앞에서 제시된 것처럼 의무이행중의 특수한 양상을 검토하기 위한 계획도 수립될 것이다.

ANNEX

[Guidelines for tariffication]

The calculation involved in the conversion of border measures other than normal customs duties into tariff equivalents must be carried out in a transparent manner using data, data sources and definitions that are made available to all contracting parties. Following the estimation of initial tariff equivalents, their rates will be subject to scrutiny and negotiation by interested contracting parties.

The calculation of the initial tariff equivalents will use the following guidelines :

- (a) data used will be for the most recent period available ;
- (b) calculations will be carried out for all principal products traded.

This implies that :

- (i) for major commodities, calculation would generally be made at the four-digit level of the HS ;
- (ii) for other products, including for individual fruits and vegetables, calculation would be made up to the six-digit level of the HS ;
- (c) in all cases initial tariff equivalents for products derived from

부 록

〔관세화지침〕

정상적인 관세를 제외한 국경조치의 TE계산은 모든 체약국이 이용할 수 있는 자료, 자료출처와 정의를 사용하여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최초의 TE가 산정되고 난후 그 비율은 이해 관련된 체약국들이 이를 검토하고 협상한다. 최초의 TE계산은 다음 지침에 의해서 한다.

(a) 자료는 가능한한 가장 최근자료를 사용한다.

(b) 모든 주요교역품목에 대해서 TE를 계산한다.

(i) 주요품목은 일반적으로 HS4단위까지 계산한다.

(ii) 과일과 채소를 포함하는 기타품목은 HS6단위까지 계산한다.

(c) 주요품목에서 파생된 품목의 TE계산은 주요품목의 TE를 파생된

principal products would be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initial tariff equivalents for the principal product(s) by the proportion of principal product(s) in the derived product ;

- (d) the initial tariff equivalent calculation for the principal product should be adjusted as necessary to take account of differences in quality or variety using an appropriate coefficient ;
- (e) external prices would be, in general, actual c.i.f. unit values for the importing country ;
- (f) where c.i.f. unit values are neither available nor appropriate, external prices would be either ;
 - (i) appropriate c.i.f. values of a near country ; or (ii) estimated from f.o.b. values of an appropriate major exporter adjusted by adding an estimate of c.i.f. costs ;
- (g) in all cases, external prices would be converted to domestic currencies using the annual average market exchange rate for the same periods as the price data ;
- (h) the internal price would be the average price ruling in the domestic market ;
- (i) initial tariff equivalents would be expressed as ad valorem or specific rates

품목중 주요품목의 구성비율로 곱함으로써 계산한다.

- (d) 주요품목의 TE계산은 적절한 계수를 사용하여 품질과 다양성이 고려되도록 조정한다
- (e) 국외가격은 일반적으로 수입국의 실제CIF가격을 사용한다.
- (f) CIF가격이 없거나 부적절할 경우 국외가격은 (i) 인접국의 적절한 CIF가격 또는 (ii) 그 상품의 주요수출국의 FOB가격에다 CIF 비용을 더해 조정하여 산정한 가격을 사용한다.
- (g) 국외가격은 동일한 기간의 연평균 시장환율을 사용하여 국내 화폐단위로 표시한다.
- (h) 국내가격은 국내시장에서 지배적인 평균가격을 사용한다.
- (i) 최초 TE는 종가(ad valorem)율 혹은 특별히 결정된 비율로 표시된다.